

관세연구 17-04

#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의 기능 및 역할 비교연구

2017. 12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전문연구원

이 재 선 관 세 사

# 목차

I. 서론 .....	9
II.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 .....	11
1. 관세청 .....	11
가. 관세청의 목적과 기능 .....	11
나. 관세청의 임무와 중점과제 .....	12
다. 관세청의 조직과 역할 .....	15
2. 관세청 조직의 변천 .....	41
가. 관세청의 설립과 역사 .....	41
나. 관세청의 조직개편 .....	43
3. 관세청의 주요 특징 .....	51
가.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51
나. 관세국경위험 관리 전담 .....	52
III.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 .....	54
1. 일본의 관세행정 조직 .....	54
가. 관세국 .....	54
나. 관세국의 변천 .....	69
다. 관세국의 주요 특징 .....	73

2. 러시아의 관세행정 조직 .....	78
가.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	78
나. 연방 관세청의 변천 .....	91
다. 연방 관세청의 주요 특징 .....	95
3. 독일의 관세행정 조직 .....	96
가. 일반관세청(Generalzolldirektion) .....	96
나. 일반관세청의 변천 .....	101
다. 일반관세청의 주요 특징 .....	106
4. 프랑스의 관세행정 조직 .....	108
가. 관세 및 간접세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	108
나. 관세 및 간접세국의 변천 .....	117
다. 관세 및 간접세국의 주요 특징 .....	123
5. 미국의 관세행정 조직 .....	125
가. 관세국경보호청(CBP) .....	125
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변천 .....	136
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주요 특징 .....	139
6. 호주의 관세행정 조직 .....	144
가. 내무부(Home Affair) .....	144
나. DIBP(현: 내무부)의 변천 .....	154
다. 내무부의 주요 특징 .....	159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62
1. 서비스 혁신 .....	162
가. 전자통관시스템 .....	162

나. 기업지원 .....	165
2. 대외 불법행위의 차단 .....	166
가. 국경위험관리 .....	166
나. 관세범죄조사 .....	168
3. 유관기관과의 협업 .....	170
가. 국경관련 기관 .....	170
나.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171
4.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173
가. 교육 및 훈련 .....	173
나. 화물검사 시스템 .....	175
참고문헌 .....	178

## 표 목차

〈표 II-1〉 기획조정관 세부업무 .....	17
〈표 II-2〉 감사관 세부업무 .....	19
〈표 II-3〉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세부업무 .....	21
〈표 II-4〉 통관지원국 과별 업무 .....	24
〈표 II-5〉 심사정책국 과별 업무 .....	26
〈표 II-6〉 조사감시국 과별 업무 .....	29
〈표 II-7〉 정보협력국 과별 업무 .....	32
〈표 II-8〉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과별 업무 .....	36
〈표 II-9〉 중앙관세분석소 과별 업무 .....	37
〈표 II-10〉 관세평가분류원 과별 업무 .....	38
〈표 II-11〉 우리나라 관세청 연혁 .....	47
〈표 III-1〉 일본 관세국 연혁 .....	72
〈표 III-2〉 러시아 관세청 부서별 역할 .....	84
〈표 III-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연혁 .....	137

## 그림 목차

[그림 II-1] 우리나라 관세청 조직도(2017년) .....	34
[그림 II-2] 우리나라 관세청 소속기관 조직도(2017년) .....	40
[그림 II-3] 우리나라 최초 관세청 조직도(1970년) .....	43
[그림 II-4] 우리나라 관세청 조직도(2016년) .....	50
[그림 III-1] 일본 재무성 조직도(2017년) .....	58
[그림 III-2] 일본 관세국 조직도(2017년) .....	64
[그림 III-3] 일본 재무성 시설 등 기관 조직도(2017년) .....	68
[그림 III-4] 일본 관세국 조직도(2011년) .....	73
[그림 III-5]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2018년) .....	80
[그림 III-6] 러시아 세관 조직도(2018년) .....	90
[그림 III-7]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2011년) .....	94
[그림 III-8] 독일 일반관세청 조직도(2017년) .....	100
[그림 III-9] 독일 연방재무국 조직도(2008년) .....	105
[그림 III-10] 프랑스 공공활동 및 회계부 조직도(2018년) .....	110
[그림 III-11]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조직도(2016년) .....	111
[그림 III-12]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중앙행정 조직도(2017년) .....	115
[그림 III-1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2017년) .....	131
[그림 III-14] 미국 CBP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 조직도(2017년) .....	133
[그림 III-15] 미국 CBP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 조직도(2017년) .....	135
[그림 III-16]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2015년) .....	138

[그림 III-17] 미국 CBP 현장운영국(Field Operations) 조직도(2017년) .....	142
[그림 III-18] 호주 내무부 조직도(2018년) .....	150
[그림 III-19] 호주 국경수비대 조직도(2018년) .....	152
[그림 III-20] 호주 이민국경보호부 조직도(2017년) .....	158

# I. 서론

- 개방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가 간 무역 증가로 1995년 WTO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후 세계 각국은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FTA 증가로 인한 교역 증대와 무역 투자 확대, 외국 세관과의 협력 증대 등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관세청은 FTA 협정이행 및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책임기관으로서 효율적으로 이를 이행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또한 물품 및 사람의 국경 이동의 확산과 전자기술 발달로 초국경적·초국가적 범죄가 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세행정 기능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음
  - 초국경적·초국가적 위협인 불법적 교역, 생화학 무기 확산, 불법무기거래, 테러리즘, 불법이민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자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가상 화폐를 통한 대외 결제 등이 급속히 증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출입국 관리·통제와 보안·대테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이 변화하는 교역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은 기존의 관세 징수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 이외에 FTA 관련 업무, 국경 안보, 사이버 범죄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을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 조직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써 강화 및 축소된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자 함
  -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 또는 새롭게 재편성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직 및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 중 특화된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이 보완해야 할 기능 및 역할을 도출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조직 전반을 살펴보고 각 조직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세부 내용을 기술함
  - 제III장에서는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 및 관세 행정 조직의 변천내용을 살펴보고 조직별 특징을 파악함
    - 국가의 선정은 주로 관세행정 조직의 변화가 있었던 나라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아시아 및 유라시아의 일본과 러시아, 유럽의 독일 및 프랑스, 오세아니아의 호주를 선정하였음
  - 제IV장에서는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 및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의 발전을 위한 소견을 제시함
    - 관세행정 서비스의 혁신, 대외 불법행위의 엄정한 차단, 유관 기관들과의 협업, 인적·물적 핵심 인프라 확충의 4가지 분야에 대한 주요국 및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음

## Ⅱ. 우리나라 관세행정 조직

### 1. 관세청

#### 가. 관세청의 목적과 기능<sup>1)</sup>

- 관세청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함
  - 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함으로써 대외무역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됨
  -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 관련 위반사항을 종합하여 단속함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함
  - 그리고 마약·총기류·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77&layoutMenuNo=210](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77&layoutMenuNo=210)(검색일자: 2017. 1. 2.)

- 관세행정의 기능이 사회안전·국민건강·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허위표시·지적재산권 침해·불법외환거래·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으로 확대됨
  - 관세청의 임무는 다음 7개의 분야로 대별될 수 있음
    -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 확보
    -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 나. 관세청의 임무와 중점과제

- 관세청은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함<sup>2)</sup>
  - 관세청의 임무는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사회안전과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유입을 차단하며, 합법적인 국제교역과 여행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임
- 관세청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① 관세행정 서비스의 혁신 ② 대외 불법행위의 엄정한 차단 ③ 관세행정 고객 유관기관 및 글로벌 협업 ④ 인적·물적 핵심 인프라 확충의 4가지 발전방향을 정하였음<sup>3)</sup>
  -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고도화와 불법대응 강화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함

2)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75&layoutMenuNo=208](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75&layoutMenuNo=208)(검색일자: 2018. 1. 4.)

3) 관세청,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 방향』, 2016, p. 8

- 또한 고객·관련기관·글로벌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인력, 장비 등의 자원을 최적화하고자 함
  
-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빠르고 정확한 수출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의 확대, FTA 특혜의 안정적 활용 지원 등을 주요과제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sup>4)</sup>
  - 인공지능 등 기술·기법에 기초한 빅데이터 분석과 위험요소 판단에 의해 불법 위험이 없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하고, 위험 없는 화물은 전자통관심사에 의하여 빠르게 통관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 통관애로 대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외에서 겪는 수출업체의 애로를 관리·대응하고, 안전관리우수기업(AEO)에 대한 MRA를 확대하여 외국세관의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인정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외국세관과 전자적으로 교환·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대외 불법행위 차단의 중점과제는 국민생활 침해물품 수입·유통 근절, 마약류 불법 유입 차단,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차단, 불법 금융범죄의 단속 등이 있음<sup>5)</sup>
  - 먹거리, 완구 등 국민건강 직결물품 등 수입검사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통관 적법성 심사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지재권 침해, 성분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지원함
  - 첨단 탐지장비의 도입, 전담 단속인력 확대를 통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함
  -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사람·물품·자금에 대한 통합 정보분석과 국내외 정보 교환을 통해 테러위험 대상을 선별하고, 우범 운송수단 집중검색, 테러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테러 위협·우려 물품의 유입을 차단함

---

4) 관세청(2016), pp. 10~12

5) 관세청(2016), pp. 17~20

-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횡령, 사기 등 수출입과 관련된 경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수출입 가격의 분석과 외국세관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무역기반의 자금세탁,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세원이전(BEPS) 등에 적극 대응함
- 또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자율적 법규준수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국경위험관리를 효율화하며, 글로벌 협력으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국제 통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sup>6)</sup>
  - AEO 업체에 대하여 체감성 높은 행정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수출입공급망<sup>7)</sup> 전체에 대하여 성실도를 측정하여 우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하여 관세행정상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계획임
  - 국경관리 기관 간 정보교환채널을 고도화하여 국경위험정보의 수집, 분석·평가, 표적화(Targeting) 등의 위험관리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중대 위험을 선별하고 조치하고자 함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 등 통관단계에서 징수가 가능한 세목의 종류에 대하여 세관에서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BEPS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한 가격결정을 확대하고자 함
  - 대륙별 거점 국가 중심으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하고, 원산지정보자료교환, AEO 제도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와 시스템을 세계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정립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그리고 인적·물적 핵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적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정하였음<sup>8)</sup>

6) 관세청(2016), pp. 23~26

7) 수출입거래의 최초부터 최종단계까지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수출자, 선사(항공사), 하역사, 보세창고 운영인, 관세사, 수입자 등 주체

- IT, 국제금융 등 특수분야 전문가 채용확대 등 직원 선발방식 다양화와 신규 채용자 연수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신규 인력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함
- 관세행정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감사 실시, 청탁금지 행동규정 마련 등을 통해 관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다. 관세청의 조직과 역할

### 1) 관세청

-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sup>9)</sup>하며, 4개국, 13개과, 4개팀으로 구성됨
  - 관세청에 운영지원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둠<sup>10)</sup>
  -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둠<sup>11)</sup>
  - 차장과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을 둠<sup>12)</sup>
- 대변인실은 취재·보도 활동의 지원,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여론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 온라인 매체 운영 등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13)</sup>
  -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함<sup>14)</sup>

8) 관세청(2016), pp. 28~29

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조(직무)

1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4조 제1항

1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4조 제2항

1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4조 제3항

1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1&hdeptCode=000000206&layoutMenuNo=2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1&hdeptCode=000000206&layoutMenuNo=243)(검색일자: 2018. 1. 5.)

1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5조(대변인)

-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기획조정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조직, 예산, 인사, 업무계획을 수립, 집행, 홍보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sup>15)</sup>

○ 기획조정관은 관세청 차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sup>16)</sup>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평가
-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청내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청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소송사무의 총괄
-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지원
-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지원

15)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3&hdeptCode=000000212&layoutMenuNo=246](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3&hdeptCode=000000212&layoutMenuNo=246)(검색일자: 2018. 1. 5.)

1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6조(기획조정관)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표 II-1〉 기획조정관 세부업무

구분	업무
혁신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li> <li>-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li> <li>-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li> <li>-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li> <li>-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li>-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li> <li>-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li> <li>- 성과관리업무 총괄</li> <li>-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li> <li>-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지원</li> <li>- 관세정책품질의 개선</li> <li>-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li> <li>-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li> </ul>
인사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li> <li>-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li> <li>-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li> <li>-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li> <li>-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li> <li>-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li> <li>-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li> <li>-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li> <li>- 청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li> </ul>

구분	업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li> <li>-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li> <li>- 소송사무의 총괄</li> <li>-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li> <li>-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li> <li>-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li> <li>- 민원(국민제안을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li> <li>-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li> <li>-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의 운영</li> </ul>
비상안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li> <li>- 위기관리(안보·재난·국가기반) 업무 총괄</li> <li>-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li> <li>-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방호계획의 총괄</li> <li>- 공익근무요원 자원의 획득·배정 및 복무관리</li> <li>-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조정관)

□ 감사관은 ‘깨끗하고 바르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 창출을 목표로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복무위반 및 비위·진정 사항의 조사 및 처리 등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sup>17)</sup>

○ 감사관은 관세청 차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함<sup>18)</sup>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7)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4&hdeptCode=000000217&layoutMenuNo=244](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4&hdeptCode=000000217&layoutMenuNo=244)(검색일자: 2018. 1. 8.)

1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7조(감사관)

-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표 II-2〉 감사관 세부업무

구분	업무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li> <li>-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li> <li>-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과 관련한 사항</li> </ul>
감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li> <li>-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li> <li>-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li> <li>-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li> <li>-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감사관)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인증수출자 지정,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와 홍보, FTA 활용 전산 인프라 구축 등으로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FTA를 악용한 특혜관세 불법적용을 방지하는 원산지 검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sup>19)</sup>

19)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5&hdeptCode=020000625&layoutMenuNo=680](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5&hdeptCode=020000625&layoutMenuNo=680)(검색일자: 2018. 1. 8.)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2011년 4월 14일 FTA 관련 국내 이행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효과적인 활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어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세청 차장을 보좌함<sup>20)</sup>
  -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자유무역협정 관련 이행위원회에의 참여를 포함)에 관한 사항
  -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2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8조(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표 II-3〉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세부업무

구분	업무
자유무역협정집행 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li> <li>-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제도의 기획 및 운영</li> <li>-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판정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li> </ul>
원산지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li> <li>-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li> <li>-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li> <li>-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li> </ul>
자유무역협정협력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li> <li>-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3(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관세국경단계에서 사회안전, 국민건강 등을 위협하는 고 위험물품이나 사람을 선별하여 관세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함<sup>21)</sup>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세청 차장을 보좌함<sup>22)</sup>
-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위험 요인(관세국경위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 운영지원과는 관세행정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금·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보안, 문서관리, 국유재산 관리, 자금 운용·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납세자의 편리를 위한 각종 법령 정비, 규제개혁 등의 업무를 담당함<sup>23)</sup>
-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sup>24)</sup>
-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
  -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83&hdeptCode=030010778&layoutMenuNo=32251](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83&hdeptCode=030010778&layoutMenuNo=32251)(검색일자: 2018. 1. 8.)

2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8조의 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2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2&hdeptCode=000000207&layoutMenuNo=245](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2&hdeptCode=000000207&layoutMenuNo=245)(검색일자: 2018. 1. 8.)

2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9조(운영지원과)

- 통관지원국은 수출입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신속·정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sup>25)</sup>
- 통관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sup>26)</sup>
-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증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관세의 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 및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관세·무역통계 및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반입수량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차기간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조정
  -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특송화물 및 이사회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운영

25)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6&hdeptCode=000000219&layoutMenuNo=247](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6&hdeptCode=000000219&layoutMenuNo=247)(검색일자: 2018. 1. 8.)

2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0조(통관지원국)

-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표 II-4〉 통관지원국 과별 업무

구분	업무
통관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li> <li>-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li> <li>-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li> <li>-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li> <li>-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li> <li>-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li> <li>-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li> <li>-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의 수립</li> <li>-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및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 간 업무협조</li> <li>-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li> <li>-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li> <li>-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li> <li>- 무역통계업무 총괄</li> <li>-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li> <li>- 무역통계부호의 관리</li> <li>-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li> <li>-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li> <li>-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li> <li>-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li> </ul>

구분	업무
수출입물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li> <li>-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li> <li>-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li> <li>-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운영</li> <li>-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li> <li>-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li> <li>-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li> <li>-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li> <li>-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li> <li>-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특수통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li> <li>- 남북한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li> <li>-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li> <li>-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운영</li> <li>-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li> <li>-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사전판정을 포함)</li> <l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li> <li>- 원산지표시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통관지원국)

□ 심사정책국은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으로써 납세자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sup>27)</sup>

○ 심사정책국장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함<sup>28)</sup>

-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지휘 및 감독

27)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7&hdeptCode=020000604&layoutMenuNo=248](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7&hdeptCode=020000604&layoutMenuNo=248)(검색일자: 2018. 1. 9.)

2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1조(심사정책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의 제고에 관한 사항
-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 관세율의 적용·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에 관한 심사의 기획·지휘 및 감독
-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표 II-5〉 심사정책국 과별 업무

구분	업무
심사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li> <li>- 심사제도의 기획</li> <li>-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li> <li>-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li> <li>-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li> <li>- 국가 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li> <li>-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제도의 기획 및 수출입업체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 운영</li> <li>- 법규준수도에 따른 업체별 차등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구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감독</li> <li>-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li> <li>-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li> <li>-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li> <li>-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li> <li>-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li> <li>-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li> </ul>
세원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li> <li>-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li> <li>-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의 적용 및 운영</li> <li>-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물품의 사후관리</li> <li>-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li> <li>-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li> <li>-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li> <li>-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li> <li>-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li> <li>-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li> </ul>
법인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종합인증우수업체는 제외)에 대한 세액 및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li> <li>- 법인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li> <li>- 법인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li> <li>-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li> <li>-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심사대상 법인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li> <li>-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li> <li>-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심사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 및 감독</li> <li>- 법인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li> <li>-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기획심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 심사 계획 수립</li> <li>- 기획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li> <li>-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li> <li>- 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li> <li>-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 및 감독</li> <li>-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감독</li> <li>-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li> <li>- 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li> <li>-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심사정책국)

□ 조사감시국에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밀수·불공정 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sup>29)</sup>

○ 조사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sup>30)</sup>

- 「관세법」 위반사범(관세법)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에 관한 사항
-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항공기·선박의 입항·출항·검색과 선용품·기용품에 관한 사항
- 「관세법」에 따른 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조사·감시장비 및 감시정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에 관한 사항

29)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8&hdeptCode=000000231&layoutMenuNo=249](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08&hdeptCode=000000231&layoutMenuNo=249)(검색일자: 2018. 1. 9.)

3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2조(조사감시국)

-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에 대한 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표 II-6〉 조사감시국 과별 업무

구분	업무
조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에 관한 사항</li> <li>- 무역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li> <li>-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li> <li>-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li> <li>-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li> <li>-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 관리를 포함)</li> <li>-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li> <li>-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의 운영</li> <li>- 조사정보업무 총괄</li> <li>-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li> <li>-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li> <li>-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li> <li>-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li> </ul>
관세국경감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li> <li>-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li> </ul>

구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li> <li>-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li> <li>- 개항장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li> <li>-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li> <li>-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범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li> <li>-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 부지를 포함)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li> <li>- 신용품 및 기용품의 관리</li> </ul>
외환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에 관한 사항</li> <li>-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li> <li>-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li> <li>-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li> <li>-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제도의 운영</li> <li>-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li> <li>-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li> <li>-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li> <li>-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li> <li>-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li> <li>-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li> <li>-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li> </ul>
국제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li> <li>-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에 대한 조사·수사</li> <li>- 마약류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li> <li>-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li> <li>-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li> <li>-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li> <li>-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li> <li>- 금수품,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의 기획</li> <li>-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li> <li>-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조사감시국)

- 정보협력국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관세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통합위험관리업무와 더불어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 세관, 관세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sup>31)</sup>
- 정보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함<sup>32)</sup>
  -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지도·감독
  -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협상 지원에 관한 사항
  -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의 수집·교환 및 관리
  -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 정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통신망의 관리,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3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9&hdeptCode=000000223&layoutMenuNo=250](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9&hdeptCode=000000223&layoutMenuNo=250)(검색일자: 2018. 1. 9.)

3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3조(정보협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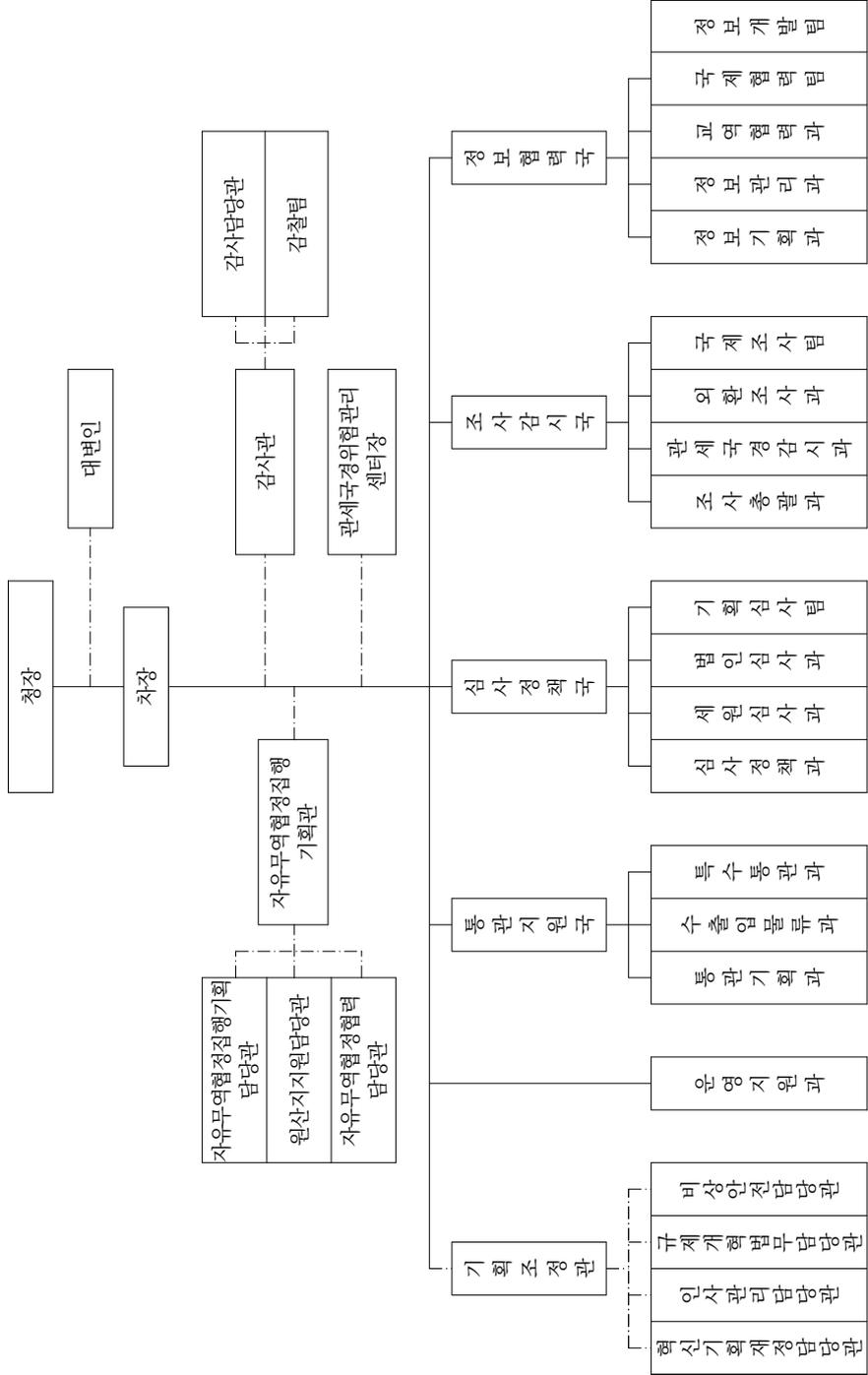
〈표 11-7〉 정보협력국 과별 업무

구분	업무
정보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li> <li>-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li> <li>-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li> <li>-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li> <li>-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li> <li>-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li>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증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li>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확산 및 동향조사</li>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li> <li>-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li> <li>-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li> </ul>
정보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li> <li>-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li>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li> <li>-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li> <li>-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li> <li>-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li> <li>-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li> <li>- 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li> <li>- 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li>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교역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li> <li>-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li> <li>-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li> <li>-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li> <li>-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li> </ul>

구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li> <li>-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의 수집·교환 및 관리</li> <li>-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li> <li>- 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li> </ul>
국제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li> <li>-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li> <li>-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li> <li>-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평가 등 관리</li> <li>-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li> <li>-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li> <li>-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험력의 이용 및 제공</li> <li>-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li> <li>-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li> <li>-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li> <li>- 그 밖에 관세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li> </ul>
정보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li> <li>-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 정보화 대응전략의 수립 및 연구</li> <li>- 관세행정 빅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모바일 관세행정 구현 정책 수립 및 추진</li> <li>-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li> <li>-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li> </ul>

자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정보협력국)

[그림 II -1] 우리나라 관세청 조직도(2017년)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220000&enc=1&date=20171031>(검색일자: 2018. 1. 2.)

## 2) 소속기관

- 관세청장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두고, 관세청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둠<sup>33)</sup>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선진관세행정구현을 위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관세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함<sup>34)</sup>
  -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물품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관세부과에 필요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등 관세징수 및 관련 법규 적용을 위한 관세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sup>35)</sup>
  -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관련분야 연구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전문기관임<sup>36)</sup>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정가치함양센터, 관세행정혁신의 진원지, 직무역량과 글로벌 경쟁력배양을 위한 핵심인재양성,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문제해결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sup>37)</sup>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sup>38)</sup>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3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조(소속기관)

34)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10&hdeptCode=000000505&layoutMenuNo=252](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10&hdeptCode=000000505&layoutMenuNo=252)(검색일자: 2018. 1. 9.)

35) 중앙관세분석소, [http://cclss.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G6T1hJ6QCLr8LR3nWyK19DL2VMkNcpCps12jPmpcKTd4v2P5McQB!-1803194952?contentId=CONTENT\\_ID\\_000001395&layoutMenuNo=20025](http://cclss.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G6T1hJ6QCLr8LR3nWyK19DL2VMkNcpCps12jPmpcKTd4v2P5McQB!-1803194952?contentId=CONTENT_ID_000001395&layoutMenuNo=20025)(검색일자: 2018. 1. 9.)

36) 관세평가분류원,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449&layoutMenuNo=20116](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449&layoutMenuNo=20116)(검색일자: 2018. 1. 9.)

37)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10&hdeptCode=000000505&layoutMenuNo=252](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10&hdeptCode=000000505&layoutMenuNo=252)(검색일자: 2018. 1. 9.)

3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6조의2(직무)

-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표 11-8〉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과별 업무

구분	업무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 예산 및 지출</li> <li>- 시설 및 물품관리</li> <li>- 관세공무원 시험관리</li> <li>- 인사·서무</li> </ul>
교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교육생 심사 및 선발</li> <li>-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li> <li>- 공공기관 교육훈련평가</li> <li>- 교육이수 관리 및 학사정보 관리</li> <li>-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환류</li> <li>- 교수요원 관리 및 강사료청구관리</li> <li>- 교재 편찬·발간</li> <li>- 사이버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li> </ul>
탐지견훈련센터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지조사요원(견) 훈련 및 평가, 관리</li> <li>- 마·화약류 관리</li> </ul>

자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http://cti.customs.go.kr/hpk/tci/retrieveOrganization.do>(검색일자: 2018. 1. 9.)

-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물품을 정밀분석하여 관세부과에 필요한 품목분류와 통계 부호를 정확히 확정하고, 원산지 확인, 불법수출입물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에 대한 분석 등 관세징수 및 관련법규 적용을 위한 관세업무를 지원함<sup>39)</sup>

39)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11&hdeptCode=000000508&layoutMenuNo=253](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11&hdeptCode=000000508&layoutMenuNo=253)(검색일자: 2018. 1. 9.)

- 중앙관세분석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sup>40)</sup>
  -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분석용 기자재·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표 II-9〉 중앙관세분석소 과별 업무

구분	업무
총괄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li> <li>-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li> <li>-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li> <li>-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li> <li>-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li> <li>-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li> <li>- 예산·경리·물품 및 청서관리</li> <li>-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분석관 (1~3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li> <li>- 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li> </ul>

자료: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0조

-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평가업무를 전문화시키고 농산물 등 차등 관세물품을 보다 정확하게 세번분류하여 양질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WCO 물류안전기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심사업무, 수출입물류안전 기준 개발 및 연구업무를 담당함<sup>41)</sup>

40)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8조(직무)

4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12&hdeptCode=000000698&layoutMenuNo=254](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12&hdeptCode=000000698&layoutMenuNo=254)(검색일자: 2018. 1. 9.)

-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함<sup>42)</sup>
-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표 II-10〉 관세평가분류원 과별 업무

구분	업무
관세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li> <li>- 예산·경리·물품 및 청서관리</li> <li>-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li> <li>-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품목분류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li> <li>-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li> <li>-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li> <li>-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li> </ul>
품목분류 2과·3과·4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연구</li> <li>- 품목분류사전심사</li> <li>- 원산지 관련 품목분류</li> </ul>
수출입안전심사 1과·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li> <li>-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li> <l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li> </ul>

자료: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8

42)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0조의2(직무)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회신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산하에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5개 본부세관을 두어 일선세관에 대한 능률적인 지휘·감독으로 대민봉사체제의 만전을 기하고 일정 지역 내 세관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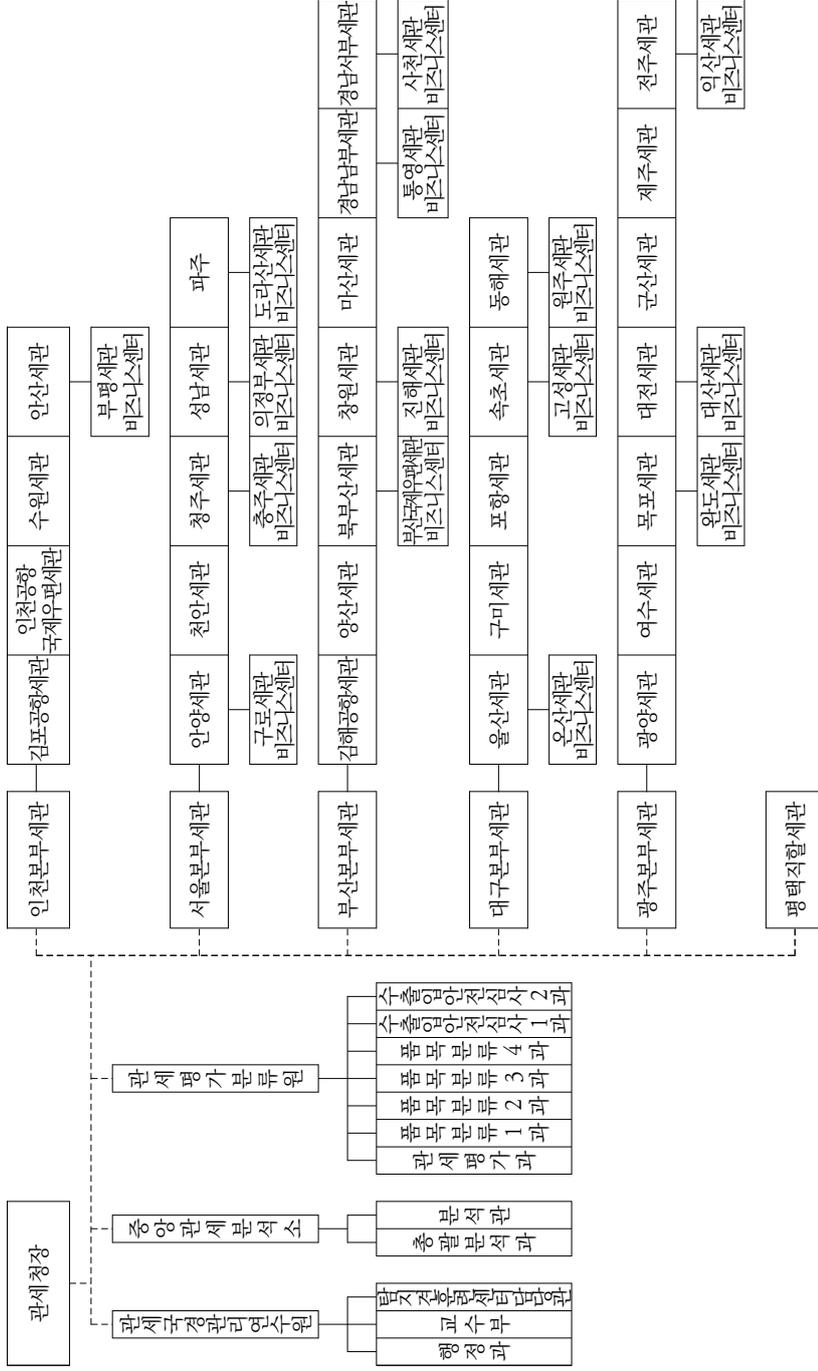
○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함<sup>44)</sup>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3)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20&layoutMenuNo=251](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20&layoutMenuNo=251) (검색일자: 2018. 1. 9.)

44)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1조(직무)

[그림 II-2] 우리나라 관세청 소속기관 조직도(2017년)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220000&enc=1&date=20171031>(검색일자: 2018. 1. 2.);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21&layout.MenuNo=258](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21&layout.MenuNo=258)(검색일자: 2018. 1. 2.).

## 2. 관세청 조직의 변천

### 가. 관세청의 설립과 역사

- 우리나라의 관세업무는 1876년 2월 26일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 병자수호조약)에 따라 부산항을 개항하고 1878년 9월 28년에 두모진해관을 설치하면서 시작함
  -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 2월부터 20개월 이내에 부산항 이외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5개도 중 연안에 2개항을 개항하고 일본상인에게 거주, 무역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sup>45)</sup>
  - 이에 따라 1880년 5월 원산항에 이어 1883년 1월 인천항이 개항되었고<sup>46)</sup>, 1883년 6월 16일 인천해관, 1883년 11월 3일 부산해관, 1883년 10월 31일 원산해관을 설치하였음<sup>47)</sup>
    - 두모진해관은 조선인에 대한 과세가 일본상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일본 측의 항의와 무력위협으로 인하여 1876년 12월 19일 폐관하였음
- 1876년부터 1883년까지 입항선박에 대한 항세만 수납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는 무세로 자유로이 수출입하다가 1882년 5월 2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로 세칙이 제정되어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입세와 수출세가 부과됨<sup>48)</sup>

45) 부산본부세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032&layoutMenuNo=11393](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032&layoutMenuNo=11393)(검색일자: 2018. 1. 10.)

46) 인천본부세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54&layoutMenuNo=11651](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54&layoutMenuNo=11651)(검색일자: 2018. 1. 10.)

47) 부산본부세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033&layoutMenuNo=11394](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033&layoutMenuNo=11394)(검색일자: 2018. 1. 10.)

48) 부산본부세관,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034&layoutMenuNo=11395](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034&layoutMenuNo=11395)(검색일자: 2018.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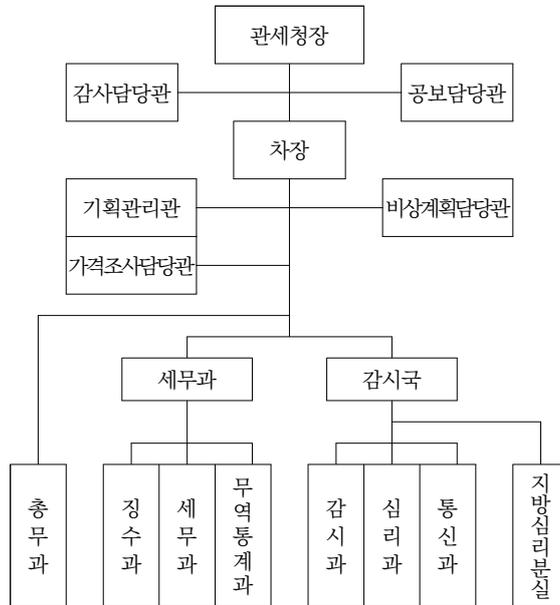
-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부과를 규정함에 따라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어 1883년 7월 25일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해관세목을 체결하고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함
-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세관관제가 시행되었으며, 부산, 원산, 인천, 진남포의 4세관 체제가 유지됨<sup>49)</sup>
  - 1925년에 원산 및 진남포세관이 폐관되고 신의주세관이 신설되어 인천, 부산, 신의주 3세관 체제로 전환되었고, 1937년 나진세관지서가 세관으로 승격되어 인천, 부산, 신의주와 함께 4개 세관 체제로 개편됨
  - 1943년에는 전시물자 수송목적으로 세관을 총독부 교통국 소속으로 편성하였음
-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일본관현으로부터 세관업무를 인수하였으며, 1948년 재무부에 세관국을 설치하여 4개과(관세과, 감정과, 감시과, 조사과)로 구성함<sup>50)</sup>
  - 1949년에 세관관서설치법이 제정 및 공포되어 8세관, 1출장소, 18감시서 체제가 만들어짐
- 1970년 국무회의에서 관세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21일에 재무부 외청으로 관세청이 신설됨<sup>51)</sup>
  - 관세청의 하부조직으로 총무과·세무국 및 감시국을 두고, 감시국 밑에 지방심리분실을 두었으며, 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가격조사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둠
    - 세무국은 징수과, 세무과, 무역통계과로 구성되고, 감시국은 감시과, 심리과, 통신과로 이루어짐

49)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84&layoutMenuNo=221](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84&layoutMenuNo=221)(검색일자: 2018. 1. 10.)

50)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84&layoutMenuNo=221](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284&layoutMenuNo=221)(검색일자: 2018. 1. 10.)

51)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220000&enc=1&date=19700821>(검색일자: 2018. 1. 10.)

[그림 II-3] 우리나라 최초 관세청 조직도(1970년)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220000&enc=1&date=19700821>(검색일자: 2018. 1. 10.)

## 나. 관세청의 조직개편

-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관세청 조직을 개편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의 전부개정은 1973년 3월 14일, 1996년 7월 10일, 1998년 2월 28일 세 차례에 거쳐 이루어졌으며, 매년 일부개정 또는 타법개정에 의하여 조직 및 직무범위가 변경되고 있음
  - 1970년 8월 21일에 관세청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은 「관세청 직제」였으나 1991년 2월 1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폐지개정됨

- 1973년 3월 14일 전부개정에서는 1980년대 수출목표 100억달러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 전담기구를 설치·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국을 신설하고, 세무국을 수입국으로 개편하였음<sup>52)</sup>
- 또한 수출 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수출국에 수출과, 관리과, 통계과를 두고, 수입국은 종전 세무국의 징수와, 세무과를 가격조사 1과 및 가격조사 2과로 개편하고, 수입과를 신설하였음
    - 수출국의 통계과는 종전 세무국의 무역통계과를 개편·이관한 것임
- 1980년에는 관세조사국을 신설하고, 수출국과 수입국을 통합하여 통관관리국으로 개편하였고,<sup>53)</sup> 1987년에는 관세조사국을 평가협력국으로 개편하고, 차장 밑에 심리기획관을 신설하여 지도국의 심리과를 흡수 통합함<sup>54)</sup>
- 1980년 개편은 국내외 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출입 증가 등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함임
  - 1987년 개편은 국제무역개방화 및 관세가격결정업무체계의 개편 등에 따라 세관감시기능 및 관세평가협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그 외 1991년 통관절차개선 및 경비절감을 위한 EDI 방식 신고의 도입에 대비한 세관업무의 전산화와 정확한 무역통계산출 및 효율적인 관세환급을 위하여 자료관리관을 신설하였음<sup>55)</sup>

5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220000&enc=1&date=19730314>(검색일자: 2018. 1. 11.)

53)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220000&enc=1&date=19800614&pageNum=3>(검색일자: 2018. 1. 11.)

54) 「관세청직제」(대통령령 제12114호 1987.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745&ancYd=19870401&ancNo=12114&efYd=1987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자: 2018. 1. 11.))

5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523호 1991. 1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752&ancYd=19911228&ancNo=13525&efYd=199112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자: 2018. 1. 11.))

-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수출입 사전면허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행정의 선진화 및 국내산업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조직이 전면 개편되었음<sup>56)</sup>
  - 통관관리국·지도국 및 평가협력국을 개편하여 통관국·감시국 및 협력국으로 하고, 심리기획관 및 자료관리관을 개편하여 조사국 및 정보관리관을 두도록 함
  
- 1998년 2월 28일에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및 인력도 조정되었음<sup>57)</sup>
  - 해당 개편으로 관세청의 국별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또한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1998년 3월 3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
  
- 1999년 12월 31일에는 통관국을 통관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심사정책국을 신설하며, 감시국과 조사국을 조사감시국으로 통합<sup>58)</sup>함으로써 지금의 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sup>59)</sup>·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의 4국 체제가 완성되었음
  - 수출입신고의 수리, 수출입화물의 관리 및 휴대품 통관 등 통관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여행자와 화물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관국을 통관지원국으로 개편함<sup>60)</sup>

5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5116호 1996. 1. 10.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869&lsId=&efYd=199607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5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5706호 1998. 2. 28.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874&lsId=&efYd=199802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검색일자: 2018. 1. 11.)

58)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2&layoutMenuNo=218](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2&layoutMenuNo=218) (검색일자: 2018. 1. 11.)

59) 2008년 2월 29일 관세심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09년 5월 1일 심사정책국으로 다시 변경됨

- 또한 통관에 관한 적법성과 세액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관세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하여 심사정책국을 신설함
-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신설함<sup>61)</sup>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밑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과 원산지지원담당관을 둠
  - 2012년 국가 간 관세집행에 관한 협력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강화를 위하여<sup>62)</sup> 자유무역협정집행관 밑에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음
- 2014년 3월 5일 분산된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한시조직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을 신설함<sup>63)</sup>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변화관리체계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함<sup>64)</sup>

6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6676호 1999.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878&lsId=&efYd=2000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6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904호 2011. 4.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483&lsId=&efYd=201104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6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725호 2012. 4.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722&lsId=&efYd=201204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6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222호 2014. 3. 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02&lsId=&efYd=201403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6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222호 2014. 3. 5. 일부개정) 제30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및 정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었으나 2016년에 존속기간이 2016년 8월 31일까지 연장<sup>65)</sup>되었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2016년 11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음<sup>66)</sup>
- 2017년 2월 28일에는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 행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함<sup>67)</sup>
- 관세청 차장 밑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위험 요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도록 함

〈표 II-11〉 우리나라 관세청 연혁

일자	조직 연혁
1970. 8. 21.	관세청 발족(3관 2국 7과 2담당관)
9. 15.	감사담당관 → 관세감독관, 가격조사담당관 → 가격조사관
1973. 3. 14.	수출국 신설, 세무국 → 수입국
1974. 8. 14.	감시국장 직속의 지방심리분실 폐지
1975. 7. 1.	수출2과, 수출3과 신설(관세환급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1977. 9. 20.	청장 밑의 관세감독관을 차장 밑에 둠
1978. 7. 15.	수입국에 평가과 신설
1980. 6. 14.	관세조사국 신설, 수출국 및 수입국 → 통관관리국, 감시국 → 지도국
1981. 11. 2.	통관관리국의 세무총괄과 → 총괄징수과, 세무1·2·3과 → 감정평가과, 환급과,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신설

6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978&lsId=&efYd=2015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66)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583호 2016. 11.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538&lsId=&efYd=2016111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6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893호 2017. 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987&lsId=&efYd=201702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일자	조직 연혁
1984. 27.	관세감독관 → 감사관, 전산과 → 전산통신과
1985. 2. 25.	감정평가과 → 감정과, 관세조사국에 평가과 신설
1987. 4. 1.	관세조사국 → 평가협력국, 평가2과와 세관협력과 신설, 차장 밑에 심리기획관 신설
1990. 4. 9.	자료관리관 신설
1996. 7. 10.	심리기획관 → 조사국, 통관관리국 → 통관국, 지도국 → 감시국, 평가협력국 → 협력국, 자료관리관 → 정보관리관
1998. 2. 28.	감시국의 감시과와 장비과 → 공항감시과 및 항만감시과, 조사국의 조사1·2과 → 조사과 및 심사과, 협력국의 정보협력과 폐지, 평가과 신설, 차장 밑의 비상계획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으로 이관
1999. 5. 24.	정보관리관과 협력국 통합 → 정보협력국, 정보관리담당관과 전산담당관 통합 → 정보관리과, 협력국의 평가과를 통관국으로 이관
12. 31.	통관국 → 통관지원국, 감시과 및 조사국 → 조사감시국, 심사정책국 신설, 기획관리관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및 관세고충처리담당관
2002. 1. 4.	기획관리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 폐지, 심사정책국의 평가분류과 → 품목분류과, 조사감시국에 감시과 신설, 특수조사과 → 마약조사과
2003. 11. 20.	기획관실의 행정법무담당관 폐지, 인사조직담당관 신설, 통관지원국의 수출통관과 → 수출입물류과, 공정무역과 신설, 심사정책국의 품목분류과 폐지, 심사환급과 신설
2004. 3. 22.	기획관리관의 기획예산담당관 → 혁신담당관
12. 31.	기획관리관의 혁신담당관 → 혁신기획관
2005. 4. 15.	기획관리관 → 정책홍보관리관, 인사조직담당관 → 인사기획관, 공보담당관을 정책홍보관리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홍보기획관으로 변경
2006. 2.	정책홍보관리관에 성과관리담당관 신설, 조사감시국에 전략조사정보과 신설
6. 29.	관세고객지원센터 신설, 정보협력국에 정보기획과 신설
2007. 1. 29.	심사정책국의 심사환급과 폐지, 원산지심사과 신설, 감사관실에 법무담당관 신설, 관세고객지원센터 → 관세FTA고객지원센터
9. 28.	통관지원국에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신설

일자	조직 연혁
2008. 2. 29.	정책홍보관리관 → 기획조정관, 심사정책국 → 관세심사국, 총무과 → 운영지원과, 대변인·감사감찰팀·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성과관리팀·관세고객지원팀·전략정보과·정보관리팀 신설
2009. 5. 1.	관세심사국 →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기획심사팀·인사관리담당관·감사담당관·감찰팀 신설, 공정무역과·원산지심사과·관세고객지원팀·전략정보과·창의혁신담당관·성과관리팀 폐지
12. 29.	심사정책국의 종합심사과 → 법인심사과, 조사감시국의 마약조사팀 → 국제조사팀
2011. 4. 14.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신설, 자유무역협정집행관 소속의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지원담당관 신설(FTA이행팀의 업무 전체, 기획심사팀·교역협력과의 FTA 및 원산지 업무를 자유무역협정집행관에 이관)
5. 30.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과 → 국제협력팀, 정보관리팀 → 정보관리과
2012. 4. 16.	자유무역협정집행관 소속의 자유무역협력담당관 신설
2014. 3.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신설
2016. 8. 3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폐지
2017. 2. 28.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신설

자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4&layoutMenuNo=220](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4&layoutMenuNo=220);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3&layoutMenuNo=219](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3&layoutMenuNo=219);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2&layoutMenuNo=218](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2&layoutMenuNo=218);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1&layoutMenuNo=217](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01&layoutMenuNo=217);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3500&layoutMenuNo=31941](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3500&layoutMenuNo=31941)(검색일자: 2018. 1. 12.)



### 3. 관세청의 주요 특징

#### 가.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sup>68)</sup>과 본부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관세청은 2007년 관세고객지원센터를 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로 개편하여 FTA 관련 고객지원업무를 신설하고, 통관지원국에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심사정책국에 원산지조사 업무를 신설하였음<sup>69)</sup>
  - 한-아세안 FTA가 2007년 5월 발효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FTA에 의한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 전담부서인 자유무역협정이행과를 통관지원국에 신설함<sup>70)</sup>
  - 2011년 FTA 전담부서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행팀<sup>71)</sup>, 기획심사팀, 교역협력과에 산재되어 있던 FTA·원산지 관련 모든 업무를 이관 받음<sup>72)</sup>
  - 또한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함

6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904호 2011. 4.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483&ancYd=20110414&ancNo=22904&efYd=201104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자: 2018. 1. 26.))

6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852호 2007. 1.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6780&ancYd=20070129&ancNo=19852&efYd=200701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자: 2018. 1. 26.))

7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301호 2007. 9.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0713&ancYd=20070928&ancNo=20301&efYd=200709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자: 2018. 1. 26.))

71) 2009년 5월 자유무역협정이행과에서 자유무역협정이행팀으로 개편됨

7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904호 2011. 4.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483&ancYd=20110414&ancNo=22904&efYd=201104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색일자: 2018. 1. 26.))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FTA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sup>73)</sup>하며,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이를 시행하고 있음
- 관세청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YES FTA’ 컨설팅, 수출물품 원산지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FTA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음
  - ‘YES FTA’ 컨설팅이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매칭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시작한 이래 2017년까지 총 4,138개 기업을 지원함<sup>74)</sup>
  - 또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과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사전확인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sup>75)</sup>
  - FTA 종합상담을 실시하는 종합버스인 FTA 기동대를 운영하여 FTA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sup>76)</sup>

## 나. 관세국경위험 관리 전담

- 관세청은 2017년 2월 우범 여행자 및 불법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차장 직속기구로 신설함<sup>77)</sup>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관세국경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sup>78)</sup>

7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2항 제4호

74)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YES FTA 컨설팅사업 주요 성과」, 2017. 12. 27.

75) 관세청 보도자료,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실시」, 2017. 8. 28.

76)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전국세관장회의」, 2017. 2. 3.

77) 관세청 보도자료, 「제1차 한-일 관세국경 위험관리 워크숍 개최」, 2017. 5. 23.

78) 관세청 보도자료, 「테러, 마약 등 차단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 전담 조직 신설」, 2017. 3. 6.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첨단 위험관리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관이 공항과 항만에서 적법한 화물의 국가 간 이동·거래는 신속한 통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범성이 높은 화물만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sup>79)</sup>
  -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여 거대자료 분석 등 첨단 정보 분석기법으로 검사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함
  - 이를 통하여 각종 법규위반 또는 우범물품은 국내 반입 이전에 관세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함
  
- 공항과 항만에서 다양한 위험물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 위험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임<sup>80)</sup>
  - 일본,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 위험관리센터와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sup>81)</sup>
    - 2017년 5월에 일본 관세청과 불법부정 무역 차단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1회 한-일 관세국경 위험관리 워크숍'이 개최됨
    - 또한 러시아 등 3개국과 통관정보, 미국 등 73개국과 수사정보, 중국 등과는 원산지정보를 교환하고 있음<sup>82)</sup>
  -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국내 유관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임<sup>83)</sup>

79) 관세청 보도자료, 『테러, 마약 등 차단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 전담 조직 신설』, 2017. 3. 6.

80) 관세청 보도자료, 『테러, 마약 등 차단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 전담 조직 신설』, 2017. 3. 6.

81) 관세청 보도자료, 『제1차 한-일 관세국경 위험관리 워크숍 개최』, 2017. 5. 23.

82)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전국세관장회의\_참고자료』, 2017. 2. 3.

83) 관세청 보도자료, 『테러, 마약 등 차단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 전담 조직 신설』, 2017. 3. 6.

### Ⅲ.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

#### 1. 일본의 관세행정 조직

##### 가. 관세국

##### 1) 관세국의 사명

- 일본의 관세국은 재무성(財務省)의 내부조직으로 국경에서의 법집행을 통한 국민 생활의 안전 확보, 관세 등의 적정하고 공정한 징수,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sup>84)</sup>
  -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적정한 관세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 관계기관 및 관계업계, 다른 나라의 세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협력하고 있음<sup>85)</sup>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 마약·총기 등의 밀수 방지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일본의 테러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관세국의 중요한 사명임<sup>86)</sup>
  - 각성제·대마초 등 불법 마약과 총기 등의 사회악 물품, 테러 관련 물자를 비롯해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위조 신용카드, 도난 자동차 등 사회안전 및 안심을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84) 일본 관세국, 『관세보고서\_2017』, 2017, p. 2

85)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yakuwari.htm>(검색일자: 2018. 1. 16.)

86) 일본 관세국(2017), p. 2

- 관세·소비세 등의 적정하고 공정한 징수도 관세국의 중요한 사명임<sup>87)</sup>
  - 관세 등의 적정한 부과 및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등 납세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음<sup>88)</sup>
    - 관세국은 2015년도 국세의 약 14%에 상당하는 금액(약 8.6조엔)을 징수한 국세 징수기관임
  
- 또한 국제물류의 보안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통관을 확보하면서 간편한 절차와 원활한 처리를 실현하고 있음<sup>89)</sup>
  - 이를 위하여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수범규준수 사업자를 세관이 승인하고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sup>90)</sup>
  - 또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등 세관 인프라의 첨단화·IT화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함

## 2) 관세국의 조직과 역할

### 가) 관세국

- 일본의 관세국은 재무성 본성의 내부부국 소속이며, 세관은 지방지분부국임
  - 재무성 본성에 대신관방 및 주계국, 주세국, 관세국, 이재국, 국제국의 5국을 설치함<sup>91)</sup>
  - 본성에 지방지분부국으로 재무국, 세관 및 오키나와지구 세관을 둠<sup>92)</sup>

87) 일본 관세국(2017), p. 2

8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yakuwari.htm>(검색일자: 2018. 1. 16.)

8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yakuwari.htm>(검색일자: 2018. 1. 16.)

90) 일본 관세국(2017), p. 2

91)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2조(대신관방 및 국의 설치)

- 세관은 하코다테, 나고야, 모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요코하마, 고베의 8 개 세관과 오키나와 지구 세관이 있음

□ 재무부는 건전한 재정 확보,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의 실현, 세관업무의 적정한 운영, 국고의 적정한 관리, 통화에 대한 신뢰 유지 및 외환의 안정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함<sup>93)</sup>

○ 관세국은 관세제도에 대한 기획·입안, 관세에 관한 국제협정의 기획·입안, 세관 업무의 지도·감독, 무역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sup>94)</sup>하며, 다음의 사무를 담당함<sup>95)</sup>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와 세관행정에 관한 제도(외국과의 관세 및 세관 행정에 관한 협정을 포함)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일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 「지방세법」 제2장 제3절에 따른 지방 소비세의 화물 비율(화물 비율)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
-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일
- 보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
- 통관업의 감독 및 통관사에 관한 일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의 업무 및 조직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일
- 세관통계에 관한 일
- 세관직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일
-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일

92) 「일본 재무성 설치법」 제12조(설치)

93) 「일본 재무성 설치법」 제3조(임무)

94)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about\\_mof/introduction/functions/index.htm](http://www.mof.go.jp/about_mof/introduction/functions/index.htm)(검색일자: 2017.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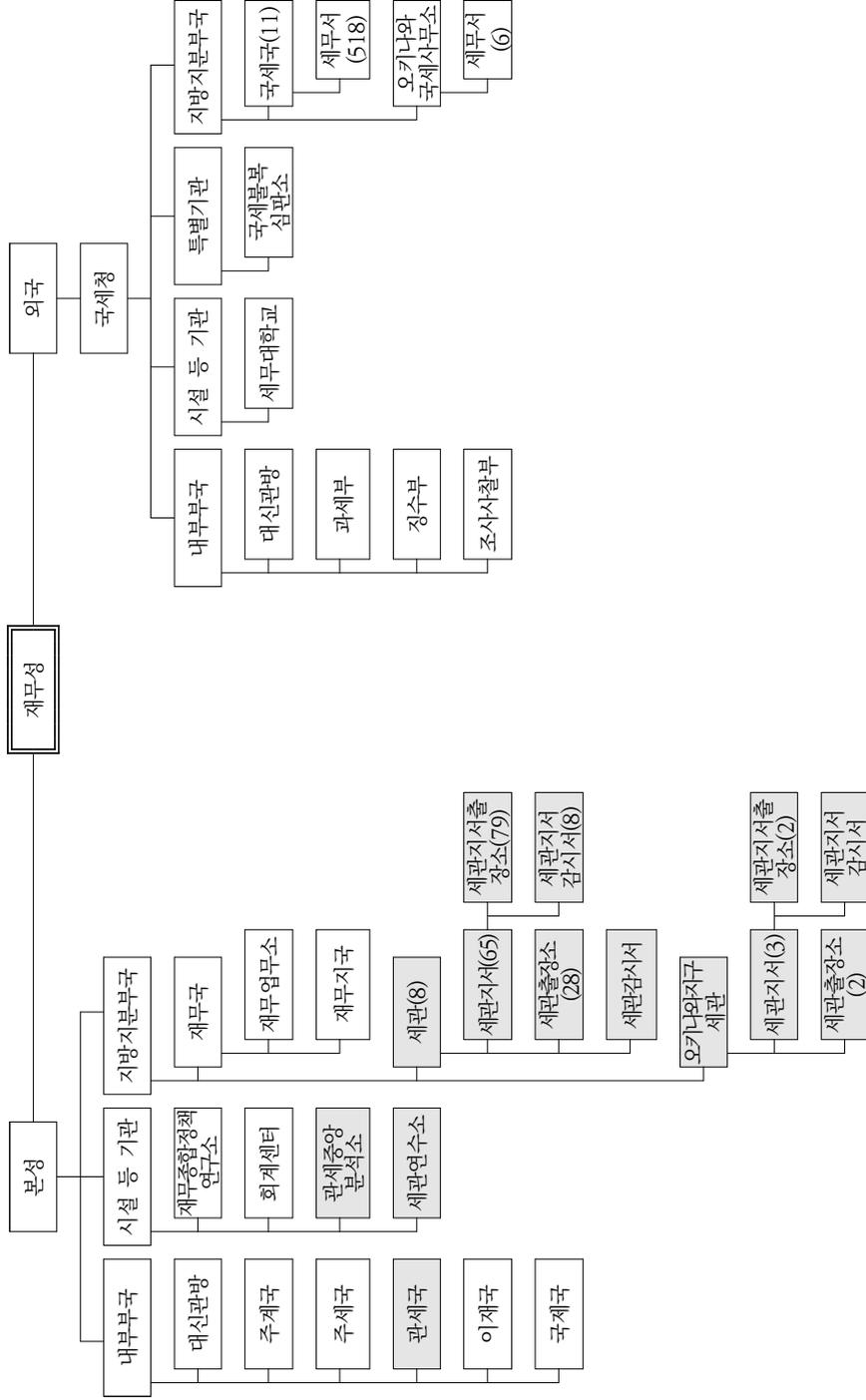
95)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6조(관세국의 소관사무)

- 세관 및 오키나와 세관은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 등의 부과·징수, 수출입화물, 선박 등의 단속, 보세제도 운영, 통관업의 감독 이외에 다음 사무를 분장함<sup>96)</sup>
  - 재무성 소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것
  - 문교교육시설에서 국가의 회계사무직원의 연수 및 소장 사무(재무부의 지방 지분 부국에서 담당 업무를 포함)에 관한 연수의 실시
  - 기타 각 호에 열거된 것 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재무성에 속하는 사무
  - 제조담배의 특정판매업, 소금 특정판매업 및 특수용 소금 특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감독에 관한 일
  - 재무성 소관업무에 관한 외환거래의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일
  - 금의 수출입 규제에 관한 일
  - 수출입화물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징수
  -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른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 단속
  - 수출입거래법에 따른 화물의 수출 단속

---

96) 「일본 재무성 설치법」 제16조(세관 등)

[그림 III-1] 일본 재무성 조직도(2017년)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about\\_mof/introduction/organization/index.htm](http://www.mof.go.jp/about_mof/introduction/organization/index.htm)(검색일자: 2018. 1. 16.)

- 관세국에는 총무과(總務課), 관리과(管理課), 관세과(關稅課), 감시과(監視課), 업무과(業務課), 조사과(調査課) 등의 6개 과를 둬<sup>97)</sup>
  - 각 과에는 실과 전문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와 실은 실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sup>98)</sup>
  
- 총무과에는 사무관리실(事務管理室)과 시스템협력전문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sup>99)</sup>
  -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00)</sup>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 관련 정책 일반에 관한 사무
    - 본성과 세관 사무의 연락 조정
    - 세관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무의 조정
    - 세관경비의 대략적인 조정 및 배분
    - 세관 소속의 행정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조정
    - 각 호에 열거된 업무 외에 관세국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
  - 사무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01)</sup>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NACCS) 주식회사의 업무 및 조직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사무
    - 세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처리에 관한 조사 기획 및 조정
  - 시스템협력전문관은 총무과 소관사무 중 세관의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sup>102)</sup>

97)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37조(관세국에 두는 과)

98)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26

99)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6조 제1항

100)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38조(총무과 소관사무)

101)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6조 제2항

102)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6조 제4항

- 관리과에는 세관고사관리실(税関考査管理室)을 둠<sup>103)</sup>
- 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04)</sup>
    - 세관직원의 인사, 교양 및 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 세관행정의 감사
  - 세관고사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05)</sup>
    - 세관직원의 복무 관련 고사에 관한 사무의 조정
    - 세관행정의 고사에 관한 사무의 조정
- 관세과에 특수관세조사실, 원산지규칙실, 세관조사실, 경제연계실, 참사관, 국제협력전문관을 둠<sup>106)</sup>
- 관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07)</sup>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 및 세관 행정에 관한 제도(외국과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관한 협정 포함)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항
    - 관세국의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무
    - 세관통계에 관한 사무
    - 관세·외환 등 심의회 관세 분과회의 서무
  - 특수관세조사실은 특수관세 조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08)</sup>
  - 원산지규칙실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09)</sup>
  - 세관조사실은 세관행정에 관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10)</sup>

103)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7조 제1항

104)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39조(관리과 소관사무)

105)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7조 제2항

106)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8조 제1항

107)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40조(관세과 소관사무)

108)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8조 제2항

109)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8조 제4항

110)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8조 제6항

- 경제연계실은 경제의 연계에 관한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와 세관행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11)</sup>
- 국제협력전문관은 관세국의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관함<sup>112)</sup>
- 참사관은 국제교섭담당, 국제협력담당이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주관함<sup>113)</sup>
  - 경제협력 및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관세 등에 관한 사무
  - 세계 무역기구에 관한 사무
  - 외국의 관세 등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 외국 무역 상황의 조사, 연구
  - 관세 등에 관한 다자간 협정과 쌍무 협정 또는 협의의 기획 입안
  - 지역 협력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관세 등에 관한 사무
  - 관세 협력 이사회에 관한 사무
  - 관세국의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무
- 감시과에는 감시 단속 조정관 및 보세 조사관을 둠<sup>114)</sup>
  - 감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15)</sup>
    -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업무과 및 조사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 제외)
    - 여객 및 승무원 휴대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징수(업무과 및 조사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 제외)
    - 개항 및 세관 공항에 관한 사무
    - 관세정률법 및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된 제조공장에 관한 사무
    -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무
    - 보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111)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8조 제8항

112)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8조 제10항

11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k-kikou.htm>(검색일자: 2018. 1. 16.)

114)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9조 제1항

115)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42조(조사과 소관사무)

- 감시단속조정관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필요한 조정을 담당함<sup>116)</sup>
  - 보세조사관은 보세구역에 관한 조사를 처리함<sup>117)</sup>
- 업무과에 지적재산조사실, 관세분류조사관, 관세평가전문관 및 인증사업자조정관을 둠<sup>118)</sup>
- 업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19)</sup>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의 부과·징수(감시과 및 조사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
    -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사무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산정
    - 수출입화물에 관한 허가 및 승인(여객 및 승무원 휴대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것 및 조사과의 소관에 속하는 것 제외)
    - 수출입화물의 분석
    - 우편물의 수출입 절차에 관한 사무
    - 범칙 물건 및 공매 또는 매각하는 부동산의 감정
    - 통관업의 허가, 통관업자의 감독, 통관사 시험에 관한 사무
    - 세관행정에 관한 이의 제기 및 소송
    - 관세 등 불복 심사위원회의 사무
  - 지적재산권조사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육성자권(育成者權)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20)</sup>

---

116)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9조 제2항

117)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9조 제3항

118)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0조 제1항

119)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43조(업무과 소관사무)

120)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0조 제2항

- 관세분류조사관은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조사를 담당함<sup>121)</sup>
  - 관세평가전문관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sup>122)</sup>
  - 인정사업자조정관은 특례수입자, 특정수출자, 인증 공급자 및 인증 관세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 사항을 처리함<sup>123)</sup>
- 조사과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별도의 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24)</sup>
    - 수입된 화물에 관한 관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관세에 관한 검사
    - 수출된 화물에 관한 조사 및 검사
    - 관세에 관한 법령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정보에 대한 외국세관 당국 등과의 연락 및 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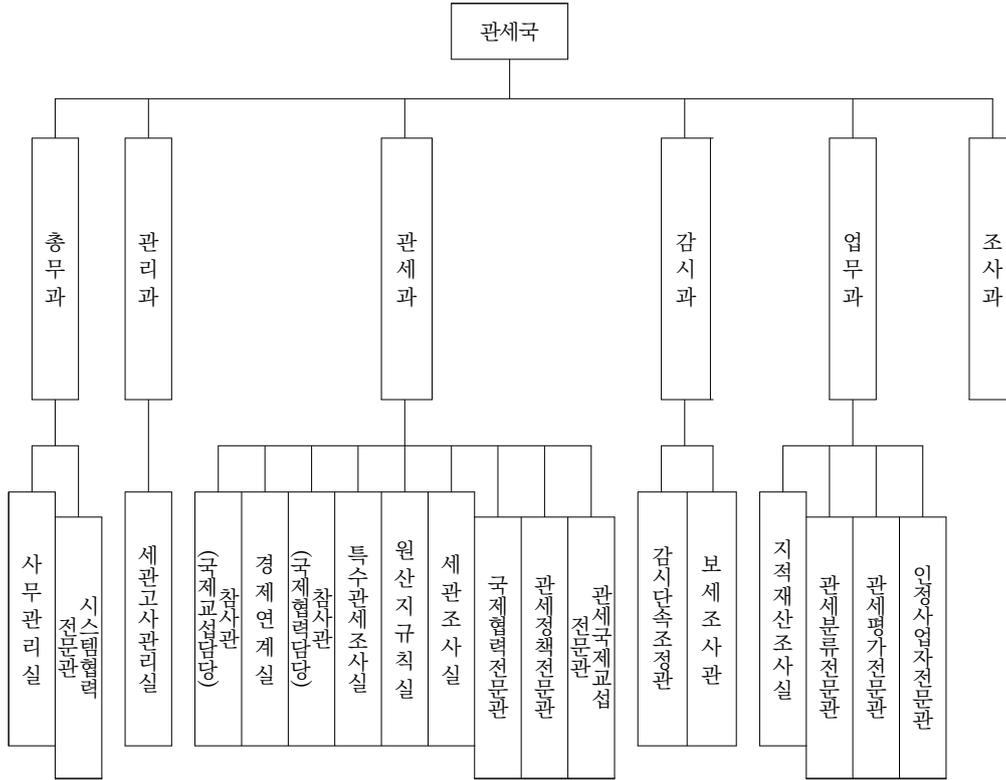
121)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0조 제4항

122)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0조 제5항

123)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0조 제6항

124)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44조(조사과 소관사무)

[그림 Ⅲ-2] 일본 관세국 조직도(2017년)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6.)

나) 시설 등 기관

- 재무성 본성에 재무종합정책연구소, 회계센터, 관세중앙분석소, 세관연수소의 시설 등 기관을 둬<sup>125)</sup>
- 이들 중 관세중앙분석소, 세관연수소는 관세와 관련된 조직임

125)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66조(설치)

- 관세중앙분석소는 세관의 세액확정, 밀수 적발, 국제협력에 필요한 분석을 세관 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sup>126)</sup>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성능 분석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석을 수행함<sup>127)</sup>
  - 관세중앙분석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28)</sup>
    -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수출입화물에 관한 분석
    - 수출입화물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시험, 연구 및 조사
  
- 관세중앙분석소에는 총무과, 수석분석관 및 주임연구관을 두며, 수석분석관 밑에 조사기획실, 분석실, 주임연구관 밑에 조사연구실을 둠
  -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29)</sup>
    - 소장의 관인 및 청인의 보관
    - 직원의 인사
    - 공문의 접수, 발송, 편집 및 보관
    - 회계 업무
    - 물품 및 기관의 관리
    - 수출입화물 샘플의 정리 및 보관
    - 기타 관세중앙분석소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
  - 분석 조정관은 분석에 관한 국제 업무 조정을 담당함<sup>130)</sup>
    - 제1분석실은 광석, 점토 등의 광물성 생산품, 무기 화합물, 귀금속 제품, 천연·합성 수지, 천연·합성 고무, 섬유 및 종이 제품 등을 분석함
    - 제2분석실은 식료품, 농수산물, 유지, 식품 향료, 육류 등을 분석함
    - 제3분석실은 유기 화학물질, 계면활성제, 원유, 석유 제품, 정유·향료제품, 염료, 안료, 불법약물(마약, 각성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등의 분석을 담당함

126) 일본 관세중앙분석소, <http://www.customs.go.jp/ccl/profile/index.htm>(검색일자: 2018. 1. 17.)

127) 일본 관세중앙분석소, <http://www.customs.go.jp/ccl/works/index.htm>(검색일자: 2018. 1. 17.)

128)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69조(관세중앙분석소)

129)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0조

130) 일본 관세중앙분석소, <http://www.customs.go.jp/ccl/profile/2.htm>(검색일자: 2018. 1. 17.)

- 조사연구실에서는 밀수에 대한 세관의 단속 검사장비의 정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기의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고, 외국의 단속 장비의 개발 상황을 조사하며,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최신기술을 도입한 탐지기 등의 연구를 실시함<sup>131)</sup>
  - 제1조사연구실에서는 감시 단속 지원을, 제2조사연구실은 통관 단속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세관연수소는 세관직원에게 세관의 사명을 자각시키고, 세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그 응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관세행정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관직원에게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임<sup>132)</sup>
  - 세관연수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33)</sup>
    - 재무부 직원에게 세관행정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실시
    - 관세, 통세 및 특별통세, 세관행정에 관한 연수에 관한 국제 협력
  
- 세관연수소에는 총무과와 연수·연구부를 두며<sup>134)</sup>, 연수·연구부에는 교무과와 국제연수과를 둬<sup>135)</sup>
  -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36)</sup>
    - 소장의 관인 및 청인의 보관
    - 직원의 인사
    - 공문의 접수, 발송, 편집 및 보관
    - 회계 업무
    - 물품 및 기관의 관리

131) 일본 관세중앙분석소, <http://www.customs.go.jp/ccl/profile/2.htm>(검색일자: 2018. 1. 17.)

132) 일본 세관연수소, <http://www.customs.go.jp/cti/001.html>(검색일자: 2018. 1. 17.)

133) 「일본 재무성 조직령」 제70조(세관연수소)

134)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5조

135)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8조

136)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6조

- 재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세관행정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연수계획의 작성, 기타 기획 및 입안
  - 연수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
  - 연수에 관한 교과서 및 교재의 작성 및 배포
  - 기타 세관연수소의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것
- 연수·연구부는 재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세관행정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연수,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함<sup>137)</sup>
- 교무과는 연수에 대한 수업계획 작성 및 시험 실시, 연수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관, 기타 연수·연구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주관함<sup>138)</sup>
  - 국제연수과는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 작성,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국제협력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배포,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 중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주관함<sup>1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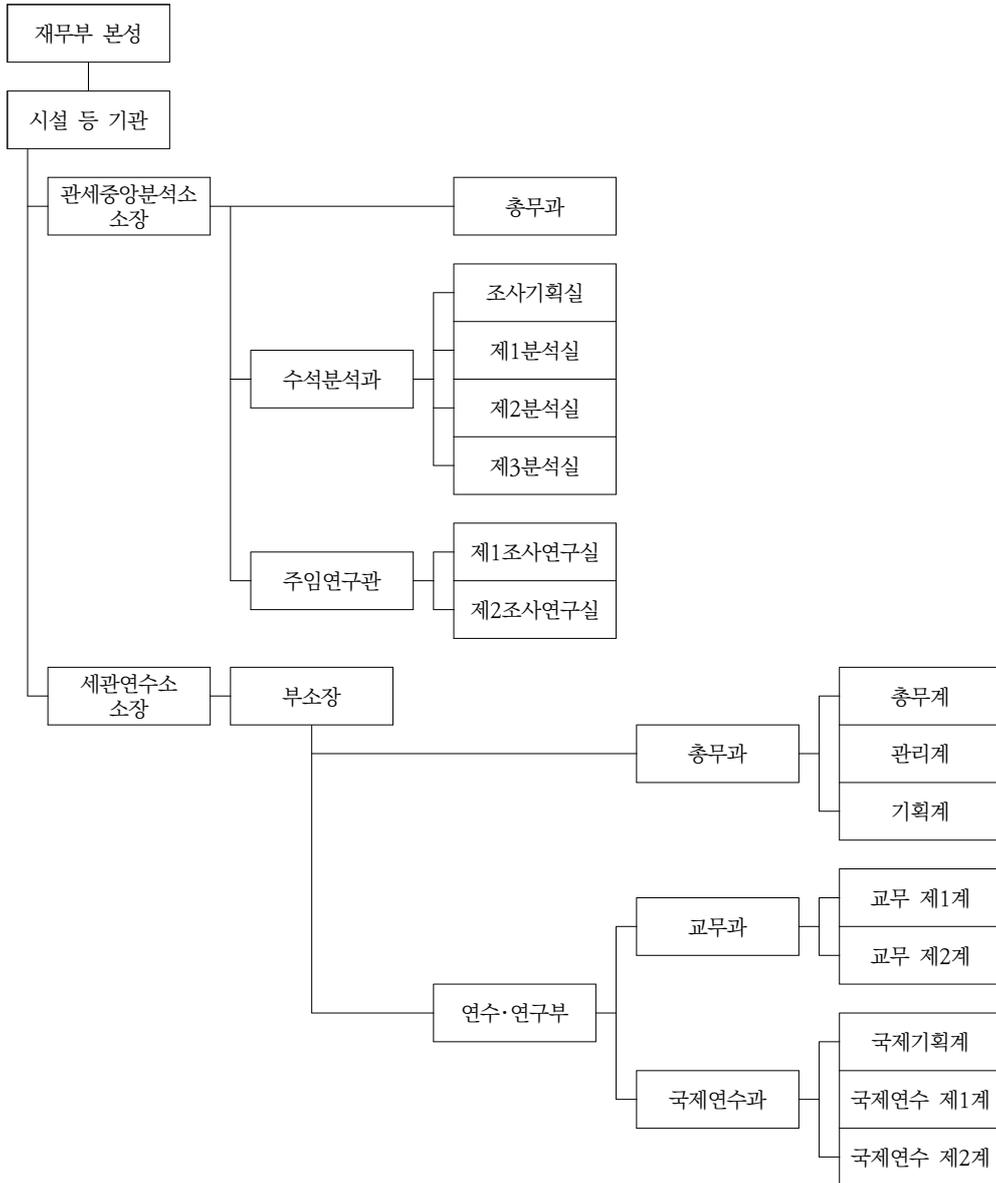
---

137)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7조

138)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9조

139)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89조

[그림 Ⅲ-3] 일본 재무성 시설 등 기관 조직도(2017년)



자료: 관세중앙분석소, <http://www.customs.go.jp/ccl/profile/2.htm>(검색일자: 2018. 1. 17.), 세관연수소, <http://www.customs.go.jp/cti/003.html>(검색일자: 2018. 1. 17.)

## 나. 관세국의 변천

### 1) 관세국의 설립과 역사

- 일본은 1854년에 체결된 미·일 화친조약에 따라 개항<sup>140)</sup>을 시작하였으며, 1859년 세관의 전신인 운상소(運上所)를 개설하였음<sup>141)</sup>
  - 운상소는 나가사키, 가나가와(요코하마), 하코다테 항구에 설치되었으며, 오늘날의 세관업무와 같은 수출입 화물의 감독, 세금징수 업무와 외교 사무를 주관하였음
  
- 메이지 유신 후 운상소는 중앙정부기구로서 외무성 관할하에 있다가 1871년 대장성(大藏省)으로 옮겨진 후 1872년 세관으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관세행정의 기초가 확립됨<sup>142)</sup>
  - 1886년 세관관계, 1897년 관세정률법, 보세창고법, 1899년 관세법, 톤세법 등 관세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함
  
- 1941년 발발된 태평양전쟁으로 인하여 군수물자의 수송 등이 필요함에 따라 1943년 세관관계가 폐지되고, 세관은 사실상 폐쇄되었다가 종전 이후 1946년 재개되었음<sup>143)</sup>
  - 세관이 폐쇄되었을 때 그 시설과 인원이 모두 해운국에 이관되었다가, 1949년 대장성 주세국의 세관부로 돌아옴
  - 1964년 세관부가 승격되어 관세국이 설립되었음

140) 시모다, 하코다테가 개항함(일본관세연구회, 『일본 세관연수원교재 III』, 관세청, 2012, p. 130

14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검색일자: 2018. 1. 17.); 강성훈 외 3인(2016)에서 재인용

142) 일본관세연구회(2012), p. 131

143) 일본관세연구회(2012), pp. 132~133

## 2) 관세국의 조직개편

- 2001년 1월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개칭되면서, 관세국도 총무과, 관리과, 관세과, 조사과, 감시과, 업무과, 조사보세과의 7개 체제로 개편되었음<sup>144)</sup>
  - 총무과에는 사무관리실, 관리과에는 세관고사관리실, 조사과에는 세관조사실과 관세기획관 및 국제협력전문관, 감시과에는 밀수정보전문관, 업무과에는 관세분류조사관, 지적재산전문관, 조사보세과에는 보세조사관이 운영되었음<sup>145)</sup>
  
- 2005년 조사과가 관세과로 통합되면서 조사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가 관세과로 이관하였음<sup>146)</sup>
  - 조사과 산하의 관세조사실도 관세과로 이관되었으며, 참사관(국제교섭담당, 국제협력담당), 경제연계실, 특수관세전문관, 원산지규칙전문관, 국제협력전문관이 신설됨<sup>147)</sup>
  
- 2006년에는 조사보세과가 조사과로 개칭되고, 감시과의 밀수정보전문관과 그 업무가 조사과로 이관되면서 관세법규 관련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과 외국세관 당국 등과의 정보 관련 연락 및 조정을 조사과에서 담당하게 됨<sup>148)</sup>
  - 조사보세과의 보세조사관은 감시과로 이관되고, 그 업무인 보세구역에 관한 사무, 개항·세관공항에 관한 사무는 감시과가 담당함

144) 일본 재무성,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3157/www.mof.go.jp/mof/kaihenb.htm> (검색일자: 2018. 1. 17.)

145)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3157/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146)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38045/www.customs.go.jp/zeikan/k-kikou.htm>(검색일자: 2017. 1. 17.)

147)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38045/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7. 1. 17.)

148)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5088/www.customs.go.jp/zeikan/k-kikou.htm>(검색일자: 2018. 1. 17.)

- 2006년 현재의 동일한 과 체계가 완성된 이후 과 조직의 개편은 없었으며, 과 산하의 실 또는 전문관의 개편만 이루어짐
  - 2007년에는 업무과에 관세평가전문관이 신설되어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sup>149)</sup>
  - 2008년 업무과에 인정사업자조정관이 신설되어 특례수입자, 특정수출자, 인증공급자 및 인증 관세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50)</sup>
  - 2009년 관세과의 특수관세전문관이 특수관세조사실로 승격되었으며, 감시과에 감시단속조정관이 신설됨<sup>151)</sup>
    - 또한 관세과에 관세국제교섭전문관이 신설됨
  - 조사과에 정보조사전문관이 2010년 신설되었다가<sup>152)</sup> 2016년 폐지됨<sup>153)</sup>
    - 2010년에는 관세과에 관세정책전문관도 신설됨
  - 2011년 업무과의 지적재산전문관이 지적재산조사실로 승격됨<sup>154)</sup>
  - 2013년 총무과에 시스템협력전문관이 신설됨<sup>155)</sup>
  - 2017년에는 관세과의 원산지규칙전문관이 원산지규칙실로 승격됨<sup>156)</sup>

---

149)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61720/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150)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58902/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151)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6907/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152)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1165060/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7. 1. 17.)

153)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10169007/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154)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905469/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155)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8296036/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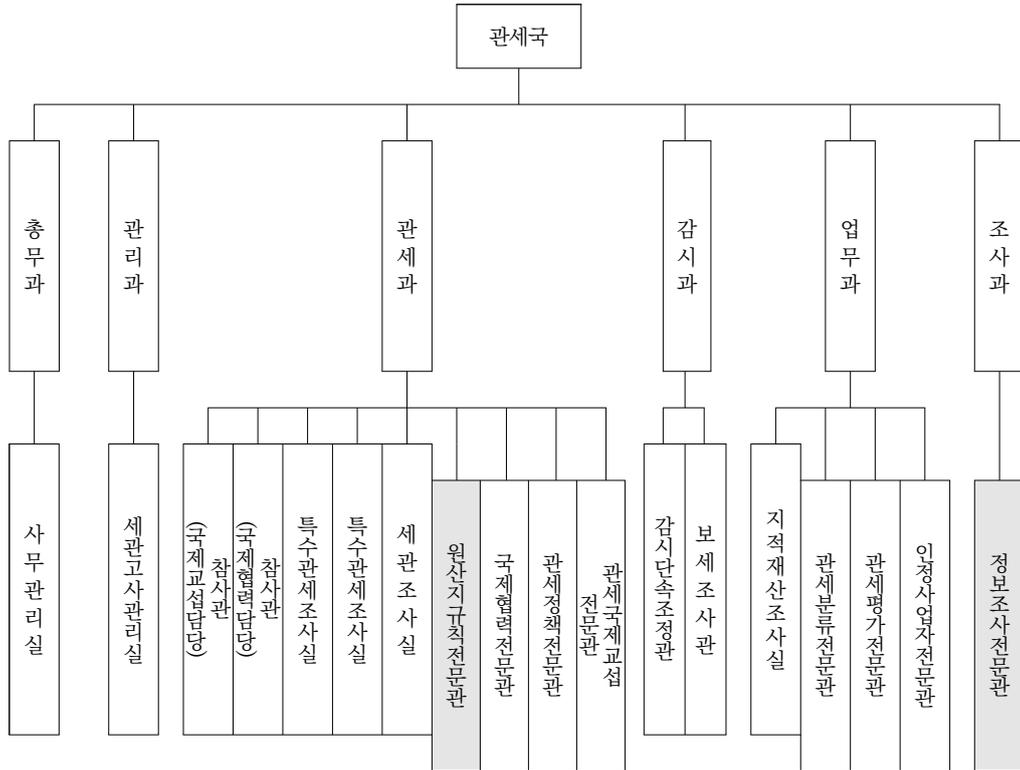
156)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10404234/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검색일자: 2018. 1. 17.)

〈표 III-1〉 일본 관세국 연혁

일자	조직 연혁
1853	미국 제독 페리의 함대 우라가에 입항
1854	일-미 화친조약 체결
1859	미국(6월), 네덜란드(7월), 러시아(7월), 영국(7월), 프랑스(9월)와 수호통상조약 체결
1859	하코다테, 가나가와, 나가사키 개항 및 운상소 설치
1872	전국의 운상소를 세관이라는 호칭으로 통일
1886	세관관제 제정
1890	관세법, 관세규정 시행
1899	관세정률법, 톤세법 시행
1943	세관관제 폐지
1946	세관 재개(하코다테,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세관)
1951	관세정률법 세율 개정
1954	관세법 전부 개정
1955	GATT 가입 정식 발효
1957	톤세법 및 특별톤세법 시행
1960	관세잠정조치법 시행
1964	관세협력이사회(CCC) 가입
1966	관세 신고납부제도 실시
1967	통관법 시행
1968	사후조사제도 도입
1971	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
1972	오키나와 지구 세관 설치
1979	항공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Air-NACCS) 가동
1991	해상화물 통관정보처리시스템(Sea-NACCS) 및 통관정보 종합관정시스템(CIS) 가동
1997	다른 부처 시스템과 윈스톱 서비스 구축
2003	수출입 항만 관련 절차 싱글윈도우 개시
2006	특정수출신고제도 도입
2007	특정보세승인제도 도입
2008	부성(府省) 공통 싱글윈도우 포털 가동
2010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가동(Air-NACCS와 Sea-NACCS 통합)
2017	수출입 신고 관서의 자유화 제도 도입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history.htm>(검색일자: 2018. 1. 17.); 강성훈 외 3인(2016)에서 재인용

[그림 III-4] 일본 관세국 조직도(2011년)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arp.ndl.go.jp/info:ndljp/pid/2899508/www.customs.go.jp/zeikan/kyoku-soshiki.pdf>  
(검색일자: 2018. 1. 26.)

### 다. 관세국의 주요 특징

#### 1)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의 민영화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은 수출입 통관, 기타 세관 수속 및 관련 민간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음<sup>157)</sup>

- NACCS센터는 NACCS를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변경 및 개발, 기타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sup>158)</sup>
  - 관세국의 총무과 산하 사무관리실에서 NACCS센터의 운영을 감독·조정함<sup>159)</sup>
- NACCS센터는 행정과 관련된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회사로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민영화되었음<sup>160)</sup>
- NACCS센터는 1977년 특례법 「항공운송화물의 통관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인가법인인 “항공화물 통관 정보처리센터”로 설립됨<sup>161)</sup>
    - 인가법인이란 행정수요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법의 범위 내에서 민간 등의 관계자가 임의설립하고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는 법안을 말함<sup>162)</sup>
  - 1991년 「항공운송화물의 통관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세관 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항공화물 통관정보처리센터”가 “통관정보처리센터”로 개칭됨<sup>163)</sup>
  - 2001년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 계획」<sup>164)</sup>이 통관정보처리센터를 독립행정법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3년 인가법인인 통관정보처리센터가 해산되고, 독립행정법인으로 통관정보처리센터가 설립됨
    - 독립행정법인이란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필요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사무 및 사업 중 국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sup>165)</sup>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

157) 일본 NACCS, <http://www.naccs.jp/aboutnaccs/aboutnaccs.html>(검색일자: 2018. 1. 25.); 강성훈 외 3인(2016), p. 239에서 재인용

158) 일본 NACCS, 「NACCS」, 2017, p. 14

159)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6조 제2항

160) 김영선, 『일본의 행정개혁(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7, p. 16

161) 일본 NACCS(2017), p. 12

162) 김영선(2008), p. 16

163) 일본 NACCS(2017), p. 12

164) 2001년 12월 19일 각의 결정

165) 민간에 맡길 경우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하나의 주체에게 맡겨 독점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 및 사업에 한함

는 법인을 말함<sup>166)</sup>

- 2007년 「독립행정법인 정리 합리화 계획」<sup>167)</sup>는 통관정보처리센터를 특수회사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세관수속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후 독립행정법인 통관정보처리센터를 해산하고,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함<sup>168)</sup>
  - 특수회사란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국가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sup>169)</sup>

□ NACCS센터가 관리·운영하는 NACCS는 통관절차 전반에 더하여 수출입 관련 식품위생·동식물 검역절차, 무역관리절차, 항만·공항에 대한 입출항절차 등의 관 업무와 수송, 보관 등의 수출입 관련 민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민관공동시스템임<sup>170)</sup>

- NACCS에는 세관 기타 관계 행정기관, 항공회사(대리점), 선박회사(대리점), 무선박운송인, 보세장치업자, 선·기용품업자, 관세사, 은행 및 기타 수출입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 기존에는 항공화물 수속을 담당하는 Air-NACCS와 해상화물 수속을 담당하는 Sea-NACCS가 독립적 시스템으로 운용되었으나 2008년 Sea-NACCS의 갱신, 2010년 Air-NACCS의 갱신을 계기로 통합 NACCS가 가동됨<sup>171)</sup>
- 이외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시스템과 상호 접속·연계됨으로써 통관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 번의 입력과 송신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수출입·항만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166) 김영선(2008), p. 14

167) 2007년 12월 24일 각의 결정

168) 일본 NACCS(2017), p. 12

169) 김영선(2008), p. 16

170) 일본 재무총합연구소, 「관세」, 『재정금융통계 월보』 제784호, 2017. 8, p. 85

171) 일본 NACCS, <http://www.naccs.jp/aboutnaccs/aboutnaccs.html>(검색일자: 2018. 1. 25.); 강성훈 외 3인(2016), p. 239에서 재인용

- 2008년 국토교통성의 항만EDI시스템과 법무국의 입국심사시스템, 2010년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시스템(JETRAS), 2013년 농림수산부의 동식물검역절차시스템(PQ-NETWORK, ANIPAS)과 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을 통합함
- 또한 2014년 의약품 등의 수입신고, 수입보고, 수출용 제조 수입신고 등의 의약품 등의 수출입절차 기능을 NACCS에 추가함

## 2) 센터조직의 운영

- 도쿄세관은 관할구역뿐 아니라 전국세관에 설치된 기구를 총괄하는 9개의 센터를 운영<sup>172)</sup>함으로써 실질적인 관세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마약탐지견훈련센터(Drug Detector Dog Training Center)는 마약탐지견의 육성과 통일적인 훈련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73)</sup>
  - 총괄시스템기획조정관(Office of Senior Planning & Coordination)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와 세관의 정보처리조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함<sup>174)</sup>
  - 총괄관세감사관(National Classification Center)은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음의 사무를 주관함<sup>175)</sup>
    -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율표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
    - 수출입화물에 대한 통계 품목분류표의 통일적인 분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정보 수집 및 제공
  - 총괄원산지조사관(Origin Administration & Investigation Center)은 수출입 화물 등에 관한 원산지증명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무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 정보수집 및 제공을 담당함<sup>176)</sup>

172) 일본 도쿄세관, <http://www.customs.go.jp/tokyo/kankatu/3.htm>(검색일자: 2018. 1. 17.)

173)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90조

174)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276조

175)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11조

- 총괄인정사업자관리관(AEO Center)은 특례수입자 및 특정수출자의 승인, 인증 공급자 및 인증관세사의 승인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정보수집 및 제공을 담당함<sup>177)</sup>
  - 총괄지적재산조사관(IPR National Center)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화물에 관한 수출 및 수입 금지신청 심사 및 인증의 통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정보수집 및 제공을 주관함<sup>178)</sup>
  - 총괄관세평가관(National Valuation Center)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산정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정보수집 및 제공을 담당함<sup>179)</sup>
  - 범칙조사센터실(National Customs Offense Investigation Center)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80)</sup>
    - 광역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칙사건에 관해 필요한 조사, 자문 및 조정
    - 중요한 범칙사건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자문 및 조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및 정리
  - 총괄정보관리관(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주관함<sup>181)</sup>
    - 범칙사건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 내국 소비세의 부과·징수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 도쿄세관의 센터에서 총괄하는 전국세관의 기구는 시스템기획조정관, 관세감사관, 원산지조사관, 인증사업자관리관, 지적재산조사관, 관세평가관, 범칙조사관, 정보관리관 등이 있음<sup>182)</sup>

176)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12조

177)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12의2조

178)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13조

179)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14조

180)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27조

181)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34조

- 일본의 9개<sup>183)</sup> 세관은 총무부, 감시부, 업무부, 조사부로 구성되는데, 시스템기획조정관은 총무부, 관세감사관, 원산지조사관, 인증사업관리관, 지적재산조사관 및 관세평가관은 업무부, 법칙조사관 및 정보관리관(범칙·통관)은 조사부 소속<sup>184)</sup>이나 도쿄세관의 센터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2. 러시아의 관세행정 조직

### 가.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 러시아 관세청은 2018년 현재 재무부의 관할하에(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Russian Federation)<sup>185)</sup> 연방청으로(Federal Service) 운영되고 있음
- 러시아 재무부는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징수, 관세 환급, 관세 및 관세평가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및 법 규정 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음<sup>186)</sup>
  - 재무부의 세금 및 세관 정책(Department of Tax and Customs Policy) 부서에서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을 담당하고 있음<sup>187)</sup>

182) 일본 하코다테 세관, <http://www.customs.go.jp/hakodate/02soshiki/index.html>(검색일자: 2018. 1. 17.)

183) 하코다테세관, 도쿄세관, 요코하마세관, 나고야세관, 오사카세관, 고베세관, 모지세관, 나가사키세관, 오키나와지구세관(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kyotsu/map/index.htm>(검색일자: 2018. 1. 17.))

184) 일본 하코다테 세관, <http://www.customs.go.jp/hakodate/02soshiki/index.html>(검색일자: 2018. 1. 17.)

185) 러시아 관세청(POSITION ABOUT THE FEDERAL CUSTOMS SERVICE),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1&Itemid=1820](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1&Itemid=1820) (검색일자: 2018. 1. 11.)

186) 러시아 정부(Ministry of Fina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government.ru/en/department/69/events/>(검색일자: 2018. 1. 11.)

187) 러시아 재무부(Ministry of Russia), <https://www.minfin.ru/ru/ministry>(검색일자: 2018. 1. 17.)

- 재무부는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을 포함하여 연방 세금청(Federal Taxation Service), 연방알코올시장규정청(Federal Service for Alcohol Market Regulation), 재무청(Treasury)을 관할하고 있음<sup>188)</sup>
  
- 통상 정책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부에서는 할당, 반덤핑, 특혜 세율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을 담당하고 있음
  - 기타 산업인증은 관련 인증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 러시아 관세청은 세관, 해외사무소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의 중앙은행, 집행기관, 지역정부 등과 협업하고 있음
  - 세관관련 문제에 대한 통제와 감독뿐 아니라 국경에서의 통화 유통조절,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한 담당하고 있음
  
- 러시아 관세청은 조직·감사국, 세관절차·세관통제국, 물류지원국, 재정·경제국 등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188) 러시아 정부(Ministries and Agencies),  
[http://government.ru/en/ministries/#federal\\_ministries](http://government.ru/en/ministries/#federal_ministries)(검색일자: 2018. 1. 11.)

[그림 Ⅲ-5]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2018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3. 12: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러시아 관세청(영문),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4&Itemid=1840](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4&Itemid=1840)(검색일자: 2018. 1.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조직·검사국, 법무국, 분석국, 품목분류국, 세관 협력국, 홍보국, 관세심문·조사국, 부패 방지국, 물류지원국, 물품 반출 후 세관 통제국, 행정국, 통제·보정국, 관리서비스·인사국, 재정·경제국, 밀수 방지국, 관세통계·분석국, 세관절차·세관 통제국, 무역장벽·통화·수출통제국, 연방관세수입·관세규제국, 정보·기술국 등 등 총 20개국임

□ 20개의 국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별 해당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조직·검사국(Gener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Inspection)<sup>189)</sup>
  - 조직·감사 총괄국은 관세청 각 국들의 활동 감시 및 통제, 관세청의 활동 계획 조직 및 활동 구조화 등의 역할을 담당함
- 법무국(Legal Department)<sup>190)</sup>
  - 관세청의 법적안정성 확보 및 관세청 및 지역세관에 법률 자문을 담당함
- 분석국(Analysis Department)<sup>191)</sup>
  - 정책 분석 및 정보제공, 세관 규정 및 세관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분석 등을 담당함
- 품목분류국(Good Nomenclature Department)<sup>192)</sup>
  - 물품 분류 관련 국가 정책 제안, 러시아 품목분류 체계 개발 및 적용 등을 담당함
- 세관 협력국(Department of Customs Cooperation)<sup>193)</sup>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국제협약 제안 및 준비 등을 담당함

189)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3Astrukt2&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3%3Astrukt2&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0)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1%3Astrukt9&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1%3Astrukt9&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1)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3%3Astrukt17&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3%3Astrukt17&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2)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2%3Astrukt16&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2%3Astrukt16&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3)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7%3A2011-01-12-20-22-19&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7%3A2011-01-12-20-22-19&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 홍보국(Public Relations Department)<sup>194)</sup>
  - 관세청 활동에 대한 미디어제작, 홍보물제작 및 배포 등을 담당함
- 관세심문·조사국(Department of Custom Inquiry and Investigation)<sup>195)</sup>
  - 관세범죄 관련 조사 보고서 및 증거 검사, 관세 행정 위반 조사 및 결정 등을 담당함
- 부패 방지국(Anti-corruption Department)<sup>196)</sup>
  - 부패 방지 조사, 관세청 직원 및 내부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함
- 물류지원국(General Department of the Logistics Support)<sup>197)</sup>
  - 물류와 관련된 경제 정책 실행, 관세청의 물품관리 및 지역세관 물품관리 등을 담당함
- 물품 반출 후 세관통제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Control after the Goods Release)<sup>198)</sup>
  - 조건부로 반출된 물품의 폐기, 사용 등과 같은 조건 실행 여부 검사, 물품반출관련 문서 검사 등을 담당함
- 행정국(Administrative Department)<sup>199)</sup>
  - 문서 업무 관련 방법 및 형식의 개선, 문서 형식의 통일 등을 담당함
- 통제·보정국(Control and Revision Department)<sup>200)</sup>

194)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5%3Astrukt12&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5%3Astrukt12&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5)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0%3Astrukt8&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0%3Astrukt8&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6)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6%3Astrukt13&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6%3Astrukt13&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7)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7%3Astrukt6&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7%3Astrukt6&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8)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89%3A2012-02-07-09-41-54&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89%3A2012-02-07-09-41-54&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199)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3%3Astrukt11&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3%3Astrukt11&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200)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9%3A2011-01-12-20-24-55&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9%3A2011-01-12-20-24-55&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 회계감사 조직 및 실행 등을 담당함
- 관리서비스·인사국(Department of Government Service and Personals)<sup>201)</sup>
  - 인사정책, 직원배치, 부서별 직원교육 관리, 진급 교육, 선발 배치 등에 관한 검사 및 통제 등을 담당함
- 재정·경제국(General Financial and Economic Department)<sup>202)</sup>
  - 국제은행 개발기금 관리, 관세청의 예산, 회계 등을 담당함
- 밀수 방지국(General Department of Anti-Smuggling)<sup>203)</sup>
  - 향정신성물질, 독성물질, 가스, 폭발물, 무기, 대량살상무기, 군사 기술, 주요 원자재, 문화 관련 물품 등의 밀수 방지 등을 담당함
- 관세통계·분석국(Department of Customs Statistics and Analysis)<sup>204)</sup>
  - 해외 무역 통계 지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통계 수집 방법의 개선, 통계 지표의 신뢰성 확보 등을 담당함
- 세관절차·세관통제국(Gener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of Customs Processing and Customs Control)<sup>205)</sup>
  - 특별 통관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물품에 따른 통관절차 적용, 물품의 신고, 반출 등을 담당함
- 무역장벽·통화·수출통제국(Department of Trade Barriers, Currency and Export Control)<sup>206)</sup>

201)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4%3A2011-01-12-20-18-01&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4%3A2011-01-12-20-18-01&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202)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9%3Astrukt7&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9%3Astrukt7&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203)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6%3Astrukt5&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6%3Astrukt5&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204)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8%3A2011-01-12-20-23-40&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8%3A2011-01-12-20-23-40&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205)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5%3Astrukt4&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5%3Astrukt4&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206)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2%3Astrukt10&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2%3Astrukt10&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 지재권 보호, 외환 거래 통제, 군사 물품 수출통제, 기술의 불법 수출 방지 등을 담당함
- 정보기술국(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Department)<sup>207)</sup>
  - 관세청 내의 정보 기술 지원, 정보 기술의 개발 및 효과적 사용 지원, 정밀산업시설 도입, 방사능 물질 통제 등을 담당함

〈표 Ⅲ-2〉 러시아 관세청 부서별 역할

	부서	역할
1	조직·검사국 (Gener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Insp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각국의 활동 및 지역세관의 활동 감시 및 통제</li> <li>- 관세청의 활동 계획 조직</li> <li>- 관세청 조직에 따른 활동 구조화</li> <li>- 관세청장의 지시 및 활동 통제</li> <li>- 관세청의 전략적 계획 구조화 및 계획 이행 통제</li> <li>- 관세청 각 국의 활동 지표 제작</li> <li>- 각 국에 의해 수행 된 기능 및 서비스 점검</li> </ul>
2	법무국 (Legal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관세청 각국의 활동이 유라시아연합의 법, 러시아 연방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inspect)</li> <li>- 관세청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li> <li>- 지역 세관에 법적 자문 및 지원제공</li> <li>- 관세청의 활동 및 관세청 국장들의 활동에 법적 자문 및 정보 제공</li> <li>- 관세청의 연방법 개정 제안 등에 참여하여 세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방법의 틀 안에서 정보 제공</li> <li>- 관세청 각국이 연방법 틀 안에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내용 조정</li> <li>- 관세청의 이익보장을 위한 법적안정성 확보</li> <li>- 이익제기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 개인의 권리확인 및 관세청 결정에 대한 자문</li> </ul>

207)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4%3Astrukt3&catid=1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4%3Astrukt3&catid=1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부서	역할
3	분석국 (Analysis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AEU 역내로 반입되는 차량과 통제 물품에 대해 분석</li> <li>-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형식에 대해 정의</li> <li>- 위험관리 시스템을 위한 전략 개발</li> <li>-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WCO 및 러시아 연방의 위험관리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적 도구 개발</li> <li>- 관세청 활동 분석 및 모니터링</li> <li>-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거시적 분석</li> <li>- 수출입 물품 통제에 관여하는 관세청 각국의 활동을 통제, 조정, 조직화함</li> <li>- 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 알코올 및 알코올 관련 제품, 담배 제품 통제 및 이와 관련된 관세청의 활동을 통제, 조정, 조직화함</li> </ul>
4	품목분류국 (Good Nomenclature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경제활동 품목 분류 제안</li> <li>- 품목분류에 따른 사전심사 결정 과정 통제, 조정, 조직화함</li> <li>- 품목분류 관련 관세청의 결정 및 활동 통제</li> <li>- 품목분류 관련 국가 정책 및 법 개정제안</li> <li>- 품목분류 관련 국제 사회의 논의 모니터링</li> <li>- HS체계를 따른 러시아 자체 품목 분류 개발 및 적용</li> </ul>
5	세관 협력국 (Department of Customs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과 관련된 국제 협력 활동에 참여</li> <li>- W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에 러시아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의 이익 실현</li> <li>- 관세 관련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 등에 대한 제안서 작성 후 재무부에 보고</li> <li>- 새로운 분야에 러시아 관세청과 해외 국가 관세청, 국제기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서 작성</li> <li>- 러시아 관세청의 해외 활동 조직, 외교적 무역관련 미션 이행을 위한 활동 조직</li> <li>- 통관과 관련한 해외 관세관련 법, 규정,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li> <li>- 비자 및 여행자 관련하여 국제 프로토콜 준수 및 관련 협력</li> </ul>
6	홍보국 (Public Relations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를 위한 각국의 활동에 대한 자료 요청</li> <li>-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지원</li> <li>- 각종 투자자 및 기업들과의 회의 제안 및 자료 취합 제출</li> <li>- 관세청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요약, 공표</li> <li>- 관세청 활동에 대한 홍보물 작성 및 배포</li> </ul>

	부서	역할
7	관세심문·조사국 (Department of Custom Inquiry and Inves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범죄 관련 조사, 보고서 작성, 증거 검사</li> <li>- 관세관련 행정적 위반에 대한 조사</li> <li>- 범죄사건에 대한 사전 조사</li> <li>- 관세청 각 국의 행정적 위반사례가 있을 시 사전조사</li> <li>- 세관 당국과 공무원이 내린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인</li> <li>- 행정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 조사</li> <li>-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에 따른 결정 이행</li> <li>- 압류된 물품에 대한 처분 결정</li> <li>- 직원의 재산 몰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 집행</li> <li>- 행정적 범죄 및 형사 사건에 관한 기록 작성, 유지, 보관</li> </ul>
8	부패 방지국 (Anti-corruption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부패 방지 조사, 부패 행위 근절</li> <li>- 세관 직원 및 관련자의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정보 보안 활동 등을 담당함</li> <li>- 관세청의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 및 조사</li> <li>- 민간과 결탁하여 부패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li> <li>- 관세청 내 국간 부정·부패 활동 조사</li> <li>- 관세청 직원 및 가족이 비합법적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지원</li> </ul>
9	물류지원국 (General Department of the Logistics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직원들의 의료 및 사회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 규정 준수</li> <li>- 화재 관련 보안 관리</li> <li>- 관세청 직원들의 숙소, ID카드 발급, 훈련에 사용되는 물품,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선박, 항공, 총기류 등 관리</li> <li>- 세관 당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작업,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서류 준비</li> <li>- 지역 세관 물품 지원 및 관리</li> <li>- 지역 세관 및 관세청 부지 관리</li> <li>- 조달 계획 수립 시 조달에 대한 타당성 조사</li> <li>- 물류 지원국에서 구매하는 제품, 작업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준, 표준 및 수량 기준 개발</li> </ul>
10	물품 반출 후 세관통제국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Control after the Goods Rel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로 반출된 물품의 폐기, 사용 등과 같은 조건 실행 여부 검사 및 심사</li> <li>- 물품 반출과 관련된 문서 확인 및 심사</li> <li>- 물품반출과 관련한 모든 관련인(운송자, 세관운송업자, 물품 발행인, 일시 보관에 관련이 있는 자, 면세점주, AEO 업체, 보세창고 관리자 등) 통제</li> </ul>

	부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조건 이행 확인 및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물품 반출 취소</li> <li>- 국가의 보안에 위배되는 물품이거나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물품의 경우 반출 후 추적 통제</li> <li>- 관세 및 제세금 납부에 대한 심사 후 이행 권고</li> <li>- 지적재산권을 위배한 물품의 반출 통제 및 반출 후 EAEU 관세영역 내 유통 통제</li> </ul>
11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국 (Administrative Depart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업무 관련 방법·형식의 개선, 문서 형식의 통일, 문서 분류 등 담당</li> <li>- 문서작성 방법에 대한 기준 제시 및 관련 법 개정 제안</li> <li>- 문서 자동화 과정 조직</li> <li>- 문서 관리 기준 제공</li> <li>- 전자문서 관리·유지 및 관련된 정보 지원</li> <li>- 관세청 및 기타 국가 부서와 전자 문서 형식 공유</li> </ul>
12	<p style="text-align: center;">통제·보정국 (Control and Revision Depart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감사 조직 및 실행</li> <li>- 관세청장에 의한 불시 회계 감사 및 조사</li> <li>- 회계 관련행정 위반 및 형사 위반이 있는지 파악</li> <li>- 매년 회계 감사 계획 작성</li> <li>- 내부 회계 감사보고서 작성</li> <li>- 내부 회계 감사 방법 개발</li> <li>- 서비스 조달에 대한 부서별 통제</li> <li>- 감사 결과로 밝혀진 결함 및 위반의 제거에 관한 업무 재조직</li> </ul>
13	<p style="text-align: center;">관리서비스·인사국 (Department of Government Service and Person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정책, 직원배치, 부서별 직원교육 관리, 진급 교육, 선발 배치 등에 관한 검사 및 통제 등</li> <li>- 인사 관련 노동법 준수 및 직원에 해당 정보 제공</li> <li>- 관세청 직원들의 업무 수준 향상 지원 또는 유지 지원 교육</li> <li>- 세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 제공, 심리적 지원 서비스</li> <li>- 러시아 세관 아카데미 운영</li> </ul>
14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경제국 (General Financial and Economic Depart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계획, 국제은행 개발기금 관리, 예산 및 예산 실행 내역 보고</li> <li>- 관세청 각국별 임금관리 및 특수 프로그램의 재정 관리</li> <li>- 관세청 국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검토 보고서 작성</li> <li>- 러시아 관세청 관할 하에 발생하는 이윤 활동에 대한 조정·통제</li> <li>- 관세청 및 세관 직원의 연금 계획 및 통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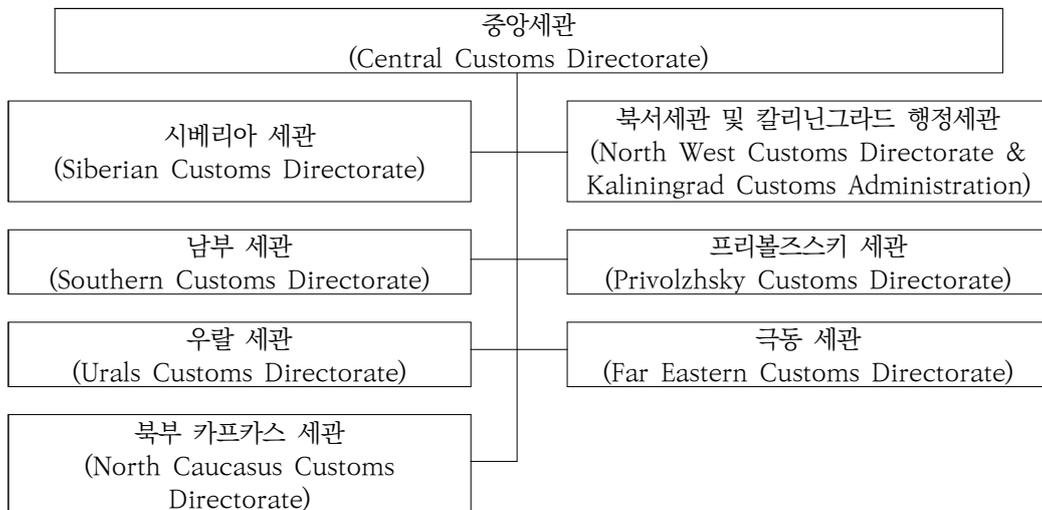
	부서	역할
15	밀수 방지국 (General Department of Anti-Smugg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정신성물질, 독성물질, 가스, 폭발물, 무기, 대량살상무기, 군사 기술, 주요 원자재, 문화 관련 물품 등의 밀수 방지</li> <li>- 경제를 위협하는 활동 또는 사건 등에 대한 정보 확보</li> <li>- 밀수자, 밀수 계획 파악 및 밀수 근절</li> <li>- 관세조직 내에서 범죄자와 결탁한 밀수자 파악</li> <li>- 특정한 물품에 대한 밀수 파악</li> <li>- 밀수 및 기타 범죄를 식별, 방지 및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 기술 및 탐색 활동을 수행</li> <li>- 밀수 위탁 또는 위임한 자의 억류</li> <li>- 회계 감사부 및 법 집행부와 협력하여 밀수 근절</li> <li>- 밀수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작성</li> <li>- 밀수 근절을 위한 규정 개정 제안</li> <li>- 테러 방지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의 활동 조직, 조정 및 통제</li> </ul>
16	관세통계·분석국 (Department of Customs Statistics and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통계 시스템 지표의 지속가능성 확인 및 통계 수집 방법의 개선, 통계 지표의 신뢰성, 효용성 증가 등을 담당</li> <li>- 해외무역통계(유라시아연합국 포함) 측정을 위한 개념(Concept) 정의 및 측정 방법 개선</li> <li>- 무역통계 신뢰성 확보</li> <li>- 무역통계 지표 개발 및 통계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li> <li>-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무역상대국과의 정보 교환</li> <li>- 무역통계 분석</li> <li>- 러시아 연방 의회, 연방 행정기관, 연방 집행 기관 등에 통계 정보 제공</li> <li>- 연방 정부의 대외 무역 세관 통계에 관한 출판물 관리</li> </ul>
17	세관절차·세관 통제국 (General Department of Organization of Customs Processing and Customs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및 차량의 이동에 따른 통관절차 관리</li> <li>- 특별 통관절차 및 세관 규정 적용 신청 관리</li> <li>- 물품에 따른 통관절차 적용</li> <li>- 물품의 신고, 반출, 일시 수출입 등 관리</li> <li>- EAEU내로 반입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세관처리절차 조직 및 개선</li> <li>- 특별 경제구역에서 수입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 및 기술적인 지원 개발</li> <li>- 특별 경제구역 관리 및 관련 활동 감독·통제</li> <li>- EAEU내로 반입되는 모든 것에(예: 사람, 물품) 대한 세관절차 마련</li> <li>- 일시 수출입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통제</li> </ul>

	부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절차에 참여하는 법적 독립체에 대한 활동, 참여자, 조건 등에 대해 모니터링</li> <li>- 국경 정책(border policy) 실행</li> <li>- 세관 관련 국가 정책 실행 및 제안</li> <li>- 관세청의 통제에 대한 형식 및 절차 개발</li> </ul>
18	무역장벽·통화·수출통제국 (Department of Trade Barriers, Currency and Export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재권 보호</li> <li>-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환 통제 및 물품 및 이동 통제, 군사 물품 수출통제, 기술 불법 수출 방지 등</li> <li>- 러시아가 국가 세입에 대한 심각한 감소 방지</li> <li>- 러시아 국제 조약에 따른 금지 및 제한 조건, EAEU 공통 관세법에 따른 금지 조건을 확인</li> <li>- EAEU 내의 불법 화폐거래 및 불법 외환 거래 통제</li> <li>-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자격 조건, 허가조건 통제</li> <li>- EAEU에서 자금세탁 또는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추적 및 통제</li> </ul>
19	연방관세수입·관세규제국 (General Department of Federal Customs Revenues and Tariff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li> <li>- 관세납부 및 행정처리 전반 관리</li> <li>- 관세행정 위반 벌금 징수, 및 관리</li> <li>- 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사전 판정 등에 관한 기록 통제 및 관리</li> <li>- 기타 관세 관련 벌금 등의 징수관리 및 기록 통제</li> <li>- 관세 관련 연방 수입 정리 및 보고</li> <li>- 관세 징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도입, 회계 시스템 도입</li> <li>- 각종 조약에 따른 관세 관련 세금 징수 관리</li> <li>- 관세 및 제세금 및 납부 및 징수 절차관리</li> <li>- 에너지 관련 세금 등에 대한 법령 개발 및 규제 개발 제안</li> <li>- 세금계산 관련 지표 개발 및 관리, 지표의 효과성 측정</li> <li>- 물품 반출 후 통제국과 긴밀한 협력</li> </ul>
20	정보·기술국 (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정보 기술 개발</li> <li>- 정보 기술 장비 확보 및 지원</li> <li>- 방사능 물질 통제</li> <li>- 과학적·기술적 정보 시스템 개발</li> <li>- 세관 내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li> <li>- 정밀 산업 시설 도입</li> </ul>

자료: Structure of the central office of the FCS of Russia,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5.)

- 중앙 세관(Central Customs Directorate) 하에 7개의 세관이 하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개의 세관은 다음과 같음<sup>208)</sup>
- 시베리아 세관(Siberian Customs Directorate)
  - 남부 세관(Southern Customs Directorate)
  - 우랄 세관(Urals Customs Directorate)
  - 북부 카프카스 세관(North Caucasus Customs Directorate)
  - 북서세관 및 칼리닌그라드 행정 세관(North West Customs Directorate) & Kaliningrad Customs Administration)
  - 프리볼즈스키 세관(Privolzhsky Customs Directorate)
  - 극동세관(Far Eastern Customs Directorate)

[그림 III-6] 러시아 세관 조직도(2018년)



자료: 러시아 관세청(영문),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92&Itemid=1915](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92&Itemid=1915)(검색일자: 2018. 1. 24.)

208) 러시아 관세청(영문)(Customs Division in the Foreign Trad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92&Itemid=1915](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92&Itemid=1915)(검색일자: 2018. 1. 24.)

## 나. 연방 관세청의 변천

### 1) 관세청의 설립과 역사

- 1811년까지 러시아의 관세청은 재무부의 해외무역부(Foreign Trade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에 소속된 세관 부서로서(Customs Division)<sup>209)</sup> 지역의 세관을(Customs stations)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sup>210)</sup>
  - 1864년 세관부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세관 세금 징수 부서(Customs Revenue Collection Department)로 명명되었음
  
- 관세청의 기본조직은 1918년 4월에 완성되었음<sup>211)</sup>
  - 관세청 기본조직은 러시아와 외국 간 무역 및 밀수 통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되었음
  
- 1921년 12월 세관부서는 소비에트 해외 무역 연방부(The Soviet Ministry of Foreign Trade)에 소속되어 중앙에서 세관의 통제를 담당했음<sup>212)</sup>
  - 1946년에서 1986년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해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의 통제를 받고 있었음
  
- 2004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이하 관세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sup>213)</sup> 국경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에

209) 2004년까지는 관세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관부서로 명명하였음

210) 러시아 관세청(영문)(History of the Customs Service of Russia),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검색일자: 2018. 1. 10.)

211) 러시아 관세청(영문)(History of the Customs Service of Russia),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검색일자: 2018. 1. 10.)

212) 러시아 관세청(영문)(History of the Customs Service of Russia), [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http://eng.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검색일자: 2018. 1. 10.)

213) 러시아 관세청(영문)(History of the Customs Service of Russia), <http://eng.customs.ru/>

총리실로 이전되어 독립 외청으로 운영하였음<sup>214)</sup>

- 독립 외청으로 운영함에 따라 입안이 가능해졌으며<sup>215)</sup> 상부 조직이 없었음
- 2006년 이후 경제개발 및 무역부<sup>216)</sup>가 담당하였던 관세 정책 및 규정 개발 또한 담당하게 되었음

## 2) 관세청의 조직개편

- 러시아 관세청은 2011년 이후 2012년에 조직을 개편하였으며<sup>217)</sup> 2017년 현재 개편된 조직을 유지하고 있음<sup>218)</sup>
  - 러시아 관세청 각국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규정은 2013년에 개정되어 공표되었음
- 2011년과 마찬가지로 중앙세관 하에 7개 지역 세관이 운영되고 있음
- 2012년에 밀수방지국(General Department of Anti-Smuggling), 부패방지국(Anti-corruption Department), 물품반출 후 세관통제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Control after the Goods Release), 통제·보정국(Control and Revision Department)이 신설됨

---

[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0&Itemid=1835](#)(검색일자: 2018. 1. 10.)

214)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행정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pp. 193~194

215)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러시아 관세청 직제개편), [http://rus-mosco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265&seqno=556502&c=TITLE&t=&pagenum=37&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http://rus-mosco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265&seqno=556502&c=TITLE&t=&pagenum=37&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자: 2018. 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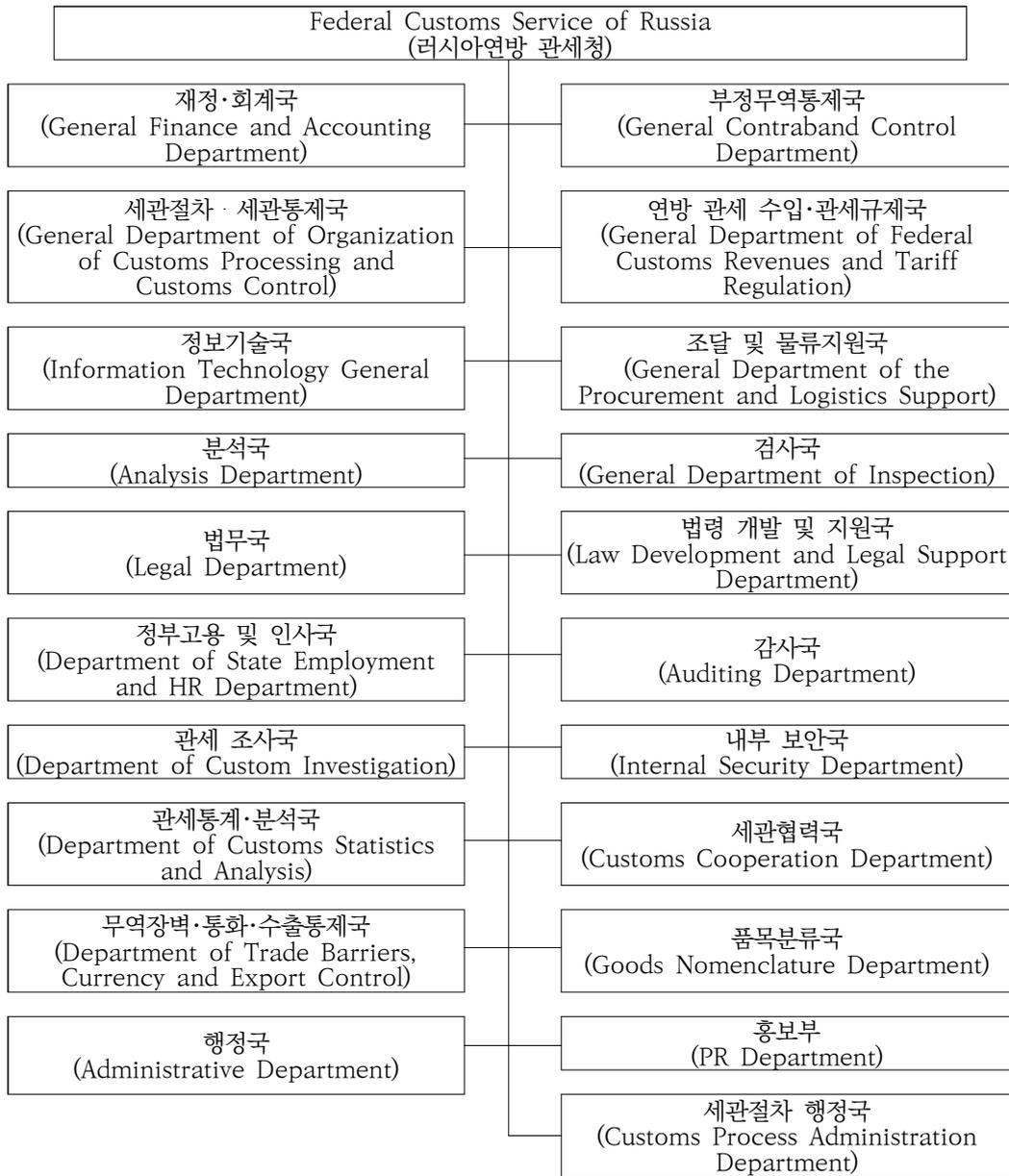
216) 현재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및 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Russian Federation)로 이원화 되어 있음

217)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최신 조직도 등록기준일 2012. 12. 12.

218)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2&Itemid=1822](http://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2&Itemid=1822)(검색일자 2018. 1. 10.)

- 특히 밀수방지국, 부패방지국의 신설은 불법 물품의 유통방지 및 세관 내의 부적절한 청탁 및 밀수 등 불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러시아 관세청의 노력으로 보임
  
- 2011년에 존재하였던 법령개발지원국(Law Development and Legal Support Department), 감사국(Auditing Department), 내부보안국(Internal Security Department)이 폐지되었음
  - 2013년 개정된 각 국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보면 폐지된 부서의 기능이 일부 통합된 것으로 보임
  - 법령개발지원국(Law Development and Legal Support Department)이 폐지되며 현재 법무국에서 법 자문 이외에도 연방법 개정제안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내부 회계감사를 담당하던 감사국(Auditing Department)의 기능은 통제·보정국으로 이관되었음
  - 부패방지국 및 밀수방지국에서 범죄와 관련된 관세청 내부 결탁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내부보안국(Internal Security Department)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부패방지국에서는 내부 부패 근절을 비롯하여 내부 정보보안 확립을 위한 조사 활동 또한 담당하고 있음

[그림 III-7] 러시아 연방 관세청 조직도(2011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러시아』, 2011. 12; 인천공항세관, 「러시아 공항세관 출장 보고서」, 2014. 1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연방 관세청의 주요 특징

- 러시아의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립 외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장 산하의 대변인실 및 국의 역할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감사관, 위험관리 센터 등이 차장 산하에 위치하여 각 국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임
- 우리나라의 대변인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 및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홍보 및 언론 보도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러시아 관세청 홍보국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EAEU의 FTA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은 없음
  - 러시아 관세청 협력국에서 국제 조약 및 국제 협력의 내용을 전담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정보기술국 외에 관세 통계·분석국을 별도로 두어 무역관련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협력국에서 정보의 관리, 개발을 비롯하여 무역 통계 또한 담당하고 있음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징으로 인하여<sup>219)</sup> 관세청에는 별도의 부패 방지국이 조직되어 있으며 특히 관세청 내부의 범죄 및 민간과의 결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 및 가족이 비합법적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음

219) Helping U.S. Companies Export(Russia - 9-Corruption), <https://www.export.gov/article?id=Russia-Corruption>(검색일자: 2018. 1. 24.)

- 러시아는 조직개편 이전에도 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별도의 국이 있었으며 현재에는 밀수방지국을 운영하며 향정신성물질, 독성물질, 가스, 폭발물, 무기, 주요 원자재 등에 대한 밀수를 근절하고자 함
- 밀수방지국은 부정부패방지국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의 밀수 관련 결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위탁 또는 위임한 자의 억류 또한 담당하고 있음

### 3. 독일의 관세행정 조직

#### 가. 일반관세청(Generalzolldirektion)

##### 1) 일반관세청의 기능

- 일반관세청(General Customs Directorate)은 2016년 연방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고등연방조직으로 설립되어 관세행정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함<sup>220)</sup>
- 일반관세청은 독일 내의 국제공급망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체 또는 투자처로서의 독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
  - 관세, 교통세 및 소비세의 효율적인 징수
  - 마약거래, 불법복제, 밀수, 자금세탁 등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대처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
  - 불법고용 및 권력남용 등의 퇴치를 통한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
  - 국경에서의 통제를 통한 멸종위기 종, 환경 및 소비자 보호

220)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SharedDocs/Downloads/DE/Publikation/Broschuere/Die-Zollverwaltung/faltblatt\\_generalzolldirektion.pdf?\\_\\_blob=publicationFile&v=4](http://www.zoll.de/SharedDocs/Downloads/DE/Publikation/Broschuere/Die-Zollverwaltung/faltblatt_generalzolldirektion.pdf?__blob=publicationFile&v=4)(검색일자: 2018. 1. 18.)

- 일반관세청의 주요한 기능은 ① 독일과 EU의 세수확보 ② 경제, 시민 및 환경의 보호 ③ 국제협력 등임<sup>221)</sup>
  - 일반관세청이 징수하는 관세는 EU의 예산에 포함되고, 에너지세, 담뱃세 등의 소비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독일의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sup>222)</sup>
  - 소비세 및 관세의 심사 및 조사, 불법노동·위험물품·불법복제·밀수 및 불법적인 마약·무기·담배 및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멸종위기 종의 보호 등을 통하여 경제, 시민 및 환경을 보호하고 있음<sup>223)</sup>
  -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대응<sup>224)</sup>하고, 세계관세 기구(WCO),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에 참석하여 독일 관세청의 입장을 표명<sup>225)</sup>하는 등 국제협력에 힘쓰고 있음

## 2) 일반관세청의 조직과 역할

- 일반관세청은 2개의 중앙부서와 7개의 전문부서 등 총 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부서에는 관세범죄국과 교육·과학센터가 포함됨<sup>226)</sup>
  - 일반관세청은 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부총령과 9개 부서장이 업무를 보좌함<sup>227)</sup>

221)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aufgab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aufgab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8.)

222) 독일 연방재무부, *The 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2009. 10, p.12

223) 독일 연방재무부(2009), pp. 16~21

224)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International/Zollverbindungsbeamte/zollverbindungsbeamte\\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International/Zollverbindungsbeamte/zollverbindungsbeamte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8.)

225)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International/Gremienarbeit/gremienarbeit\\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International/Gremienarbeit/gremienarbeit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8.)

226)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generalzoll-direktio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generalzoll-direktio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27)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Leitung/leitung\\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Leitung/leit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 데이터보호책임관, 기회균등책임관, 관리팀이 대통령 직속으로 직무수행을 지원하며, 특히 관리팀은 각 부서의 업무관리, 내부감사, 홍보 등을 담당함
- 인사·조직국은 관세행정의 조직과 관련한 기본적인 운영방향 및 관리업무를 담당함<sup>228)</sup>
  - 인사부는 관세행정 인사 관련 최고기관으로서 일반관세청뿐 아니라 지역의 인사 문제까지 관리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정보지식을 감독함
    - 채용방법, 채용절차, 인재개발, 관련 규정 제정 등의 업무뿐 아니라 평등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 문제 등도 담당하고 있음
  - 조직부는 인사관리, 인적자원 계획, 정보 및 지식관리, 조직구조 개발, 조직 조사, 부서배치 등의 직무관리업무를 수행함
- 예산·정보기술국 및 지원센터는 관세행정의 예산과 IT 및 관리 지원을 담당함<sup>229)</sup>
  - 정보기술부의 업무 범위에는 기술지원뿐 아니라 산업안전, 방사선 방호도 포함됨
  - 회계재무 역량센터는 연방의 중앙금고 역할을 수행함
- 전문부서로는 일반세법관리국, 소비세·교통세 및 심사국, 일반관세법국, 물품국경 이동법 및 특별관세법국, 재정관리 및 불법노동국, 관세범죄국, 교육 및 과학센터가 있음<sup>230)</sup>
  - 전문부서의 주된 임무는 지역 수준의 관세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원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개별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감독함

228)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8. 1. 19.)

229)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direktionen/zentral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8. 1. 19.)

230)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8. 1. 19.)

- 또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입안하거나 현재 관례법을 검토하는 전문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연방정부를 지원함
  
- 관세범죄국은 2016년 일반관세청이 설립되면서 관세청의 독립적인 중앙기관이 되었으며, 독일 연방 보안당국의 네트워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sup>231)</sup>
  - 관세범죄국은 독일세관 조사 지원본부로 증범죄 및 조직범죄의 조사 및 기소, 예방을 주요업무로 함
  - 또한 베를린, 드레스덴, 에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하노버,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8개의 세관 조사국을 감독하고 조정함
  - 특히 2017년 6월에는 금융거래 조사를 위한 중앙사무국인 금융정보국이 설립되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 수집 및 분석하고 있음<sup>232)</sup>
  
- 교육 및 과학센터는 연방 재무행정의 중앙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훈련, 과학기술 지원, 마약탐지견 훈련 등의 활동을 함<sup>233)</sup>
  - 교육부는 중등·고등과정으로 구분된 통관서비스에 필요한 이론과 언어 등을 교육하여 세관직원을 양성함
  - 과학기술부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제한 및 금지물품 검사, 관세 및 소비세법과 관련하여 제품의 견본 분석, 전문가 검토서 작성 등을 수행함

231)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32)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stelle-FIU/zentralstelle-fiu\\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Zentralstelle-FIU/zentralstelle-fiu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33)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 나. 일반관세청의 변천

### 1) 일반관세청의 설립과 역사

- 69년과 96년 사이 로마제국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된 것이 현재의 독일 영토 내에서 최초의 관세임<sup>234)</sup>
  - 정복된 영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제국은 국경보안을 강화하였고, 중요한 통행로, 교차로, 항구 등에 관세청을 설치하였음
    - 관세청은 수출입업무 외에도 시장감독, 대중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운송수단, 여행객의 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었음
  
- 1815년 비엔나총회에서 34개의 주가 통합되어 독일연방이 탄생하자 각 주 정부에서의 관세가 무역장벽, 가격인상, 밀수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834년 관세동맹이 체결됨<sup>235)</sup>
  - 관세동맹의 체결로 각 주 간의 면세무역, 공동 밀수 대처, 동일한 관세법 적용, 통화, 증량 및 용적 제도의 통일 등을 시행하였음
  
- 1871년 독일제국은 통일된 관세영역을 확립하고, 식민지 정책에 기반한 관세행정 체제를 유지하였음<sup>236)</sup>
  - 독일의 식민지는 카메룬, 토고 및 마샬군도뿐 아니라 현재 나미비아, 탄자니아, 부룬디, 미크로네시아 및 서사모아, 중국 및 파푸아뉴기니 일부가 포함되었음

234)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Roemische-Provinzen/roemische-provinz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Roemische-Provinzen/roemische-provinz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35)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Deutscher-Zollverein/deutscher-zollverei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Deutscher-Zollverein/deutscher-zollverei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36)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Deutsches-Kaiserreich/deutsches-kaiserreich\\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Deutsches-Kaiserreich/deutsches-kaiserreich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 독일제국은 철도 장비, 기계류, 시멘트 및 맥주를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량 및 향신료와 같은 많은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면 또는 고무 제품은 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였음
  - 지방 세관원은 제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수입과 수출을 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에도 개입할 것을 지시받았음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통일된 재무행정부(재무부)가 설립되면서 모든 과세대상(과세)에 따른 관세율이 포함되어 있는 관세율표가 시행되었음<sup>237)</sup>
- 이 당시의 품목번호는 총 946개였으며,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부과를 위하여 물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1922년 상품의 분석을 위한 실험실과 세관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주립학교가 설립됨
- 1930년대의 독재정권하에서 관세행정은 국경감시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반대세력 또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수단이 되었음<sup>238)</sup>
- 엄격한 국경감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서류가 없는 자의 출국과 불법적인 해외 외화반출을 감시하였으며, 특히 유대인에 대한 체포 및 조사가 빈번하였음
- 1949년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창립되면서 관세는 밀수와 투기를 방지하고, 적대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독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sup>239)</sup>
- 1962년 동독의 영토를 국가의 관세영역으로 선포하고, 1939년의 관세법 및 제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공포하였음

237)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Weimarer-Republik/weimarer-republik\\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Weimarer-Republik/weimarer-republik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38)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Nationalsozialismus/nationalsozialismus\\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Nationalsozialismus/nationalsozialismus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39)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Zollverwaltung-DDR/zollverwaltung-ddr\\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Zollverwaltung-DDR/zollverwaltung-ddr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모든 대외무역이 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지시됨에 따라 재정수단으로서의 관세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1951년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었고, 원조물품에 대한 수출은 금지되었음
  - 또한 동독 국민의 출국은 불법으로 간주되었고, 관세청은 국민의 불법출국을 막기 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세관 공무원이 차량을 검사하기도 함
- 1950년 독일연방공화국의 창립 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관세행정의 주요 임무는 수입 및 수출통관으로 변경됨<sup>240)</sup>
- 독일의 경제성장은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반하였으므로, 관세청은 지속적인 관세의 경감 및 면제를 통하여 이를 지원함
  - 증가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통일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독일은 1952년 브뤼셀 관세율표를 도입하였으며, 1988년에는 HS협약을 발효하였음

## 2) 일반관세청의 조직개편

- 1993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하면서 공동시장이 도입되고, 2004년과 2007년 EU 가입국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관세행정은 나날이 복잡해졌고, 이는 관세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의미했음<sup>241)</sup>
- 이에 따라 독일은 2007년 12월 관세 및 소비세를 취급하는 지역 금융사무소와 불법노동을 감시하는 지역 재무부의 관세 및 소비세 부문을 해체하고, 2008년 1월 5개의 연방 재무국을 신설함
- 2008년 개편으로 관세행정 조직의 구조는 연방재무부-연방재무국 및 관세범죄국-본부세관 및 세관의 3단계 체제가 되었음<sup>242)</sup>

240)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Zollverwaltung/zollverwaltung\\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Zollmuseum/Ausstellung/Historische-Abteilung/Zollverwaltung/zollverwalt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1. 19.)

241) 독일 연방재무부(2009), p. 23

- 연방재무국은 연방재무부가 정한 전략적 지침을 이행하고, 본부세관이 업무를 위임받도록 지원함
  - 관세범죄국은 중범죄 및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예방활동을 함<sup>243)</sup>
  - 본부세관 및 세관은 지역 수준에서 운영되면서 기업 및 시민에게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함<sup>244)</sup>
  - 또한 세관 실험실과 대학,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기존의 교육 및 훈련 시설을 통합한 교육 및 과학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방 세무행정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sup>245)</sup>
- 2016년 1월 기업 및 시민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방재무국은 해체되고 고등연방당국으로서 일반관세청이 설립됨<sup>246)</sup>
- 일반관세청은 연방재무부의 관세 및 소비세 관련 부서가 통합되어 중앙 관세행정 조직으로서 기존의 세관범죄국과 교육 및 과학센터도 일반관세청으로 흡수됨

---

242) 독일 연방재무부(2009), p. 23

243) 독일 연방재무부(2009), p. 27

244) 독일 연방재무부(2009), p. 29

245) 독일 연방재무부(2009), p. 31

246) 독일 연방재무부, "Neuorganisation der Zollverwaltung erfolgreich abgeschlossen", 2016. 3. pp. 1~2



## 다. 일반관세청의 주요 특징

### 1) 소비세의 부과징수

- 수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방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소비세는 일반관세청에 의하여 관리됨<sup>247)</sup>
  - 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에 부과되는 국세로서 일반관세청은 소비세 대상 품목의 국경을 넘은 이동 외에도 독일 내에서의 제조, 보관 및 사용에 대하여 감독함<sup>248)</sup>
  - 독일에서 부과되는 소비세에는 에너지세, 담뱃세, 전기세, 주정세, 핵연료세, 알코올세, 커피세, 맥주세, 발포성포도주 및 혼성주류세가 있음
  
- 1993년 EU의 출범으로 유럽의 내수시장이 형성되자 소비세에 대한 세관당국의 활동은 국경에서 기업으로 옮겨 갔음<sup>249)</sup>
  - 소비세는 과세대상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되어야 하는데, EU 국가 간의 소비세 규정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므로 물품의 EU 간 이동에 대하여도 세관당국의 개입이 필요함
    - 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은 조세창고(Steuerlagern; Tax Warehouse) 간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함
    - 조세창고를 운영할 정도의 물량을 취급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은 일반관세청에 등록을 하고 과세유보 상태로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음

247)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Rechtsgrundlagen/rechtsgrundlagen\\_node.html](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Rechtsgrundlagen/rechtsgrundlag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24.)

248)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Einnahmen-fuer-Deutschland-und-Europa/Verbrauchsteuererhebung/verbrauchsteuererhebung\\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Aufgaben/Einnahmen-fuer-Deutschland-und-Europa/Verbrauchsteuererhebung/verbrauchsteuererheb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1. 24.)

249)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Allgemeine-Einfuehrung/allgemeine-einfuehrung\\_node.html](http://www.zoll.de/DE/Fachthemen/Steuern/Verbrauchsteuern/Grundsatzliche-Regelungen/Allgemeine-Einfuehrung/allgemeine-einfuehrung_node.html)(검색일자: 2018. 1. 24.)

- 과세가 유보된 물품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이미 과세된 경우, 소비세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국에서 환급됨
- 이에 따라 일반관세청은 기존의 국경에서의 소비세 관련 활동뿐 아니라 서류 및 재고에 기초한 실제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며, 소비세의 심사에 중점을 두어 감시하고 있음
- 비EU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소비세 세무절차는 관세 규정을 적용 받음

## 2) 금융정보의 조사·분석

- 2017년 6월 불법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조사기관이 일반관세청 산하의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으로 통합됨<sup>250)</sup>
  - 의심스러운 자금 활동에 대한 보고가 2016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등 금융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였고, 금융정보국과 법 집행당국이라는 이중보고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통합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금융정보국이 중앙정보기관으로 설립되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단독보고채널이 되었고, 금융정보국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검찰이나 경찰 같은 법 집행 당국의 부담이 완화됨
- 금융정보국의 핵심 업무는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금융정보국은 법 집행당국, 재정 및 행정당국의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금융정보국이 조사·분석한 후 평가한 의심스러운 거래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 집행당국, 재정 및 행정당국에 전달됨
    -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같은 법 집행당국에서 범죄수사가 이루어짐

250)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FIU/Ueber-die-FIU/ueber-die-fiu\\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FIU/Ueber-die-FIU/ueber-die-fiu_node.html)(검색일자: 2018. 1. 24.)

- 금융정보국은 일반관세청의 관세범죄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두 개의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sup>251)</sup>
  - 첫 번째 부서는 명문화 작업, 다른 분야와 교류가 필요한 업무, 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함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사례의 추세나 유형을 기록·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전달함
  - 두 번째 부서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며, 분석의 중앙 집중화가 금융정보국의 설립 목적 및 과제이므로 금융정보국의 거의 모든 인력이 해당 부서에 배치되어 있음

#### 4. 프랑스의 관세행정 조직

##### 가. 관세 및 간접세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 1)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조직 개관

-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은 프랑스 공공활동 및 회계부(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이하 공공활동 및 회계부)의 국(Department)으로 정식 명칭은 관세 및 간접세국(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이하 관세 및 간접세국)임
- 관세 및 간접세국은 2011년, 경제산업부(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예산 회계 통제국(Service du Contrôle budgétaire et comptable ministeriel) 내 법규 집행 부서였음<sup>252)</sup>

251)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FIU/Fragen-Antworten/fragen-antwort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FIU/Fragen-Antworten/fragen-antwort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24.)

252)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2), p. 207

- 2017년에 재정 경제부(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 아래 국으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 현재 공공활동 및 회계부 아래 국으로 운영되고 있음<sup>253)</sup>
- 공공활동 및 회계부는 공공활동, 시민 서비스 및 회계와 관련 국가정책 및 공공 재정 전략의 이행 및 정책 입안을 담당하고 있음
  
- 관세 및 간접세국은 수출입 관련규제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무역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국내 보안 및 유럽 차원의 국가 간 보안을 유지할 책임을 가짐
- 또한 공공안전 및 자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간접세 및 관세 징수, 국경 통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은 2018년 현재 관세 및 간접세국장 산하에 12개 지역 본부를 두고 있음
- 또한 지역본부 산하에 42개 지역세관과 하위 180개 지역 사무소, 9개의 국가 관할 부서, 4개의 해안 경비세관을 두고 있음
- 2011년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소개서의 조직도<sup>254)</sup>와 비교해 보았을 시 지역 본부세관 및 지역세관의 수는 변화가 없었음
-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은 지역본부세관, 지역세관, 지역사무소의 계층적 구조를 가짐
  
-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은 관세 및 간접세국장 및 부국장 산하 총 6개의 부(Sub-direction)와 통계 및 경영연구부서(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Sub-direction) 산하에 3~4개의 하위 부서를 두고 있음

253) 프랑스 재정경제부(Organigramme du ministère), <https://www.economie.gouv.fr/qui-fait-quoi-au-ministere>(검색일자: 2018.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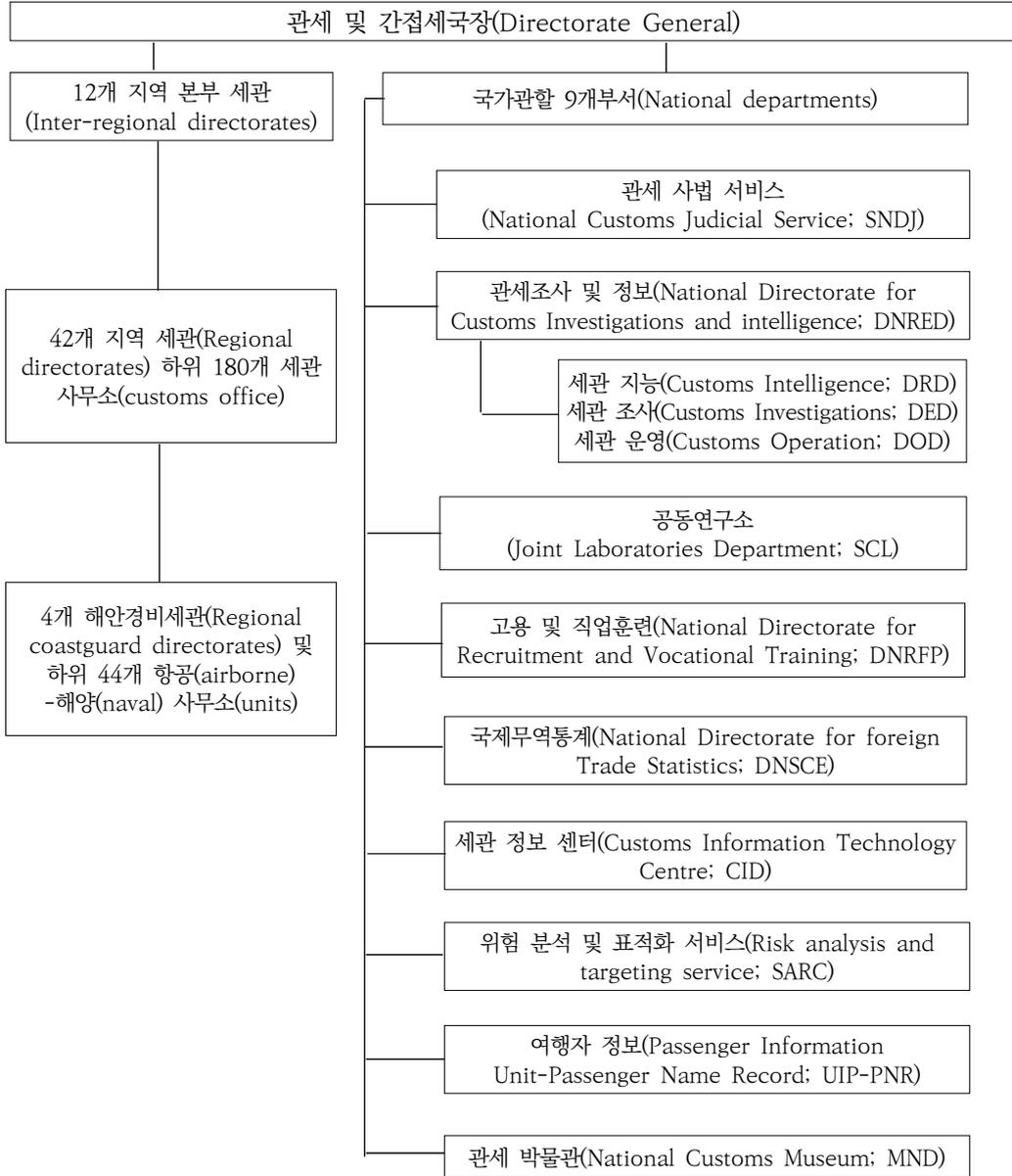
254)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A brief Introduction to french customs), [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information/publication-douane/langues-etrangeres/french-customs-\(en\).pdf](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information/publication-douane/langues-etrangeres/french-customs-(en).pdf)(검색일자: 2018. 1. 12.)

[그림 Ⅲ-10] 프랑스 공공활동 및 회계부 조직도(2018년)

공공활동 및 회계부 장관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공공활동 및 회계부 차관 secrétaire d'État auprès du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재정경제부 차관 (공공활동 및 회계부 차관 겸직) (Secrétariat général des ministères économiques et financiers)		
법무국 (Direction des affaires juridiques)	공공재정국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예산국 (Direction du budget)
감사국 (L'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관세 및 간접세국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공공행정 서비스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d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재정 경제 통제서비스국 (Le service du contrôle général économique et financier)	사기 방지국 (Délégation nationale à la lutte contre la fraude)	부(Ministry)간 공공 전환국 (Direction interministérielle de la transformation publique)
재정 경제 조정국 (Le médiateur des ministères économiques et financiers)	부동산국 (Direction de l'Immobilier de l'État)	국가 구매국 (Direction des achats de l'Etat)
예산 회계 통제 서비스국 (Services du contrôle budgétaire et comptable ministériel)	금융정보분석원 (TRACFIN)	프랑스 반부패 에이전시 (L'Agence française anticorruption)
무형유산에이전시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부(Ministry)간 인적자원 서비스센터 (Centre interministériel de services informatiques relatifs aux ressources humaines)	재정정보 에이전시 (Agence pour l'informatique financière de l'Etat)
	사회 안전 담당국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연구, 검토, 통계국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자료: 프랑스 재정경제부(Organigramme du ministère), <https://www.economie.gouv.fr/qui-fait-quoi-au-ministere>(검색일자: 2018. 1 . 17.)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I-11]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조직도(2016년)



자료: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DOUANE 2016 Results), <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information/publication-douane/langues-etrangeres/french-customs-2016-results-en.pdf>(검색일자: 2018. 1. 9.)

- A부는 인사, 노사관계 및 조직관련 정책, 경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 또한 관할하고 있음
  - B부는 일반 인사정책, 경영, 구매, 서비스 관련 정책, 회계 네트워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사회주택관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C부는 정보, 전자통신 시스템 경영, 시스템 안전구조, 전자통신 사용자 지원 및 사용자의 만족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에 세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C부는 통계 및 경영연구부와 함께 업무를 공유하며 운영하고 있음
  - 통계 및 경영연구부서는 국제무역통계를 담당하고 있음
  - D부는 법률문제, 소송, 조사, 사기사건 등을 다루고 법의 집행 및 통제를 담당하며 위험 분석 및 표적화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E부는 국제무역관련 관세 및 상업정책, 금지물품, 농업 및 소비자 보호, 통관관련 정책 등을 다루며 중소기업부를 운영하고 있음
  - F부는 EU세금정책, 교통세, 담뱃세, 주류세, 에너지 및 환경세 등을 담당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총 9개의 국가 관할 부서(National department)가 관세 및 간접세 국 하위에 있음
- 국가가 관할하는 7개의 부서가 있었으며 최근 2개의 부서가 추가로 설립되었음
  - 여행자 정보부서(Passenger Information Unit-Passenger Name Record; UIP-PNR)<sup>255</sup>)는 테러와 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승객의 명단을 수집하고, 승객의 여정, 수화물 정보 등을 취합하여 검사하거나 추적함
  - 고용 및 직업훈련부서(National Directorate for Recruitment and Vocational Training; DNRFP)<sup>256</sup>)는 인사 관련된 정책 및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 및 간접세국 사내 훈련 및 국경 세관 근무자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음
  - 관세조사 및 정보부서(National Directorate for Customs Investigations and intelligence; 이하 DNRED)<sup>257</sup>)는 주요 사기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통관

255) 프랑스어 원문 l'Unité d'Information Passagers

256) 프랑스어 원문 la direction nationale du recrutement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및 세금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지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음

- DNRED는 정보, 조사, 실행의 세 가지 하위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 세관 정보(Customs Intelligence; DRD)<sup>258</sup>: ① 세관 정보 관리, 국가 정보 계획 개발, 범죄에 대한 정보 중앙화, 세관 서비스 및 전문성, 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수행 ② 중요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연구 ③ 전략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의 세 가지 하위 부(division)로 구성되어 있음
  - 세관 조사(Customs Investigations; DED)<sup>259</sup>: 거대한 범죄에 특성화된 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① 국내 범죄 ② 테러행위 ③ 불법거래, 금융사기 ④ 범죄 네트워크 해체 등 네 가지 하위 부(division)로 구성되어 있음
  - 세관 운영(Customs Operation; DOD)<sup>260</sup>: 내부 및 방어국(Ministries of the interior and defence)과 함께 조사 작업을 수행하며 작전정보 수합, 조사, 인적자원정보 포함(탐승자 명단 등) 특성화된 기술지원, 보안방어벽, 정보 전달 통제, 중대한 작전 관련 직원 이동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무역통계(National Directorate for foreign Trade Statistics; DNSCE)<sup>261</sup> 부서는 해외 무역관련 통계, 무역수지 결과 등을 취합 및 전파하고 있으며 기업의 요청에 따라 통계조사 또한 수행하고 있음
- 관세 사법 서비스(National Customs Judicial Service; SNDJ)<sup>262</sup>부서는 관세 법령 담당관(judicial customs officers)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관들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경찰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조사하고 통상적인 세관 관련 범죄, 정부 예산, 민간 서비스 관련 범죄 등을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밀수, VAT위반, 위조, 자금세탁 등)

257) 프랑스어 원문 la direction nationale du renseignement et des enquêtes douanières

258) 프랑스어 원문 La direction du renseignement douanier

259) 프랑스어 원문 La direction des enquêtes douanières

260) 프랑스어 원문 La direction des opérations douanières

261) 프랑스어 원문 la direction nationale des statistiques et du commerce extérieur

262) 프랑스어 원문 le service national de douane judiciaire

- 위험 분석 및 표적화 서비스(Risk analysis and targeting service; 이하 SAR C)<sup>263</sup>부서는 의심이 되는 상당한 양의 거래를 표적화하여 통관과 세금징수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등을 통해 사기 계획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함<sup>264</sup>
- 공동연구소(Joint Laboratories Department; SCL)<sup>265</sup>: 경쟁·소비자·사기범죄 통제청(General Directorate for Competition, Consumption and Fraud Control; DGCCRF)과 함께 상품 분석, 과학 및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sup>266</sup>
- 관세 박물관(National Customs Museum; MND)<sup>267</sup>: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의 역사 및 정보제공, 관련 물품 전시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세관 정보 센터(Customs Information Technology Centre; CID)<sup>268</sup>: 소비세 거래, 통관관련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운영을 비롯하여, 관세 및 간접세국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장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263) 프랑스어 원문 service d'analyse de risque er de ciblage

264) 프랑스 예산이사회(Le programme « Facilitation et sécurisation des échanges » regroupe l'ensemble des activités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DGDDI)),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arandole/ressources/2016/pap/html/DBGPGMPRESSTRATPGM302.htm](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arandole/ressources/2016/pap/html/DBGPGMPRESSTRATPGM302.htm)(검색일자: 2018.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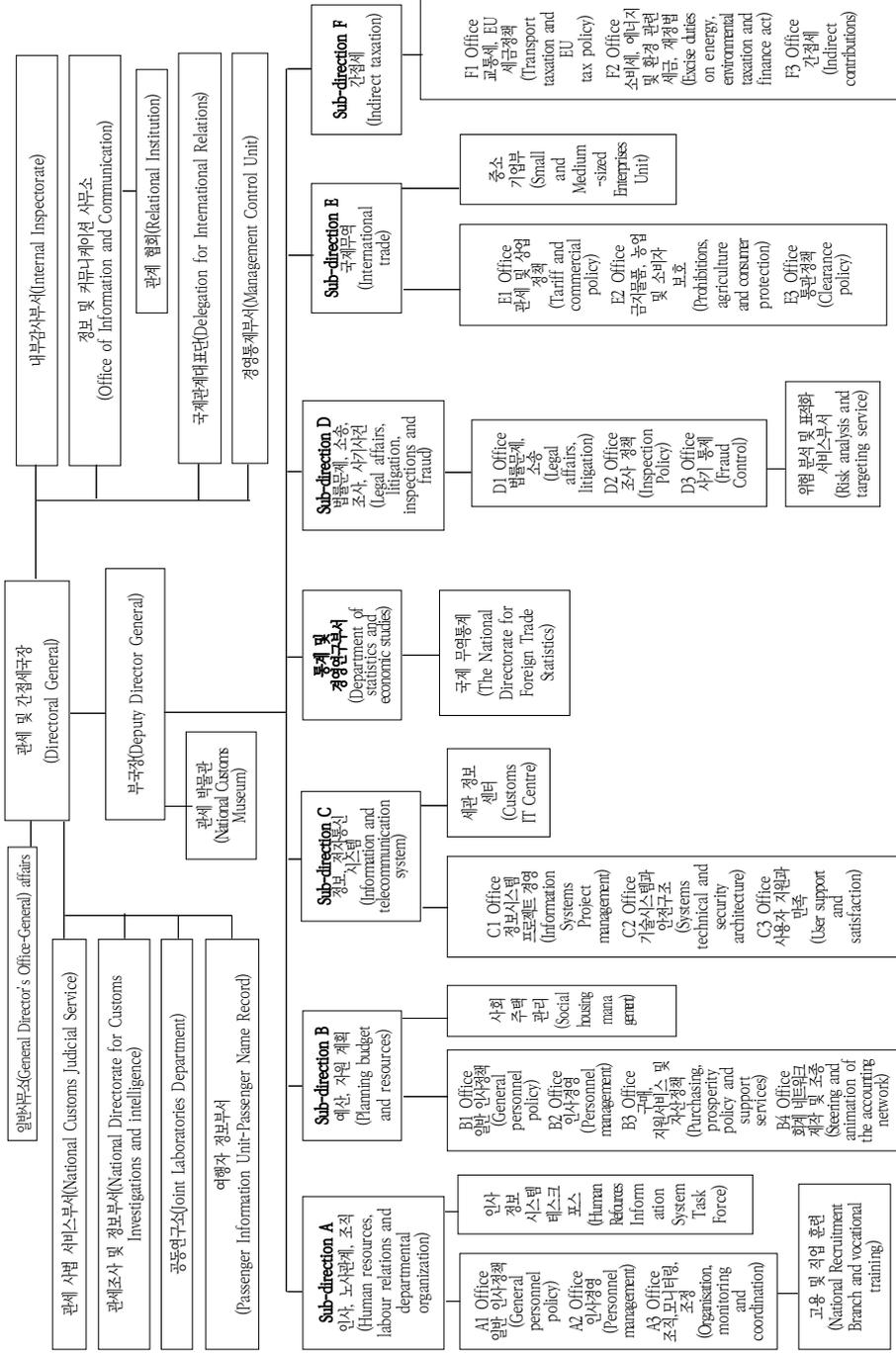
265) 프랑스어 원문 le service commun des laboratoires DGDDI/DGCCRF

266)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Joint service of the DGDDI and DGCCRF laboratories),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78-service-commun-des-laboratoires-dgddi-et-dgccrf>(검색일자: 2018. 1. 9.)

267) 프랑스어 원문 le musée national des douanes à Bordeaux

268) 프랑스어 원문 le centre informatique douanier

[그림 III-12]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중앙행정 조직도(2017년)



자료: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information/publication-douane/commaire-douane/organigramme-services-centraux-direction-generale-des-douanes-et-droits-indirects.pdf>(검색일자: 2018. 1. 20)

## 2)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의 미션

- 2011년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의 주요 미션은 3가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경보호와 사기 근절, 세금 징수였음<sup>269)</sup>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및 간접세국의 목표는 무역촉진과 프랑스 국경 및 유럽 영역 내의 무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 간소화된 절차 및 기업들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함
    - 지원 기업(예: 물류업체)의 적절한 배치 및 재배치로 경제성장 및 고용 증진
    - 국제무역 통계 취합으로 정부 및 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 WTO 체제에서 유럽연합의 무역 및 농업관련 정책을 이행
    - 덤핑물품, 위조 물품 판매와 같은 불공정한 경제 활동 방지
  - 국경보호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세관이 주요 사기 범죄 근절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조직화된 범죄로 이루어지는 마약 밀매<sup>270)</sup>, 위조품, 담배, 무기, 폭발물, 멸종 위기 동·식물의 밀매 근절
    - 유럽연합 내 위험물질과 독성폐기물의 이동 모니터링
    - 자금세탁 및 불법적 자금의 이동 방지
    - 문화상품, 방산제품, 군사물품 및 위험물질 중 유럽연합의 기술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물품 등에 대한 감독
    -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위반 조사
  - 통상적인 세금 징수뿐 아니라 와인과 같은 특산품의 세금 징수 절차를 간소화·전자화(자동화)하도록 함
    - 담배, 알코올 그리고 석유 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함
    -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VAT를 징수함

269)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A brief Introduction to french customs), [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information/publication-douane/langues-etrangeres/french-customs-\(en\).pdf](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information/publication-douane/langues-etrangeres/french-customs-(en).pdf)(검색일자: 2018. 1. 12.)

270) 거래가 금지된 물건을 몰래 파는 행위

- 2017년 현재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의 행정적 주요 미션 세 가지는 사기와 국제적 사기 근절, 국가 기업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으로 2011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테러 위험 근절, 해양에 대한 세관의 보고 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sup>271)</sup>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의 안전 규정 및 품질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배, 무기, 문화상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보호함
  - 해양 오염 방지, 유독성의 폐기물의 이동 방지, 방사능 및 위험물질의 이동방지 등
  - 개별적 조언 및 간소화된 절차 제공으로 기업 지원 및 포도재배, 교통, 에너지 등에 대한 경제지원
  - 관세 및 간접세국은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VAT, 소비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함
  - 환경세(taxe générale sur les activités polluantes; TGAP) 및 전기소비세(Taxe intérieure sur la consommation finale d'électricité; TICFE), 교통세(vehicle tax) 등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함
  - 해양경비, 어업통제, 해양구조, 해양 오염근절 등
  - 국제 상호 행정 지원 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협력 조사팀 결성 등 국제협력

## 나. 관세 및 간접세국의 변천

### 1) 관세 및 간접세국의 설립과 역사

- 1791년 국가 세관위원회(National customs board)가 발족하였으며 무역관련 정책의 집행 및 프랑스 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담당하게 되었음<sup>272)</sup>

271)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Les multiples missions de la douane française),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602-les-multiples-missions-de-la-douane-francaise>(검색일자: 2018. 1. 8.)

- 1860~1870년대에 나폴레옹 3세에 의한 경제재건 노력에 따른 경제정책(Economic Doctrine) 변화로 관세 정책도 변화하게 되었음<sup>273)</sup>
  - 관세정책은 수입관세의 완화(moderate import tariff), 세관의 경제 레짐(regime) 개발(환적, 보세창고, 일시수입 등), 세관 통제 완화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 194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경제 및 국민 안전 확보는 세관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한 미션임<sup>274)</sup>
  
- 해외무역 증가와 1993년 EU 발족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프랑스 세관은 그 역할을 확대하였음<sup>275)</sup>
  - 특히 새로운 형식의 무역(e-commerce) 등장 및 범죄, 테러, 인신매매 등의 국제적인 범죄의 증가로 국가의 영역 보호(범죄, 납치, 테러기관으로부터 보호 및 소비자 및 환경 보호)가 세관의 주요한 역할이 되었음
  - 또한 프랑스 자국기업의 국제적인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음

## 2) 관세 및 간접세국 '전략적 계획 2018'에 따른 조직개편

### 가) 관세 및 간접세국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2018'

-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은 2014년 1월, 행정 개선을 초점으로 한 '전략적 계획 2018'을 발표하였음<sup>276)</sup>

272)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History of French Customs),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85-histoire-de-la-douane-francaise>(검색일자: 2018. 1. 31.)

273)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History of French Customs),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85-histoire-de-la-douane-francaise>(검색일자: 2018. 1. 31.)

274)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History of French Customs),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85-histoire-de-la-douane-francaise>(검색일자: 2018. 1. 31.)

275)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History of French Customs),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85-histoire-de-la-douane-francaise>(검색일자: 2018. 1. 31.)

- 2018년을 목표로 한 5년의 개발계획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 밀수방지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 개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 조세 현대화(modernization), 조직 개편, 세관직원 중심의 전략적 계획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세금 징수의 현대화와 간소화를 추진함
    - 또한 도로교통 감시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작전지역센터(operational land centres)를 설립하도록 계획함
    - 인자자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인력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전략적 계획 2018’은 프랑스 정부의 현대화 정책에 발맞추어 개발 및 발표되었음
- 관세 및 간접세국의 ‘전략적 계획 2018’에 따른 주요 조직개편 내용은 위험분석 및 표적화팀(Risk Analysis and Targeting Department; 이하 SARC)<sup>277)</sup> 및 S CG(Large Accounts Department)의 신설임
- SARC<sup>278)</sup>는 관세사법 서비스국(National Customs Judicial Service)<sup>279)</sup>과 함께 무기, 위험물, 마약, 담배 등의 밀수를 방지하고자 함
  - 경제적 활동의 지원을 위해 대형 거래부(Large Accounts Department; 이하 SCG)<sup>280)</sup>를 신설하여 수출입을 담당하는 프랑스 국내 업체들의 특수한 상황을 관리하고자 함
  - 지역 간 조정 프로그래밍국(Interregional Control Programming Unit, CIPC)을 설립하여 지식통제국(Intelligence and Control Steering Unit, CROC)을

276)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Customs 2018 French Customs Strategic Plan), <http://www.douane.gouv.fr/Portals/0/fichiers/datadouane/publication-douane/bilans-resultats/douane-2018-resume.pdf>(검색일자: 2017. 12. 19.)

277) 프랑스어 원문 Service national d'Analyse de Risque et de Ciblage

278) 프랑스어 원문 Service national d'Analyse de Risque et de Ciblage

279) 프랑스어 원문 Service National de Douane Judiciaire

280) 프랑스어 원문 Service Grands Comptes

대체하도록 하며 자문·전문직 유동성·직업국(Consultancy, Professional Mobility and Careers Unit)을 신설하고자 함

나) 관세 및 간접세국 내 UIP-PNR 및 SARC 신설

- 2014년 12월 25일,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에서는 여행자 정보(Passenger Information Unit-Passenger Name Record; 이하 UIP-PNR) 부서를 신설하였음<sup>281)</sup>
  - 환경 및 지속적 개발, 에너지부 장관(La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경제 산업부 장관(le ministre des finances et des comptes publics), 국방부장관(le ministre de la défense), 내무부 장관 및 교통부 수석비서(le ministre de l'intérieur et le secrétaire d'Etat chargé des transports), 해양수산부 장관이 UIP-PNR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짐
  - 여행자 및 승무원의 모든 여행관련 기록을 추적하고 관리함
- SARC는 테러 및 불법물품의 밀수 근절을 목적으로<sup>282)</sup> 2016년 2월 29일 신설되었으며 설립 승인과 운영은 경제산업부 장관이 담당하였음
- SARC는 관세 및 간접세국의 간접세, 통관, 사전 통관의 3가지에 대한 위험분석을 담당하고 있음<sup>283)</sup>

281) 프랑스 법률정보(Decree No. 2014-1566 of 22 December 2014 establishing a service with national competence called "Passenger Information Unit"(UIP)),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9953824&categorieLien=id> (검색일자: 2018. 1. 10.)

282)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La douane française contribue activement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2882-la-lutte-contre-le-terrorisme> (검색일자: 2018. 1. 10.)

283) 프랑스 법률정보(Order of 29 February 2016 establishing a service with national competence called "risk analysis and targeting servic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164892&categorieLien=id>, (검색일자:

- 국가에서 표적화한 영역에 대해 IT도구를 활용하여 활동을 통제하고 위험을 분석함
  - 3가지 분야(간접세, 통관, 사전통관)의 위험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DNRED와 함께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함<sup>284)</sup>
  - 부패, 사기와 관련된 세관의 데이터를 평가함
- 가장 최적화된 세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품의 이동 통제를 위한 분석 또한 실시함

다) 주요 세관에 Large Accounts Department 설립<sup>285)</sup>

- 대형 거래부(Large Accounts Department; 이하 SGC<sup>286)</sup>)<sup>287)</sup>는 프랑스의 수출입 기업들의 특별한 요구를 관리하기 하고 동종적인 특성에 따른 통관 업무의 빠른 처리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4일 지역세관에 설립되었음<sup>288)</sup>
- SCG는 기업들에 다음의 내용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음
  - 기업 협의회로서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소화된 세관 절차를 제공하고 관련 전략을 개발함
  - 모든 수출입 승인 및 통관과 관련된 세관절차 관리, 모니터링을 담당함

---

2018. 1. 10.)

284) 프랑스 의회(2017 Budget Bill: Public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 Unallocated Credits), <http://www.senat.fr/rap/l16-140-316/l16-140-3163.html>(검색일자: 2018. 1. 10.)

285) 프랑스 법률정보(Order of 4 March 2016 establishing the Large Accounts Department), <https://www.legifrance.gouv.fr/eli/arrete/2016/3/4/FCPD1604329A/jo/texte>(검색일자: 2018. 1. 10.)

286) 프랑스어 원문 Service Grands Comptes

287)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Le Service Grands Comptes),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2910-le-service-grands-comptes>(검색일자: 2018. 2. 1.)

288) 프랑스 법률정보(Order of 4 March 2016 establishing the Large Accounts Department), <https://www.legifrance.gouv.fr/eli/arrete/2016/3/4/FCPD1604329A/jo/texte>(검색일자: 2018. 1. 10.)

- 기업들의 수출입 신고와 물품 통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업들의 단일화된 연락처(single contact point)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SCG는 지역의 주요 세관 4곳에 위치해 있음<sup>289)</sup>
  - 방위 산업 및 항공 산업 관련은 Toulouse Blagnac에 위치해 있음
  - 자동차 및 산업 교통수단 관련은 Rouen에 위치해 있음
  - 전기, 에너지, 화학, 의학 물품 관련은 Isle d'Abeau에 위치해 있음
  - 산업, 사치품, 농업비즈니스 물품 관련은 Nantes Atlantique에 위치해 있음

### 3) 2008~2015년 기타 조직개편 내용

- DNRED 하에 2008년 9월 Dragon force라는 과업집단을 조직하여<sup>290)</sup> 프랑스 및 타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밀수하는 범죄조직 해체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또한 전통적인 관세범죄(가격조작, 종류조작, 수량조작 또는 금지물품)와 VAT 회피범죄 근절에 노력하였음
  - DNRED 하위 부서 중 특히 DOD와 함께 협업하였음
- 2011년 DNRED하에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사이버 관세국(cyber douane)을 설립하였음<sup>291)</sup>
  - 사이버 관세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마약, 무기, 예술작품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 검사 강화, 불법 거래 네트워크 파괴, 합법적인 규정의 적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89)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Large Accounts Department(SGC)),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3015-large-accounts-department-sgc>(검색일자: 2018. 1. 8.)

290)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La Task Force Dragon(TFD) lutte contre des réseaux internationaux dont le but unique est de livrer frauduleusement des marchandises en éludant le paiement de la TVA),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2279-la-task-force-dragon-de-la-douane>(검색일자: 2018. 1. 10.)

291) 프랑스 재정경제부(CYBERDOUANE), <https://www.economie.gouv.fr/files/cyberdouane.pdf> (검색일자: 2018. 1. 10.)

## 다. 관세 및 간접세국의 주요 특징

### 1) 관세 및 간접세국 조직의 특징

- 독립 외청 형태인 우리나라 관세청과 달리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은 공공활동 및 회계부의 부서로서 상위 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상위 기관인 공공활동 및 회계부가 정책 입안을 담당하고 관세 및 간접세국은 법안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와 관련하여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의 부국장 산하에 하위 F부(Sub-direction F)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EU의 세금 정책 또한 하위 F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EU 관련 세금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과 같은 FTA 협정을 관리하는 별도부서는 조직도상 없는 것으로 보임

### 2) 위험관리 조직

- UIP-PNR은 관광객이 많은 프랑스의 국가적 특성<sup>292)</sup>을 반영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의 정보를 별도로 추적·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 UIP-PNR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정보뿐 아니라 항공사 승무원의 여행 정보 및 예약, 환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본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테러와 심각한 범죄(Serious crime), 조직화된 범죄(organized crime), 프랑스 자국민의 기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반 등을 방지하고자 함<sup>293)</sup>

292) 2016년 기준 관광객 순위 1위국, 세계관광기구(UNWTO Tourism Highlights), <https://www.e-unwto.org/doi/pdf/10.18111/9789284419029>(검색일자: 2018. 1. 29.)

- SARC는 고위험 물품 및 사람을 선별하는 우리나라의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관세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물품의 밀수 근절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면 SARC의 경우 통관뿐 아니라 간접세에 대한 위험 분석 또한 주 업무에 포함 되어 있음

### 3) 기업 지원 조직

- 프랑스의 관세 및 간접세국에서는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3종류의 구조를 조직하고 있음<sup>294)</sup>
  - ①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② 지역적인 수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 ③ 대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 구조로 분류하였음
    -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을 위한 지원: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Business Advisory Unit(이하 CCE)<sup>295)</sup>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적인 레벨: CCE는 각 지역 세관의 Economic Action Poles(EAPs)<sup>296)</sup> 내의 조직으로 기업들과 세관의 인터뷰를 조정하고 무료로 세관의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해당 무역기업에 적합한 세관절차 정보를 제공함
    - 대기업 지원 레벨: SGC는 대기업의 무역량과 무역 전략에 따라 세관의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교통수단, 화학, 에너지, 전기, 의학, 등에 특정 산업군(群)을 다루는 대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및 자문, 세관절차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음<sup>297)</sup>

293) 프랑스 UIP-PNR(Presentation of the Passenger Information Unit), <https://pnr.gouv.fr/Presentation-UIP/Presentation-de-l-Unite-Information-Passagers>(검색일자: 2018. 1. 10.)

294) EUROPAGES(Douane entreprises: qui contacter en France?), <http://corporate.europages.fr/actualites/douane-entreprises-qui-contacter-en-france/>(검색일자: 2018. 1. 29.)

295) 프랑스어 원문 Cellules conseil aux entreprises

296) 프랑스어 원문 Pôles d'action économique

## 5. 미국의 관세행정 조직

### 가. 관세국경보호청(CBP)

#### 1)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책무

- 미국 최초의 통일된 국경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세계 최대의 법집행기관의 하나이며, 합법적인 국제 무역 및 여행을 촉진 하면서 위험 인물 및 물품으로부터 미국 국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sup>298)</sup>
  - CBP는 세관, 출입국, 국경보안 및 농업보호 기능을 하나로 결합하여 국경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음
  
- CBP는 입국자격이 없는 사람과 불법 물품의 이동을 입항지에서 막음으로써 미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함<sup>299)</sup>
  - CBP의 현장운영국(Field Operations), 국경수비대(Border Patrol) 및 항공·해상운영국(Air and Marine Operations)은 국경보안을 위한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임<sup>300)</sup>
  
- CBP는 국제무역의 복잡성과 증가하는 양에 대응하면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수입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sup>301)</sup>

297) WK Transport Logistique(French Customs refines its Large Account Service Project(SGC)), <http://www.wk-transport-logistique.fr/actualites/detail/76467/la-douane-francaise-peaufine-son-projet-de-service-des-grands-comptes-sgc.html>,(검색일자: 2018. 1. 8.)

298)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p. 38~39에서 재인용

299) 미국 CBP, “A SUMMARY OF CBP FACTS AND FIGURES”, 2017. 11, p. 1

300) 미국 CBP(2017. 11), p. 1; 신상화 외 2인(2017), p. 41에서 재인용

301) 미국 CBP(2017. 11), p. 1

- 입국항에서의 검사를 통하여 농업자원을 보호하며, 컨테이너 보안 계획, 대테러 민-관 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차세대 수입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 등 미국국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
-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및 미국국민의 귀국을 처리하는 CBP는 합법적인 여행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표적화 및 위협평가 전략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함<sup>302)</sup>
  -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수용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있음

## 2)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직과 역할<sup>303)</sup>

- CBP는 국경수비대(U. S. Border Patrol),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항공·해상운영국(Air and Marine Operations), 대외무역국(Trade) 등 4대 조직과 CBP의 업무를 지원하는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과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로 구성됨
  - 참모장, 공보국, 의회업무국, 무역교섭수석자문관, 정부간공보연락담당관, 직업윤리국, 사생활·다양성담당관 등이 청장을 도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청장(Commissioner)은 CBP의 적법한 무역과 여행을 촉진하면서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들의 입국을 방지하는 CBP의 핵심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짐
  - 6만여 명의 CBP 인력과 약 130억달러의 예산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연방정부에서 가장 큰 법집행기관이면서 두 번째로 큰 세입기관을 운영함

302) 미국 CBP(2017. 11), p. 1

303) 미국 CBP,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_Fiscal Year 2016*, 2017. 3, pp. 9~15; 신상화 외 2인(2017), pp. 42~5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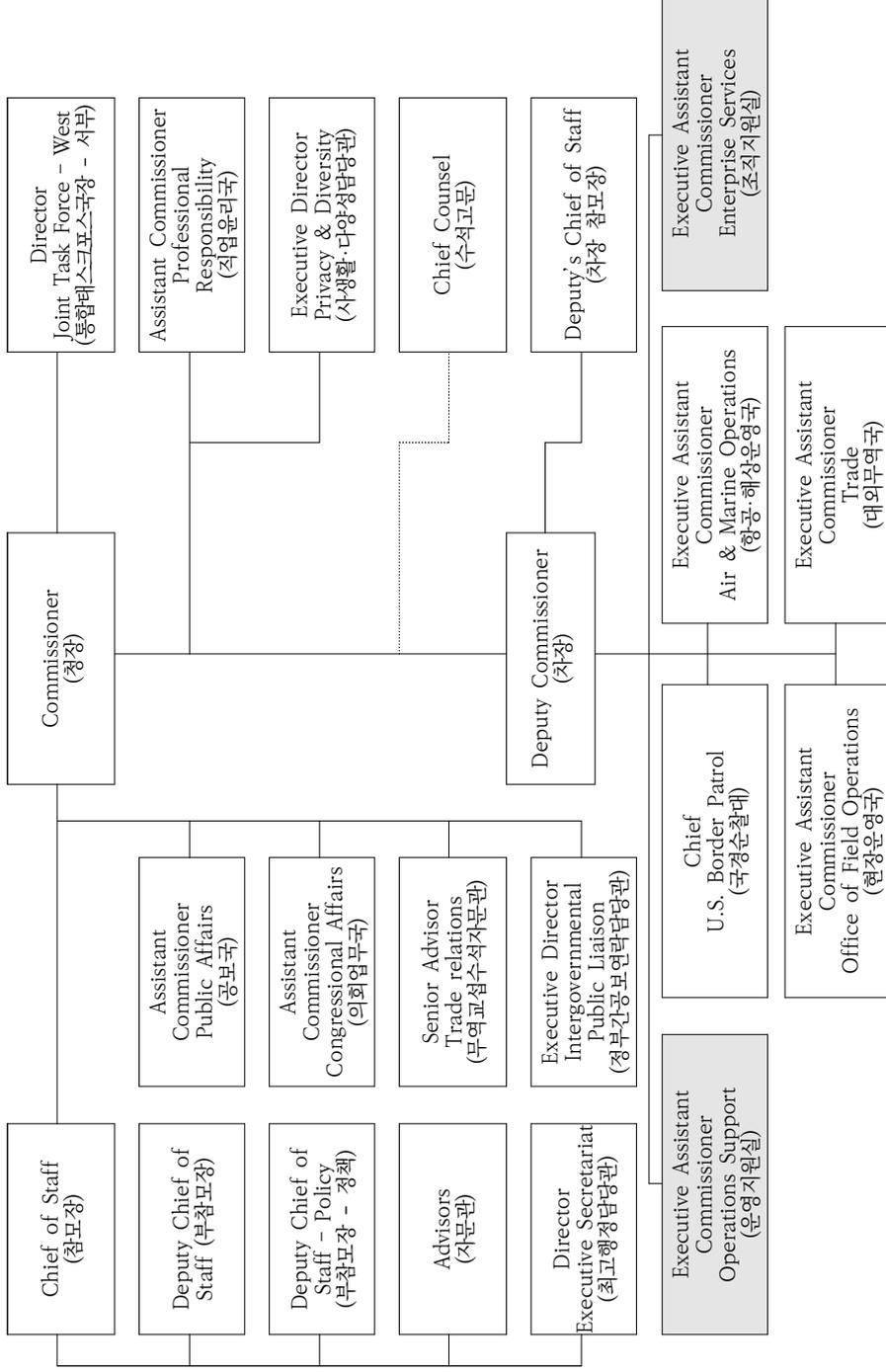
- 차장(Deputy Commissioner)은 CBP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경관리당국의 최고 운영 책임자임
  - 효과적인 국경을 수호하는 반면, 저위험 물품 및 여행객의 적법한 국제이동을 도모하는 CBP의 임무를 관리하여야 함
  
- 참모장(Chief of Staff)은 CBP의 모든 이슈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와의 연락을 담당함
  - 참모장은 청 내부의 타부서, 국토안보부, 기타 국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장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도록 도움을 줌
  
- 통합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West)는 국토안보부가 지원하는 기동부대로서 남서부 국경의 보호를 목표로 함
  - CBP는 다국적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해체하기 위한 운영모델을 4개의 남서부 경계지역에서 통일함으로써 통합태스크포스를 지원함
  
- 공보국(Public Affairs)은 CBP의 임무를 내외부 관련자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한 소통을 담당함
  - 내외부의 관련자는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 및 여행 이해당사자들, 미국 국경을 지나는 여행객들, 미국 및 국제 정부기관 등을 말함
  - 또한 공보국은 CBP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관리하며, 'CBP in 60', 'CBP Postmaster', 'CBP net' 등과 같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관리함
  
- 의회업무국(Congressional Affairs)은 CBP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단일 연락창구 역할을 함
  - 의회업무국은 CBP 지도층이 입법 제안할 CBP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하며, CBP와 관련된 국토안보부의 의회 활동을 지원함

- 무역교섭자문관실(Trade Relations)은 CBP와 국제무역공동체의 의사소통을 관장함
  - 무역교섭자문관실은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준수의 촉진을 위한 규제 공정성 대표 역할을 수행함
  - 의회에서 승인된 무역자문단인 상업적 관세 운영 자문 위원회(Commercial Customs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와 사용자 부담금 자문 위원회(User Fee Advisory Committee)를 관리함
  
- 정부간공공연락국(Intergovernmental Public Liaison)은 CBP의 정책과 계획들이 주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청장, 차장, 관련 사무소에 자문을 제공함
  - 주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CBP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CBP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여 CBP와 주 및 지역 정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함
  
- 직업윤리국(Professional Responsibility)은 CBP의 운영, 인력 및 설비의 모든 부분에서 감독기관 역할을 함
  - 부정부패, 부정행위 또는 부실경영과 관련된 CBP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준수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내부보안 및 무결성 인식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입사예정자들의 신원조회를 하고, 법집행관들에게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함
  - 또한 직원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강력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사생활·다양성담당관실(Privacy and Diversity)은 CBP가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교정시설성폭력금지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등 연방의 적용가능한 모든 차별반대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함

- 또한 CBP가 무역업자나 여행객의 시민권 및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관리함
  
- 수석고문(Chief Counsel)은 CBP의 법무 책임자로서 청장의 법률 고문이며, 조직의 윤리 책임자임
  - 또한 CBP의 활동과 역할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CBP의 구성원을 대리하며, 법적인 자문을 제공함
  - 수석고문은 국토안보부의 자문위원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음
  
- 국경수비대(U. S. Border Patrol)는 CBP의 법집행기관으로서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무기, 불법체류자, 마약과 이를 밀수하는 자 등이 통관항으로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무가 있음
  - 주요 임무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포함한 국경을 통하는 고속도로의 검문소를 유지하고, 시내 순찰, 운송 검문 및 밀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임
  - 국경수비대는 미국의 남서부, 북부, 해안지대에 20개의 지구를 두고 있음
  
-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은 미국 국경에서 관세, 출입국, 농업 관련 법 및 규정을 집행하며,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무기가 통관항으로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무가 있음
  - 현장운영국은 20개의 현장운영사무소와 328개의 통관항, 전국 각지의 통관항에 설치된 10개의 전문센터, 캐나다, 캐리비안, 아일랜드,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있는 16개의 사전허가사무소를 운영함
  - 또한 60개의 컨테이너 보안 시행 항구, 12개의 출입국 관리 프로그램 및 공동 경비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현장운영국은 법과 규정을 집행하면서 통관항을 통한 물품과 사람의 효과적인 이동을 보장함

- 항공·해상운영국(Air and Marine Operations)은 선진화된 항공 및 해양 기술을 통하여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연방의 법 집행기관임
  - 1,637명의 연방 지원인력, 239대의 항공기, 315대의 선박을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운영하면서 미국 국경에 근접해 있는 불법 입국자와 화물을 제지하고 있음
  - 또한 범죄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국가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응함
  
- 대외무역국(Trade)은 무역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 방향을 통합함
  - 무역국은 환적을 포함한 약탈적인 무역 관습, 지식재산권 침해, 덤핑 등을 행하는 업체에 대한 법 집행 대응을 지시하고, 징계 조치를 취함
  - 또한 공중보건 및 안전의 위협요소,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물품을 수입품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위험기반 조사, 감지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감독함

[그림 III -1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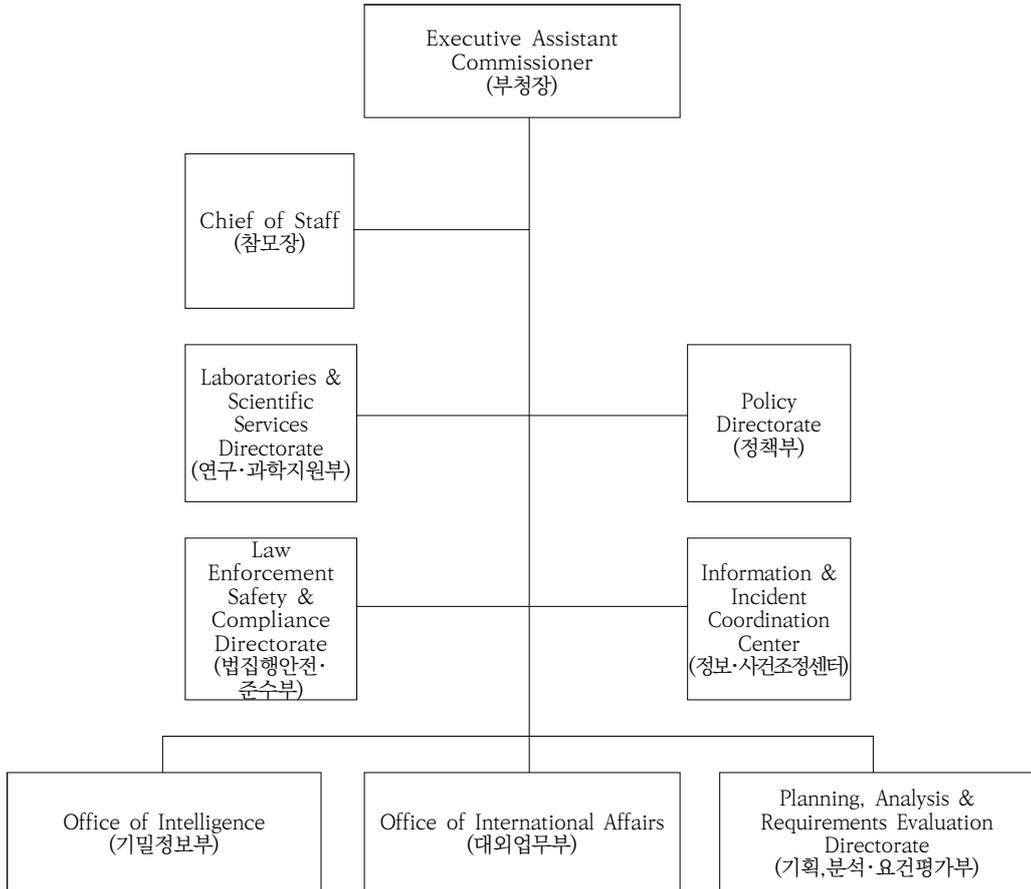


자료: 미국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Oct/US-CBP-org-charts-10.25.17.pdf>(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 외 2인(2017), p. 46에서 재인용

-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은 2016년 신설된 조직으로 CBP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사무소를 직접 지원하는 전문가, 분석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sup>304)</sup>
- 연구·과학지원부(Laboratories & Scientific Services)는 무역, 법의학, 국경보안의 분야에서 법집행에 대한 결정을 위한 과학적 시험, 법의학적 분석, 기술 지원을 제공함
  - 법집행안전·준수부(Law Enforcement Safety & Compliance)는 CBP의 각 운영요소에서 요구되는 업무, 기능, 임무를 지원하는데 있어 강제 정책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기준을 마련함
    - 최고 수준의 교육과 훈련, 무기 및 기타 전술적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CBP의 법집행요원의 안전성, 준비성, 책임성 및 운영 성과를 최적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음
  - 정책부(Policy)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하여 CBP의 통일된 정책방향을 정립함
  - 정보·사건조정센터는 CBP 현장요원들과 국토안보부의 관리인력 간 의사소통 및 정보의 교환을 담당함으로써 CBP의 내외부 상황 파악 및 사건 대응 능력을 관리함
  - 기밀정보부(Intelligence)는 다양한 정보 능력을 통합하여 CBP의 임무를 여러 방면에서 지원함
    - 여행객과 화물의 사전 정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CBP의 대적정보활동을 관리하며 기밀정보를 적기에 분석함
    - 또한 연방, 주, 지역 및 원주민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 관계를 구축함
  - 대외업무부(International Affairs)는 미국정부기관과 외국 행정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CBP의 국제업무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함
    - 22개의 아타셰(attaché) 사무소와 8개의 지역 자문소, 국방부 산하인 3개의 통합전투사령부에 배속된 대표단을 통하여 CBP의 국제협력업무를 지원함

304)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leadership-organization/executive-assistant-commissioners-offices>(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 외 2인(2017), p. 47에서 재인용

[그림 III-14] 미국 CBP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 조직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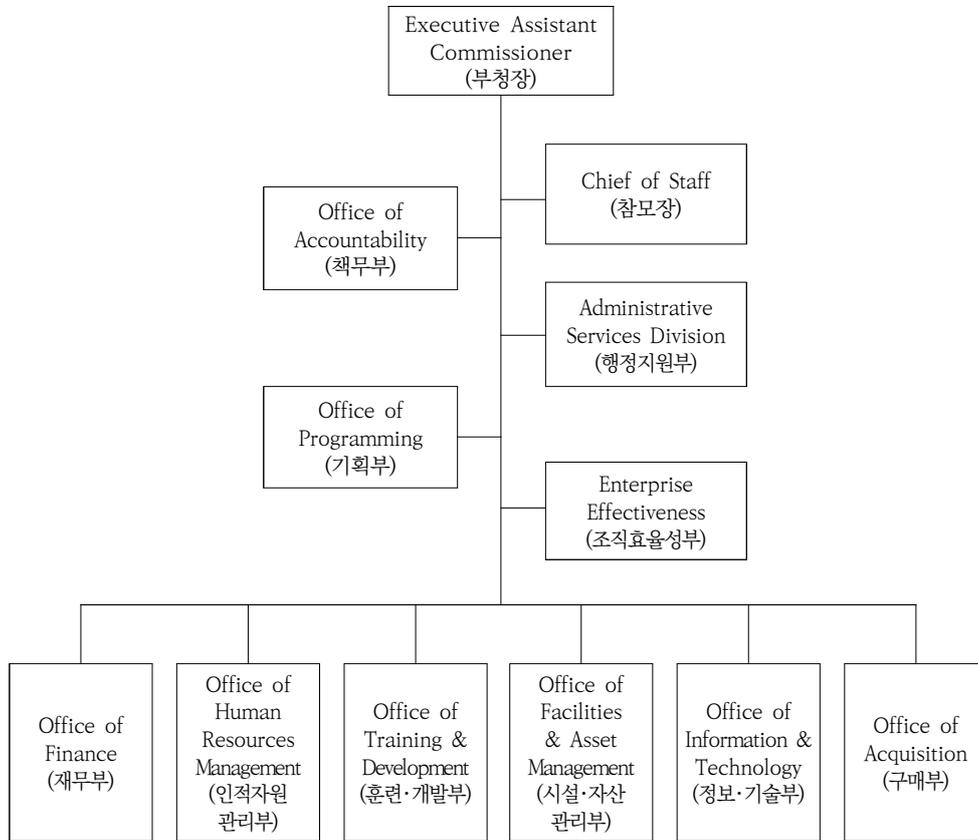
자료: 미국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Oct/US-CBP-org-charts-10.25.17.pdf> (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 외 2인(2017), p. 48에서 재인용

-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은 조직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신설한 부서로 8개의 산하부서는 CBP의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지원함
- 책무부(Accountability)는 CBP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함

- 기획부(Programming)는 CBP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CBP의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함
- 행정지원부(Administrative Services)는 지원실의 모든 행정과 임무 지원 요청 사항을 담당함
- 조직효율성부(Enterprise Effectiveness)는 조직의 성과 관리, 고객 서비스 및 전략적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전략적 자원 관리, 리더십 개발, 비즈니스 관행, 고객 관계 및 사업정보 사용을 감독하거나 관리함
- 재무부(Finance)는 예산 및 재정문제에 대하여 CBP의 수석 고문 역할을 함
  - 재무 관리, 매출 수집 및 관리, 회계 정책 및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 예산 수립 및 집행, 감사 관리 등의 책임이 있음
  - 재무부는 법집행과 국제무역의 운영을 위한 CBP의 순예산 151억달러를 관리하며, 이는 국토안보부 구성부서 중 2번째로 큰 규모임
  - 2016년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세수입이 있는 CBP의 446억달러에 달하는 징수액을 관리하였음
  - 재무부는 예산, 재무 관리 및 운영, 투자 분석 등 세 가지 핵심부서로 구성됨
- 인적자원관리부(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전국 및 해외 모든 CBP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 집중식 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함
  - 조직 구조, 직원 배치, 보상 관리, 복리 후생, 작업장 안전, 인사 조치 및 노사 관계를 포함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감독함
- 훈련개발부(Training & Development)는 모든 CBP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주관함
  - 모든 교육이 CBP의 사명과 전략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CBP의 훈련 표준 및 정책을 수립함
- 시설·자산관리부(Facilities & Asset Management)는 CBP 재산 및 자산의 보급 및 유지에 중심을 둔 조직임
  - CBP의 일선 및 행정 인력에게 주거, 장비, 복장을 제공하고 지원함
  - 시설·자산관리부의 시설 관리·엔지니어링 부서는 46억 3천만달러 정도의 CBP 소유의 시설과 전술적 공공시설을 관리함

- 정보기술부(Information & Technology)는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의 침입을 막아 미국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기반시설, 통신, 서비스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
- 구매부(Acquisition)는 CBP의 구성요소 취득을 담당하며 모든 CBP 구매 프로그램이 국토안보부 및 CBP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도록 감독함

[그림 III-15] 미국 CBP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 조직도(2017년)



자료: 미국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Oct/US-CBP-rg-charts-10.25.17.pdf>(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 외 2인(2017), p. 51에서 재인용

## 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변천

### 1)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설립과 역사

- 미국의 관세청(Customs Service)은 1789년 6월 제1대 의회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시스템을 수립하면서 설립됨<sup>305)</sup>
  - 1891년 출입국 관리사무소(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Immigration)가 설립되면서 출입국 검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1912년에는 농업보호를 위한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 제정되었음<sup>306)</sup>
  - 또한 미국 국경의 무결성 수호를 담당하는 국경수비대(Border Patrol)는 1924년 의회가 국경 순찰 요원의 고용을 승인함으로써 설립되었음<sup>307)</sup>
- 관세청은 설립 이후 세관검사, 세금징수, 국경보안 및 연방법 집행에 대한 수많은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적 및 제도적 변화를 겪음<sup>308)</sup>
  -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를 아우르는 통합된 법 집행과 국토안보 활동에 대한 요구에 따라 관세청 조직은 크게 변화하였음
- 2002년 국토안보법에 따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설립되었고, CBP는 DHS 산하에 관세청 조직, 출입국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주요 기능, 국경수비대, 농무부의 동식물검역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음<sup>309)</sup>

305) 미국 CBP,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5, p. 6; 신상화 외 2인(2017), p. 38에서 재인용

306)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history>(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 외 2인(2017), p. 38에서 재인용

307)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history>(검색일자: 2018. 1. 22.); 신상화 외 2인(2017), p. 39에서 재인용

308) 미국 CBP(2015), p. 6; 신상화 외 2인(2017), p. 39에서 재인용

309) 미국 CBP(2015), p. 6; 신상화 외 2인(2017), p. 39에서 재인용

- 2006년에는 출입국·관세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항공·해상 운영본부(Air and Marine Operations Division)를 흡수하였음

〈표 III-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연혁

일시	조직 연혁
1789	제1대 국회에서 관세청 설립
1862	“사람 간 새롭고 가치 있는 종자와 식물의 획득, 번식 및 배포”를 위하여 농무부 설립
1904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적인 국경 횡단을 막기 위한 국경순찰대의 요원 배치
1912	농림부의 입항구에서의 식물 보호 및 검역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연예원(Federal Horticultural Board)의 설치
1924	노동부의 이민국의 한 부서로서 국경수비대의 창설
2003	미국에서 가장 큰 연방 법집행기관이며, 세계 최초로 국경관리기관이 통합된 관세국경보호청(CBP) 설립
2004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사전정보 수취 시작
2011	CBP의 무역 및 보안임무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전문 및 경력센터의 운영시작
2015	항공·해상국이 항공·해상운영국으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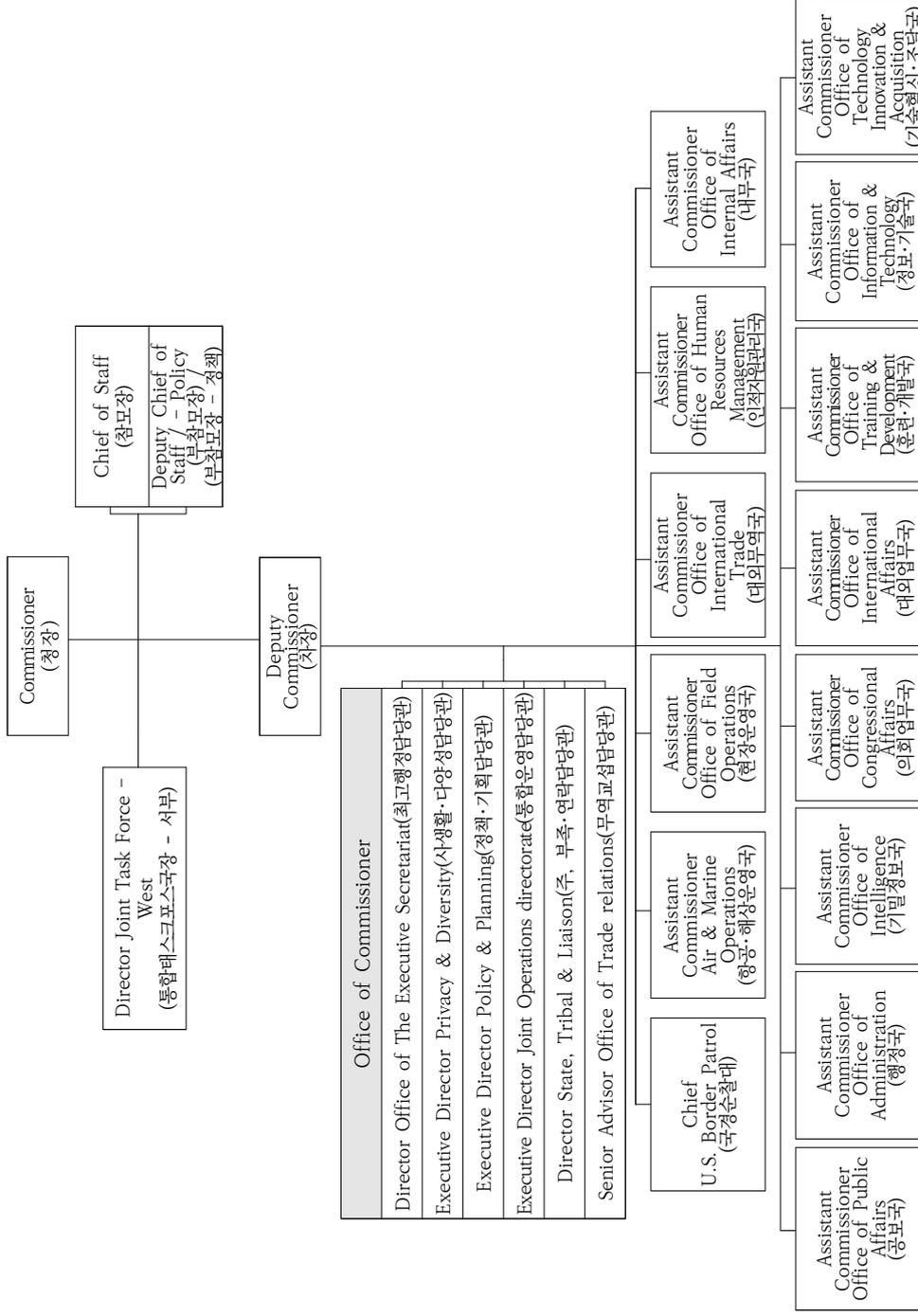
자료: 미국 CBP, “A SUMMARY OF CBP FACTS AND FIGURES,” 2017. 11, p. 2

## 2)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직개편

- 2015년 CBP는 청장 및 차장, 통합운영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사생활·다양성담당관, 무역교섭수석자문관 등의 청장직속 본부조직과 현장운영국, 국경수비대, 항공·해상운영국, 대외무역국 등 14개의 현장조직으로 구성됨<sup>310)</sup>
  - 항공·해상국(Office of Air and Marine)이 2015년 항공·해상운영국(Office of Air and Marine Operations)으로 개편되면서 CBP의 4대 조직이 완성됨
  - 4대 조직과 기밀정보국, 대외업무국, 인력자원관리국, 정보혁신·조달국, 정보·기술국, 훈련·개발국, 공보국, 내무국, 행정국, 의회업무국의 현장조직은 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임

310) 미국 CBP,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_Fiscal Year 2015*, 2016. 3, pp. 12~17

[그림 III-16]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2015년)



자료: 미국 CBP,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2015*, 2016. 3. p. 11

- CBP는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과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을 신설하는 등 본부 조직 구조를 변경하였음<sup>311)</sup>
  - 운영사무국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운영지원실은 기존의 정보기밀연락담당국, 대외업무국을 흡수하였음
  - 조직지원실은 청내의 부서 간 상호협력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지원국, 기술혁신·조달국, 정보·기술국, 훈련·개발국을 통합하여 신설하였음
  - 또한 공보국, 의회업무국은 청장직속 사무국으로 본부조직으로 승격하였음

## 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주요 특징

### 1) 통합 국경관리기관

- CBP는 국경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모든 기능, 이민국의 출입국 심사 기능, 동식물검역소의 검사·검역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됨<sup>312)</sup>
  - 특히 현장운영국은 CBP의 가장 큰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대테러, 출입국 관리, 밀입국 방지, 무역 적법성, 농업보호와 같은 국경보안의 책임이 있음<sup>313)</sup>
- 현장운영국의 입국허가 및 여객 프로그램부(Admissibility and Passenger Program)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인 자동출입국심사(Global Entry), 전자여행허가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ATA) 등을 운영하고 있음<sup>314)</sup>

311) 미국 CBP(2017. 3), pp.9~15; 신상화 외 2인(2017), p. 42에서 재인용

312) 미국 CBP(2015), p.7; 신상화 외 2인(2017), p. 39에서 재인용

313)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leadership-organization/executive-assistant-commissioners-offices>(검색일자: 2018. 1. 23.)

314) 미국 CBP(2017. 11) p. 1; 신상화 외 2인(2014), p. 41에서 재인용

- Global Entry는 사전 승인된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저위험 국가 국민이 CBP의 심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sup>315)</sup>
    - Global Entry에 등록된 자는 자동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신속한 입국이 가능함
  - ESTA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그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여행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임<sup>316)</sup>
- CBP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해충, 침입 식물, 식물 병원균 및 가축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금지 동물제품 등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동·식물 및 동·식물성 물질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sup>317)</sup>
- 현장운영국 소속의 농업전문가는 동·식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리 및 검사를 수행하여<sup>318)</sup> 이러한 잠재적 위협이 타격을 입히기 전에 대상을 탐지 및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위협의 진입을 방지함<sup>319)</sup>
  - 또한 농업 프로그램부(Agricultural Program)는 농산물의 합법적인 수입을 촉진하고, 할당량을 관리함<sup>320)</sup>
- 또한 현장운영국의 화물 및 운반기구 보안부(Cargo Conveyance Security)에서는 화물에 대한 보안 및 합법적인 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대테러 민-관 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컨테이너안전조치(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등을 운영함<sup>321)</sup>

315) 미국 CBP, <https://www.cbp.gov/travel/trusted-traveler-programs/global-entry>(검색일자: 2018. 1. 23.); 신상화 외 2인(2014), p. 41에서 재인용

316) 미국 CBP,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esta>(검색일자: 2018. 1. 23.); 신상화 외 2인(2014), p. 41에서 재인용

317) 미국 CBP, <https://www.cbp.gov/frontline/cbp-agriculture-specialists>(검색일자: 2018. 1. 23.)

318) 미국 GAO,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mproved Planning Needed to Strengthen Trade Enforcement*, 2017. 6, p. 15

319) 미국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rotecting-agriculture>(검색일자: 2018. 1. 23.)

320) 미국 GAO(2017), p. 7

- C-TPAT에 따른 특정 보안기준을 충족한 수입업자는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적용 받으며, 이를 통하여 CBP는 고위험 물품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음<sup>322)</sup>
- CSI는 테러리스트가 해상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테러 위협이 있는 모든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배치되기 전에 외국 항구에서 확인되고 검사되는 보안체제를 의미함<sup>323)</sup>

---

321) 미국 CBP(2017. 11), p. 1; 신상화 외 2인(2014), p. 41에서 재인용

322) 미국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검색일자: 2018. 1. 23.); 신상화 외 2인(2014), p. 41에서 재인용

323) 미국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si/csi-brief> (검색일자: 2018. 1. 23.)



## 2) 다양성의 존중

- 미국은 백인, 흑인, 인디언 등의 원주민, 아시아인, 태평양 섬주민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sup>324)</sup>이므로 CBP에서도 사생활 및 다양성담당관실을 설치하여 고용평등, 법집행활동의 차별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sup>325)</sup>
  - 불법적인 차별에서 벗어나 모든 고용인과 입사 지원자가 균등한 기회와 고용의 혜택을 보장받고, 무역업자 및 여행객에게 차별 없는 법집행활동과 기타 관리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다양성 및 포용 문제에 대해 CBP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CBP 차원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
    - 모든 개인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업 및 승진에 대한 장벽 조사
    - CBP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인식하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관리부 및 기타 사무소와 협조
    - 무역업자 및 여행객에 대한 시민의 권리 또는 시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범죄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의 개발
  
- CBP는 가장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 집행, 수사 및 검사 활동에 있어서 인종 또는 민족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무역업자 및 여행객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음<sup>326)</sup>
  - 국토안보부는 2013년 4월 “비차별적인 법집행 및 검사 활동(Non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and Screening Activities)”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종 또는 민족의 고려는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범죄자료 수집과 강력한 정부 이익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경우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공포함

324) 신상화 외 2인(2017), p. 1

325)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eo-diversity>(검색일자: 2018. 1. 23.)

326)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eo-diversity/policies/nondiscrimination-law-enforcement-activities-and-all-other-administered>(검색일자: 2018. 1. 23.)

- 이러한 기준에 따라 CBP는 특정 용의자 또는 사건, 진행 중인 범죄행위 또는 계획 등과 관련된 인종 및 민족 기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여 인종 및 민족 정보를 사용한 CBP 직원은 CBP 행동 규범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

## 6. 호주의 관세행정 조직

### 가. 내무부(Home Affair)

#### 1) 호주 내무부

- 2017년 7월 18일 호주 총리의 국가 보안 및 정보(Intelligence) 관련 조직 개편 선언에 따라 호주 내무부(Home affair)에서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DIBP)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내무부는 국경 보호, 사람 및 물품의 이동 관리, 이주 프로그램(Migration Programme),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me), 시민권 및 비자, 무역거래와 관세 및 세금징수 등 DIBP의 모든 역할을 이관 받았음
- 내무부는 중앙정책국으로서 DIBP를 통합하고 몇 개 부서의 정책 및 관련 전략 개발 및 실행을 이관 받아 책임지게 되었음<sup>327)</sup>
  -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법집행, 위기관리, 국가안보
  - 인프라 및 지역개발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교통 보안
  - 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다문화적 문제

<sup>327)</sup> 호주 의회(What we know so far about the new Home Affairs portfolio: a quick guide),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718/Quick\\_Guides/HomeAffairs](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718/Quick_Guides/HomeAffairs)(검색일자: 2018. 1. 17.)

- 총리 및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이하 총리 및 내각부): 반-테러조정 및 사이버 보안 정책
- DIBP는 내무부로 통합되기 전 2020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전략은 호주보호, 이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무역 및 소득 증진, 국경혁신의 4가지임
  - 본 전략은 2015년 DIBP와 관세국경보호청(Department of Trade and Customs; 이하 ACBPS)이 통합된 후 단일화된 비전과 미션을 추진하기 위해 공표되었음
  - 단일화된 DIBP의 미션은 강한 국가 안보(strong national security), 강한 경제(a strong economy), 번영하고 화합하는 사회(a prosperous and cohesive society)이며 비전은 신뢰받는 글로벌 게이트 웨이 구축임
  - 호주 보호: 호주 국경 및 영토, 영해 보호, 국가 안보를 위한 법 집행, 직원, 정보, 자원, 시스템의 진실성 확보, 국경에서의 위험 확인 및 관리 등
  - 이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이민자의 이동 및 거주를 촉진하여 사회 화합 촉진 및 경제 지원, 세계적인 난민 관리 문제에 기여, 국경의 불법적인 이동 방지 등
  - 무역 및 소득 증진: 호주 경제 발전을 위한 합법적인 무역 극대화, 금지 및 제한된 물품의 국경이동 방지, 국경의 세금 징수 촉진 및 관리 등
  - 국경혁신: 수출입 비즈니스 및 기술 지원, 국경에서의 물자흐름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직적 능력 개발. 효과적인 호주 국내 및 국외 파트너십 개발 등<sup>328)</sup>
- 호주 내무부는 7개의 그룹 및 하위 30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음<sup>329)</sup>
  - 7개 그룹은 경영그룹, 정책그룹, 조직운영그룹, 정보·역량그룹, 비자·시민권그룹, 내무부 프로그램그룹, 연방테러조정그룹, 국가사이버 조정그룹임

328) 호주 내무부(Stratgy 2020),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strategy-2020.pdf>(검색일자: 2018. 1. 29.)

329) 호주 내무부, <http://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home-affairs-org-structure.pdf>(검색일자: 2018. 1. 15.)

- 하위 30개국은 전략정책·계획국, 여행자국, 세관 산업정책국, 조직 운영 서비스국, 정보국, 비자·시민권관리국, 교통안정국 등임
  - 경영그룹: 전략 정책 계획국, 조직전략·개혁·활동 및 위험국, 경영국, 반극단주의 센터 및 감사국
  - 정책그룹: 이민·시민권정책국, 여행자·세관·산업정책국, 국가보안·법 집행국, 국제 업무국
  - 조직운영: 조직운영 서비스국, 인사국, 재정국, 법무 및 일반적 자문국, 특별 자문국, 불법이민 억류 서비스국, 아동·지역사회·정착 서비스국
  - 정보·역량: 정보국, 정보통신기술/정보통신책임국, 핵심역량국, 신원확인·생체 정보국
  - 비자·시민권: 비자·시민권관리국, 난민·인도주의적 비자관리국, 커뮤니티 보호국, 비자운송·전환국
  - 내무부 프로그램: 교통안전국, 호주위기관리국, 주요 인프라 센터
  - 연방 반테러 조정: 반테러 조정센터
  - 국가 사이버 조정: 사이버 보안정책국
  
- 내무부의 30개국은 다시 하위부서로 분류되어 부서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sup>330)</sup>
  - 경영그룹
    - 전략정책 계획: 전략 및 미래역량, 통계 및 정보관리, 해양보안전략
    - 조직전략·개혁·활동 및 위험: 기업전략 및 위험, 변혁, 기업경영, 행정이행검토
    - 경영: 부처 및 의회 관련 활동,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경영지원 및 참여
    - 반극단주의 센터: 반극단주의 관련 정책
    - 통합·보안·보증: 통합 및 전문적 기준, 회계 및 보증, 구류 보증, 보안

330) 호주 내무부, <http://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home-affairs-org-structure.pdf>(검색일자: 2018. 1. 15.)

○ 정책그룹

- 이민·시민권정책: 커뮤니티 보호 및 국경 정책, 경제정책, 인도주의·가족·시민권 관련 정책, 이민 및 관련 계획 디자인, 이민정책 개편TF
- 여행자·세관·산업정책: 여행자 관련 정책, 무역 및 세관 정책, 호주 AEO(Trust Trader Program) 및 산업관련 정책
- 국가보안·법집행: 형법정책, 초국가적인 범죄
- 국제 업무: 3개 분과(아시아 분과, 미국·유럽·중동·아프리카 분과, 태평양, 과도지역 이슈 분과), 제네바 외교부, 지부(북부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미국, 태평양, 메콩지역)

○ 조직운영 그룹

- 조직운영 서비스: 급여대상자 및 급여, 자산 및 상업서비스, 정보 열람의 자유(FOI), 및 기록관리
- 인사: 인사전략, 인사관리, 인사서비스, 인사역량 및 실행
- 재정: 외부예산 및 세수관리, 회계 관리, 재정경영, 조달 및 계약
- 법무 및 일반적 자문: 입안 및 체제개발, 소송, 상업 및 고용법, 법적자문 및 운영지원
- 특별 자문: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 제공
- 불법이민 억류 서비스: 서비스 관리, 억류 공간 관리
- 아동·지역사회·정착 서비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보고, 관련 서비스 실행을 위한 지역절차 관리 및 활동, 아동복지
- 보건서비스·정책: 이민자 보건, 보건 전략 및 계획

○ 정보·역량 그룹

- 정보: 운영을 위한 정보지원, 국가 정보관리, 정보개발, 국경 정보 통합센터 운영, 전략평가 및 정보관리
- 정보통신기술/정보통신책임: 정보·신원확인·생체시스템, 비자·시민권·디지털 시스템, 여행자·화물·무역시스템, 조직(Corporate) 시스템, 사례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 및 운영,

- 핵심역량: 기업참여 및 프로젝트관리, 전략구조·혁신, 외부구매 및 판매자 관리, 운영역량 관리
  - 신원확인 및 생체정보: 신원확인 및 생체정보 확인 역량 및 정보 관리신원확인 및 생체정보 확인 전문가, 항공보안확인(Aviation Security Identification)
  - 비자·시민권
    - 비자·시민권 관리: 가족 및 시민권 프로그램, 임시 비자 프로그램, 비자 및 시민권 역량확보 및 지원, 지부운영(뉴사우스웨일즈/캔버라, 퀸즐랜드,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태즈메이니아,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적·기술적 비자 프로그램 운영
    - 난민, 인도주의적 비자 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개발
    - 커뮤니티보호: 법적자격 결정, 인성 평가 및 취소, 업무량 보증
    - 비자 운송, 전환: 비자 채널 관리, 시장협력, 이민 개혁 실행 사무소 운영
  - 내무부 프로그램
    - 교통 안전: 항공보안, 교통보안운영, 항공화물보안, 위기관리 및 국제적 보안, 해상보안, 훈련 및 신원 보안
    - 호주 위기 관리: 위험관리, 재난회복, 재난 탄력성 및 전략
    - 주요 인프라 센터: 주요 인프라 보안 확보
  - 연방 반테러 조정
    - 반테러 조정센터: 국제 전략 정책실행, 국내 반테러 센터 운영 및 참여, 반테러 정책 실행
  - 국가 사이버 조정
    - 사이버 보안 정책: 사이버 보안 정책과 호주의 사이버 정책 실현 정부, 비정부 기구 지역의 정부 및 국제사회와 협업
- 현재 내무부 하위에는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를 비롯한 4가지 포트폴리오(Portfolio) 조직(일선 운영기관)이 있음<sup>331)</sup>

331) 호주 내무부, <http://www.homeaffairs.gov.au/>(검색일자: 2018. 1. 25.)

-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 호주 범죄 첩보 위원회(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 호주 연방 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 호주 거래보고와 분석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가 있음

[그림 III -18] 호주 내무부 조직도(2018년)

내무부 장관(Secretary)										
그룹 (Group)	경영 (Executive)	정책 (Policy)	조직운영 (Corporate)	정보·역량 (Intelligence and Capability)	비자·시민권 (Visa and Citizenship)	내무부 프로그램 (Home affair programmes)	연방 반테러 조정 (Commonwealth Counter-Terrorism Coordinator)	국가 사이버 조정 (National Cyber Coordinator)		
	내무부 실행팀 (Home affair Implementation Team)									
	전략정책 계획 (Strategic Policy and Planning)	이민·시민권정책 (Immigration & Citizenship Policy) 여행자, 세관, 산업정책(Traveller, Customs & Industry Policy)	조직운영 서비스 (Corporate Services) 인사 (People)	정보 (Intelligence) 정보통신기술/정보통신책임 (ICT/CIO)	비자·시민권관리 (Visa & Citizenship Management) 난민, 인도주의적 비자 관리 (Refugee & Humanitarian Visa Management)	교통안전 (Office of Transport Security) 호주 위기 관리 (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주요 인프라 센터 (Critical Infrastructure Centre)	반테러 조정센터 (Centre for CT Coordination)	사이버 보안 정책 (Cyber Security Policy)		
국 (Division)	경영 (Executive) 반극단주의 센터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Centre) 통합·보안·보증 (Integrity, Security and Assurance)	국가보안·법집행 (National Security & Law Enforcement) 국제업무 (International)	재정 (Finance) 법무 및 일반적 자문 (Legal/General counsel) 특별 자문 (Special Counsel) 불법이민 억류 서비스 (Detention Services) 아동·지역사회·정착 서비스 (Children, Community & Settlement Services) 보건서비스·정책 (Health Services & Policy)	핵심역량 (Major Capability) 신원확인·생체정보 (Identity and Biometrics)	커뮤니티보호 (Community Protection) 비자 운송, 전환 (Visa Delivery Transformation)					

자료: 호주 내무부, <http://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home-affairs-org-structure.pdf>(검색 일자: 2018. 1.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호주 국경수비대<sup>332)</sup>

-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 Border Force: 이하ABF)는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었으며 연안 및 해양 등 호주 국경 관리, 조사, 보호, 불법이민 억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333)</sup>
  - 국경에서의 조사, 법규 이행, 구류 및 억류, 관세확보 등 기존의 호주 세관에서 담당하는 역할 및 이민국의 현장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 사람 및 물품의 합법적인 통행 촉진, 불법 물품과 불법 이민 행위와 관련된 조사, 법규 이행, 육상 구류 및 해제, 지역 처리 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 ABF는 강한 국가 안보(strong national security), 강한 경제(a strong economy), 번영하고 화합하는 사회(a prosperous and cohesive society)를 목표로 함
    - 2015년 통합된 DIBP의 미션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ABF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는 호주 내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ABF는 운영그룹과 지원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음<sup>334)</sup>
  - 운영그룹에서는 국경 전역의 여행자, 물품, 화물 관리, 수입통관, 관세 확보 등 모든 운영상의 활동을 담당함<sup>335)</sup>
    - 운영그룹에는 해상 국경 사령국, 전략 국경 사령국, 억류·연안 운영국, 실행국, 합동기동대가 있음
    - 이행국에서 ABF조사, 특성화된 조사 및 조정, 억류 해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 국경 사령국에서 각 지역의 국경 전략을 담당하고 있음

332) 호주 내무부(ABF), <http://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검색일자: 2018.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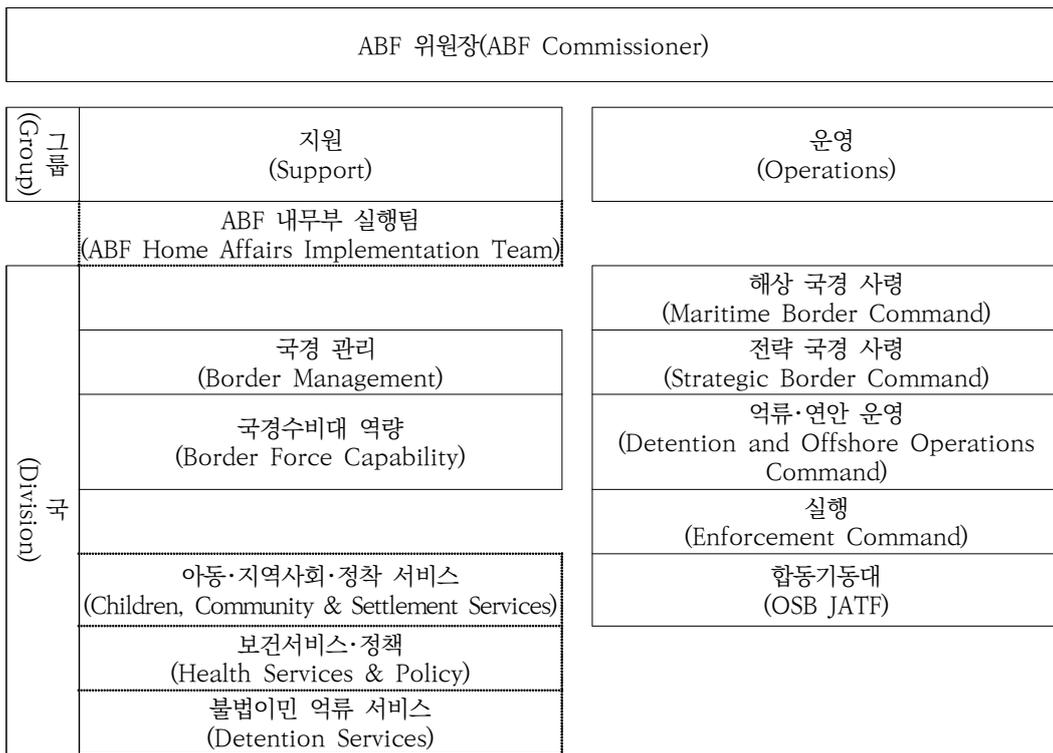
333) 호주 내무부(Who we are), <http://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who-we-are>(검색일자: 2018. 1. 17.)

334) 호주 내무부(Who we are), <http://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who-we-are>(검색일자: 2018. 1. 28.)

335)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공무국의여행 결과 보고서」, 2016. 7.

- 지원그룹에서는 국경 전역의 운영상의 지속성 유지, 국민 보건, 불법 이민자의 억류·구류 관리를 위한 기획 및 지원, 전문가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담당함
  - 지원그룹에는 국경관리국 및 국경수비대 역량국이 있으며 아동·지역사회·정착 서비스, 보건서비스·정책, 불법이민 억류 서비스국은 ABF와 긴밀하게 협력하 되 최종 책임은 내무부가 담당함
  - 국경관리국에서는 운영전략, 세관절차 이행, 이민절차 이행, 호주 AEO(Trust Trade Program)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국경수비대 역량국에서는 특히 항공, 해양 역량, 및 특정화된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ABF 대학(College) 및 ABF 2020계획의 실행 또한 담당하고 있음

[그림 III-19] 호주 국경수비대 조직도(2018년)



자료: 호주 내무부, <http://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abf-org-structure.pdf>(검색일자: 2018. 1.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 ABF의 공조조직은 법무부, 남극연구소,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공사, 범죄위원회 등임<sup>336)</sup>
-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
  - 호주 남극 연구소(Australian Antarctic Division)
  - 호주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호주 범죄 위원회(Australian Crime Commission)
  - 호주 연방 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
  - 호주 수산물 관리공사(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 호주 해양 안전공사(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 호주 안보 정보기구(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 호주 거래 보고 및 분석 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산업과학부(Department of Industry and Science)
  - 인프라 및 지역 개발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 인프라 및 교통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수송안보기구(Office of Transport Security)
  - 총리 및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양 공원 기구(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

336) 호주 내무부(Protecting our borders), <http://www.homeaffairs.gov.au/australian-border-force-abf/protecting>(검색일자: 2018. 1. 24.)

## 나. DIBP(현: 내무부)의 변천

### 1) ACBPS 및 DIBP의 설립과 역사

- 1901년 호주 7개 연방을 통제하는 중앙 통제조직인 무역 및 세관국(Department of Trade and Customs)이 설립되었음<sup>337)</sup>
  - 관세법(Customs Act) 및 연방 관세율(Federal Tariff)이 공포되었고 1901년에서 1907년까지 점진적으로 이행되었음
- 1950년대 밀수단속관이 세관에 신설되어 여행자와 선박의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음
- 1975년 세관은 경찰 및 세관국(Department of Police and Customs)으로 통합되었음
  - 헌법적 위기(constitutional crisis)에 따라 정부조직이 재편성되며 호주 경찰국이 분리되었고 세관국은 부서로서(Bureau of Customs) 기업 소비자국(Department of Business and Consumer Affairs)으로 병합되었음
- 1982년 세관부서(Bureau of Customs)는 산업, 기술 및 상업국(Department of Industry, Technology and Commerce)으로 이전하였으며 1985년 산업, 기술 및 상업국 산업하의 독립된 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으로 조직이 개편됨
- 2008년 국가 안보 증진이라는 계획(Initiative)하에 관세청의 명칭을 관세국경보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이하 ACBPS)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 ACBPS와 DIBP 통합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음

337) 호주 세관 역사(Customs history site), <http://australiancustomshistory.com.au/#!period-pre-federation>(검색일자: 2018. 1. 31.)

- DIBP는 설립 시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으로 명명되었으며 1945년 7월에 신설되었음<sup>338)</sup>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에 7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이를 관리할 전담 부서를 설립하게 됨
  - 안전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이민국 분과(immigration branch)의 모든 기능을 이관 받았으며 이민 및 이민자 정책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음<sup>339)</sup>
  
- 호주 이민국은 인종 및 국적차별 같은 다양성 문제의 관리 또한 담당하게 됨으로써 1976년 호주 이민 및 인종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으로 명칭을 바꾸었음<sup>340)</sup>
  - 인종국(Ethnic Affairs)은 특히 이민자들의 정착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였음
  
- 합법적인 이민 및 국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2013년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로 이름 및 조직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음<sup>341)</sup>
  - 다양한 인종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능은 사회 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으로 이관되었으며 성인 이민자의 영어 프로그램은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에서 담당하게 되었음

338) 호주 내무부(Our history),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rporate/history>(검색일자: 2018. 1. 31.)

339) 호주 내무부(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immigration-history.pdf>(검색일자: 2018. 1. 31.)

340) 호주 내무부(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immigration-history.pdf>(검색일자: 2018. 1. 31.)

341) 호주 내무부(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immigration-history.pdf>(검색일자: 2018. 1. 31.)

## 2) DIBP의 조직 개편

- 2014년 5월 9일 DIBP는 경제를 증진시키고 및 국가 안보 증진 및 관리를 위해 대 변화를 일으킬 것을 공표하였음<sup>342)</sup>
  - 특히 테러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국가 안보 침해, 국제적인 보건위기, 민간 불안, 무력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함
  
- 2015년 7월 1일 ACBPS가 DIBP으로 통합되었음<sup>343)</sup>
  - DIBP는 1945년 7월 13일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의 부서로서 설립되어 주로 이민, 난민, 시민권,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담당했음<sup>344)</sup>
  - ACBPS는 1901년 무역 및 세관부(Department of Trade and Customs)로 설립되어 세관, 무역, 여행자, 세금징수 등을 담당했음<sup>345)</sup>
  - 본 개혁에 따라 이민 관련 정책 및 세관정책을 단일 부서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책과 규제 모두 책임지게 되었음
  
- 2015년 7월 1일 ACBPS가 통합되면서 DIBP 내 운영집행기관으로 ABF가 신설되었음
  - 호주 주요 공항에는 반테러 유닛(Counter Terrorism Units; 이하 CTU)이 신설되었음<sup>346)</sup>
    - 2014년 ACBPS에 신설되었으나 2015년 DIBP 통합 후 DIBP에서 관리하게 되었음
    -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외국 입·출국자를 적발하는 조직으로 개인 방어용품을 소지하여 무력으로 개입이 가능함

342) 호주 내무부, <http://www.homeaffairs.gov.au/about/corporate/history>(검색일자: 2018. 1. 17.)

343) 호주 내무부,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rporate/history>(검색일자: 2018. 1. 17.)

344) 호주 내무부,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immigration-history.pdf>(검색일자: 2018. 1. 17.)

345) 호주 세관 역사(ABF), <http://australiancustomshistory.com.au/>(검색일자: 2018. 1. 17.)

346)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 감시과(2016)

- ABF 대학(College) 또한 신설되어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음<sup>347)</sup>
  - ABF College는 학습 개발 계획과 커리어 코칭을 통해 직원 개발을 지원함
  - 직원 파견교육, 프로젝트 팀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이러닝(E-Learning), 장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 2017년 7월 18일 호주 내무부는 국가 안보 및 정보 보안 증진을 위해 DIBP를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기존 DIBP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음
  - DIBP에서 담당하였던 ABF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또한 내무부에서 총괄하게 됨
  
- 2018년 내무부 조직도와 2017년 DIBP 조직도를 비교해보면 기존 DIBP에서 운영하던 4개국은 그대로 유지하되 4개 그룹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추가된 4개 그룹은 경영, 내무부 프로그램, 연방 반테러 조정, 국가 사이버 조정 그룹이며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2018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내무부의 조직이 변경될 예정이며 현재 4개의 하위 기관에 2018년 6월까지 호주 수송 안보기구(Office of Transport Security) 및 호주안보정보기구(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또한 추가될 예정임

---

347) 호주 내무부(Plan for Integration 2015),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Documents/plan-integration.pdf>(검색일자: 2018. 1. 28.)

[그림 III-20] 호주 이민국경보호부 조직도(2017년)

이민국경보호부 장관(Secretary)				
(Group) 그룹	정책(Policy)	조직운영 (Corporate)	정보·역량 (Intelligence and Capability)	비자·시민권 서비스 (Visa and Citizenship Services)
(Division) 국	전략정책·기획 (Strategic Policy and Planning)	경영 (Executive)	정보 (Intelligence)	비자·시민권 관리 (Visa and Citizenship Management)
	이민·시민권정책국 (Immigration and Citizenship Policy)	조직운영 서비스 (Corporate Services)	정보통신기술 (ICT)	난민·인도주의적 비자 관리 (Refugee and Humanitarian Visa Management)
	여행자·세관·산업 정책 (Traveller, Customs and Industry Policy)	인사 (People)	핵심역량 (Major Capability)	커뮤니티 보호 (Community Protection)
	국제업무 (International)	재정 (Finance)	신원확인·생체정보 (Identity and Biometrics)	디지털 개혁·채널 (Digital Transformation and Channels)
		법무 (Legal)		비자 개혁 TF (Visa Reform Task force)
		청렴·보안·보증 (Integrity, Security & Assurance)		
		보건서비스·정책 (Health Services & Policy)		
		조직전략·개혁·성과 (Enterprise Strategy, Reform & Performance)		

자료: DIBP,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2017. 3. 20.

## 다. 내무부의 주요 특징

### 1) 내무부 조직의 특징

- 호주는 DIBP 전체 및 법무부 인프라 및 지역개발부, 사회 서비스부, 총리 및 내각부의 기능 중 특히 국경보호와 관련이 있는 안보, 교통, 테러 등의 기능을 모두 흡수하여 내무부로 통합하였음
  - 호주 내무부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통합한 CIQ 통합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단 검역의 경우 호주 농업 수산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에서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출입국 관리의 경우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련 심사, 비자 발급, 체류, 난민 등의 업무를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sup>348)</sup>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음
  
- 호주는 그룹(Group)별로 세부 국(Division)을 두고 있으며 호주 내무부의 그룹은 우리나라의 국(Department), 호주의 국은 우리나라 국의 하위 부서의 역할을 하는 형태임
  
- 호주는 2017년 기준 한국을 비롯하여 총 10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나<sup>349)</sup>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과 같은 FTA 관련 전담조직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348)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검색일자: 2018. 1. 25.)

349)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세계 FTA 현황), [http://fta.go.kr/webmodule/\\_PSD\\_FTA/situation/03\\_world.pdf](http://fta.go.kr/webmodule/_PSD_FTA/situation/03_world.pdf)(검색일자: 2018. 1. 29.)

## 2) 위협관리 조직<sup>350)</sup>

- ABF는 운영조직 산하에 정보 분석부(Strategic Border Command; 이하 SBC)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국 및 화물, 관세 등의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SBC는 총괄지휘(Strategic Border Command Centre)<sup>351)</sup>, 위협관리조직(National Border Targeting Centre; 이하 NTBC), 국경 운영센터(Border Operations Centre)<sup>352)</sup>로 조직되어 있음
  - 호주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과 실시간으로 중요 정보를 공유하여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 SBC 산하의 NTBC는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마약, 총기, 생화학물질, 불법 이민자 등 위협정보를 수집하여 표적화하고 있음
  - 표적화한 정보의 분석 결과는 본부세관에 통보하며 현장에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함
  
- NTBC의 표적화는 포괄적 표적화(General targeting)와 특정 표적화(Specific targeting)로 분류됨
  - 포괄적 표적화는 위험도(Alert)가 낮은 위협 위주로 표적화하는 것으로 각 본부세관이 표적화 여부를 파악하여 자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함
  - 특정 표적화는 위험도가 높은 위협에 대해 각 본부세관이 의무적으로 표적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었을 시 실시함

350)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 감시과(2016)

351) 호주 내무부(Strategic Border Command), <https://www.homeaffairs.gov.au/Engagingwithindustry/Documents/industry-summit/strategic-border-command.pdf>(검색일자: 2018. 1. 30.)

352) 호주 내무부(How do I contact the BOC?), <https://www.homeaffairs.gov.au/FAQs/Pages/how-do-i-contact-the-boc.aspx>(검색일자: 2018. 1. 30.)

### 3) 국경관리 조직

- 호주는 대표적인 이민 국가로 다문화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자·시민권을 전담하는 그룹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이주민의 정착 서비스와 관련 정책은 각 그룹 내 국(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비자·시민권 그룹에서 비자·시민권관리, 난민, 인도주의적 비자, 운송, 다문화 커뮤니티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불법이민 억류, 아동·지역사회·정착서비스는 조직운영 그룹의 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경에서 이민자를 관리하고 있는 ABF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음
  - 다문화 인종이 모여 있는 호주의 국가적 특성에 따라 종교적, 인종적 갈등을 대비한 반극단주의 센터를 경영그룹 하위에 조직하고 있음
  
- 특히 세계화 및 전자기술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및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총리 및 내각부에서 내무부로 모두 통합하였음
  - 정부 기관 및 대기업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누출, 조직화된 범죄, 암호 해킹, 온라인 사기, 조세회피, 테러 등<sup>353)</sup>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 내무부에서 모두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었음

---

353) AUSTRALIA'S CYBER SECURITY STRATEGY, <https://cybersecuritystrategy.pmc.gov.au/assets/img/PMC-Cyber-Strategy.pdf>(검색일자: 2018. 1. 25.)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은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업무수요 속에서 관세국경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변화시켜 왔음
  - 우리나라는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제국경관리'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담아 4개의 중점전략 및 과제를 마련하였음<sup>354)</sup>
  - ① 서비스혁신 ② 대외 불법행위의 차단 ③ 유관기관과의 협업 ④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이라는 4대 중점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경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함

### 1. 서비스 혁신

#### 가. 전자통관시스템

-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을 신설하였음<sup>355)</sup>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를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69개 기관,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와 연계하여 무역 및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말함<sup>356)</sup>

354) 관세청(2016), p. 8

355) 관세청 보도자료,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추진단 발족」, 2013. 4. 17.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은 정보망 개발 완료 후 2016년 8월 해체되었고, 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 해외보급 및 수출은 정보협력국에서 담당하고 있음<sup>357)</sup>
-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를 지정<sup>358)</sup>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음<sup>359)</sup>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약 3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운영을 시작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관세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수리, 관세납부 등 핵심 통관절차를 모바일 환경에 구현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통관·물류 편의성이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360)</sup>

○ 또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2017년 9월 기준 카메룬, 탄자니아 등 11개국에 3억 4,885만달러에 수출되는 등 선진 관세행정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음<sup>361)</sup>

□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요건확인 및 수출입신고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은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미국, 호주 등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356) 관세청 보도자료,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본격 개발 착수」, 2014. 7. 9.

357) 정보협력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선, 시스템의 오·남용방지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설치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협의회의 의장임(「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협의회))

358) 「관세법」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359) 운영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위원은 관세청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정보협력국장 및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이 됨(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

360) 관세청 보도자료,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추진단 발족」, 2013. 4. 17.

361)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장 동정]카메룬, 탄자니아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 2017. 9. 1.

- 일본은 수출입통관, 기타 세관수속 및 관련 민간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NACCS)을 운용하고 있음<sup>362)</sup>
    - NACCS는 특수회사인 NACCS 센터가 운용하고, 총무과의 사무관리실에서 NACCS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sup>363)</sup>
  - 미국은 약 47개의 정부기관과 약 269개의 수출입 관련 업체가 참여하여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차세대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ment; ACE)<sup>364)</sup>의 가동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sup>365)</sup>
    - 정보, 통신 및 기술 부문에 대한 서비스는 운영지원실의 정보기술부에서 제공하고 있음
  - 호주는 2005년 화물관리 리엔지니어링(Cargo Management Reengineering; CMR)의 일부로 호주 관세청 통합화물시스템(Australian Customs Integrated Cargo System; ICS)을 도입한 후 수출입통관시스템과 화물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통관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농림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 방문 없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수출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sup>366)</sup>으로 개발도상국에 수출되는 등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통관단일창구의 고도화를 넘어 다른 국가의 통관단일창구와의 연계를 통하여 글로벌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62) 일본 NACCS, <http://www.naccs.jp/aboutnaccs/aboutnaccs.html>(검색일자: 2018. 1. 25.); 강성훈 외 3인(2016), p. 239에서 재인용

363)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16조 제2항

364) 미국 CBP, "ACE Realizing the Single Window Infographic", 2017. 8, p. 1

365) 미국 CBP, <https://www.cbp.gov/trade/automated>(검색일자: 2018. 1. 29.)

366)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장 동정]카메룬, 탄자니아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 2017. 9. 1.

- 우리나라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개선사업을 완료함으로써 2018년 1월부터 중국과의 전자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음<sup>367)</sup>
- 향후 원산지정보 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교환·확인하는 글로벌 통관단일창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기업지원

-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립, FTA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세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업 전담 조직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의 주요 세관에 설치하여 FTA, AEO, 국내외통관애로 등 종합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였고
  -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 및 매칭하는 ‘YES FTA’ 컨설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sup>368)</sup> 세관소속 FTA 전문 컨설턴트와 관세사가 FTA 종합상담을 실시하는 FTA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음<sup>369)</sup>
    - 2018년 ‘YES FTA’ 사업의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 확대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임<sup>370)</sup>
  - 그 밖에도 관세청 심사정책국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지원,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환급특례법 환급 지원,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의 세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sup>371)</sup>

367)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개선사업 완료』, 2017. 11. 27.

368)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YES FTA 컨설팅사업 주요 성과』, 2017. 12. 27.

369) 인천본부세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75&layoutMenuNo=20716&nttId=1148](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75&layoutMenuNo=20716&nttId=1148)(검색일자 2018. 1. 29)

370) 관세청 보도자료, 『중소기업 FTA 활용 어려움,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2018. 1. 29.

- 조사국 중 프랑스를 제외하고 관세청에서 수출입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설립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예정인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 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세관에 설립하여 통관 및 수출입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sup>372)</sup>
  
-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 지원의 경우 수출입 기업 지원은 무역협회에서, AEO관련 지원은 AEO 진흥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현재 관세행정은 국경 보호, 협정에 따른 국제협력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업무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업무 과중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2. 대외 불법행위의 차단

### 가. 국경위험관리

- 증가하는 테러 위협 및 범국가적 범죄, 위험물품의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에서는 국경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표적화하는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위험관리 조직으로 총괄정보관리관(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을 운영하고 있음<sup>373)</sup>
    - 총괄정보관리관은 범칙사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 내국 소비세의 부과·징수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371) 관세청 보도자료,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New Start Plan 2017」, 2017. 4.

372) EUROPAGES(Douane entreprises: qui contacter en France?), <http://corporate.europages.fr/actualites/douane-entreprises-qui-contacter-en-france/>(검색일자: 2018. 1. 29.)

373) 일본 재무성 조직규칙 제334조

- 미국은 현장 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하위에 국가 표적화 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sup>374)</sup>
    - 현장 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은 미국 국경에서 관세, 출입국, 농업 관련 법 및 규정을 집행하며, 테러리스트 및 테러무기의 반입을 방지하고 있음
    - 국가 표적화 센터는 화물 표적화, 표적화 프로그램 및 정책, 반테러, 반테러 네트워크, 글로벌 표적화 자문, 운영 지원, 여행자 표적화, 표적화 비즈니스, 분석 관리 시스템 통제 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sup>375)</sup>
  - 호주는 ABF 하위 위험관리조직(NBTC)에서 국내외 화물, 출입국자, 불법물품 등 안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표적화 및 배포를 담당하고 있음<sup>376)</sup>
    -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와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프랑스는 2016년 2월 위험분석 및 표적화 서비스(SARC)<sup>377)</sup> 부서를 신설하였음
    - 통관, 세금 징수 단계에서 위험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등을 통해 사기 계획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함
-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28일 위험관리 전담 조직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국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sup>378)</sup>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분산 운영되던 정보조직과 표적화 조직을 통합하여 차장 직속기구로 운영하여 관세국경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조정하도록 하였음

374) 미국 CBP(National Targeting Center), <https://www.cbp.gov/frontline/cbp-national-targeting-center>(검색일자: 2018. 1. 30)

375) 미국 GAO(2017), p. 67

376)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 감시과(2016)

377) 프랑스어 원문 service d'analyse de risque er de ciblage

378) 관세청 보도자료, 「테러, 마약 등 차단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 전담 조직 신설」, 2017. 3. 6.

- 또한 첨단 정보 분석 기법으로 검사대상을 표적화하고,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 공조활동을 강화하여 위협관련 정보를 원활히 교환하도록 함

## 나. 관세범죄조사

- 우리나라는 밀수·불공정무역, 불법 외환거래 등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하여 조사감시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sup>379)</sup>
  - 관세범죄에 대한 조사조직은 1980년 관세조사국으로 신설되었다가 1999년 통관적법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과가 심사정책국으로 분리되면서 감시국과 통합되어 조사감시국으로 개편됨
    - 우리나라는 현재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심사정책국과 관세범죄조사, 외국환거래 검사 등을 시행하는 조사감시국이 분리되어 있음
- 일본도 관세국의 조사과에서 관세와 관련된 법령 규정 범칙 사건의 조사, 처분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sup>380)</sup>
  - 조사과에서는 관세범죄업무뿐 아니라 수입화물의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의 조사, 수출화물의 조사·검사 등 심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무역국 산하에 규제심사부(Regulatory Audit)를 두어 수입업자, 관세사 등과 같은 무역 관련업자의 법규준수 감사, 형사 및 민사 조사를 지원하는 심사를 수행<sup>381)</sup>하고 있으나 형사조사 등은 이민 및 세관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부(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에서 담당하고 있음<sup>382)</sup>

379)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8&hdeptCode=000000231&layoutMenuNo=249](http://www.customs.go.kr/kcshome/cop/smt/djm/selectDeptDetail.do?deptJobId=DEPT_JOB_0000000008&hdeptCode=000000231&layoutMenuNo=249)(검색일자: 2018. 1. 31.)

38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k-kikou.htm>(검색일자: 2018. 1. 31.)

381) GAO(2017), p. 12

382) GAO(2017), p. 32

- ICE는 2003년 기존 관세청과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수사 및 집행 기능을 통합하여 창설된 조직으로 HSI는 미국 내외로 불법이동하는 사람·물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활동을 조사할 책임이 있음<sup>383)</sup>
- 독일, 프랑스 등도 관세행정 조직 내에 관세관련 범죄조사조직을 설치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 조직범죄 등을 조사하고 있음
  - 독일은 2016년 일반관세청을 설립하면서 별도로 운영되었던 관세범죄국을 통합하여 중앙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범죄 및 조직범죄의 조사 및 기소, 예방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sup>384)</sup>
    - 경범죄는 일반세법관리국의 조세형벌 및 경범죄과에서 담당함
  - 프랑스는 관세사법 서비스부서(SNDJ)와 관세조사 및 정보부서(DNRED)에서 관세범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음
    - SNDJ의 관세법령 담당관은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범죄를 조사하고 있음
    - DNRED의 세관 조사과는 거대한 범죄에 특성화된 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내 범죄, 테러행위, 불법거래·금융사기의 조사, 범죄네트워크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수출입 가격의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무역구조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 등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관세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조직을 통하여 무역기반 국제금융범죄를 수사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제탈세 및 자금세탁에 대응하고 있음

383) 미국 ICE, <https://www.ice.gov/about>(검색일자: 2018. 1. 31.)

384)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Struktur/Generalzolldirektion/Fachdirektionen/fachdirektionen_node.html)(검색일자: 2018. 1. 31.)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감시국과 심사정책국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부서 처리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사후처분의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심사정책국과 조사감시국의 업무구분의 기준이 되는 ‘관세법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관련한 내부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관세법에 해당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감시국이 담당하고, 심사정책국의 사후심사 시 이러한 의심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감시국으로 해당 사건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유관기관과의 협업

#### 가. 국경관련 기관

-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초국경적 범죄와 테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는 출입국 관리, 보안, 대테러 활동 등 국경보안에 중점을 두어 CIQ조직(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통합하였음
- 미국 CBP는 관세청의 모든 기능, 이민국의 출입국 심사 기능, 동식물검역소의 검사·검역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음<sup>385)</sup>
  - CBP의 현장운영국은 대테러, 출입국 관리, 밀입국 방지, 무역 적법성, 농업보호 등 국경보안의 책임을 가짐<sup>386)</sup>
- 호주는 DIBP와 ACBPS가 DIBP로 통합되면서 세관 및 국경관리 기능이 모두 통합되었음<sup>387)</sup>

385) 미국 CBP(2015), p. 7; 신상화 외 2인(2017), p. 39에서 재인용

386) 미국 CBP, <https://www.cbp.gov/about/leadership-organization/executive-assistant-commissioners-offices>(검색일자: 2018. 1. 23.)

387) 호주 내무부(Plan for Integration 2015), <https://www.homeaffairs.gov.au/CorporateInformation/>

- 최근 내무부로 DIBP가 흡수되며 총리 및 내각부의 사이버테러 및 반테러조직 또한 내무부에서 총괄하게 됨
- 단 검역의 경우 호주 농업 수산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에서 담당하고 있음<sup>388)</sup>

-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청, 법무부 및 검역관련 부서가 각각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에서 관세 및 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불법체류자 단속<sup>389)</sup>을 담당하고 있음
  - 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sup>390)</sup>
- 국경 안보를 위해 관련 기능들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협에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CIQ조직의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나.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sup>391)</sup>

---

Documents/plan-integration.pdf(검색일자: 2018. 1. 28.)

388) 호주 농업수산 자원부(Bio security), <http://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검색일자: 2018. 1. 30.)

38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검색일자: 2018. 1. 25.)

390) 윤태영, 「초국가적 위협 및 테러리즘 증가와 통합국경안보체계 구축: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Vol. 7, No. 4, 2017, pp. 69~78

39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과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과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따름  
- 다만 내국세 등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여러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음
  - 심사정책국에서 통관적법성 등에 관한 사후심사 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음
  - 또한 수입물품에 부과되지만 석유수입·판매부과금<sup>392)</sup> 등과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지 않는 내국세 등은 납세자가 관세와 별도로 납부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음
- 반면 독일, 프랑스는 수입물품에 부과·징수되는 소비세 등에 대한 별도 부서를 마련하여 과세대상의 수입뿐 아니라 제조·보관·사용에 관하여도 관리하고 있음
  - 독일은 일반관세청에 소비세, 교통세 심사국을 설치하여 독일에서 부과되는 에너지세, 담뱃세, 전기세, 주정세, 핵연료세, 알코팍스세, 커피세, 맥주세, 발포성 포도주 및 혼성주류세, 교통세의 부과·징수를 관리·감독함
  - 프랑스는 관세국의 부국장 산하에 하위 F부(Sub-direction F)인 간접세부를 두어 교통세, 담뱃세, 주류세, 전기소비세, 환경세 등 간접세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FTA 협정세율의 적용에 따라 세원으로서 관세의 비중은 낮아지고,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대상의 수입증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등으로 세관장이 부과하

39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는 내국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통관단계부터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내국세 등을 통관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 및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의 종류에 대하여 다른 징세기관과 협업하여 세관에서 통합 징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실제로 2016년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이 협업하여 입국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관세와 별도로 징수하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하였음<sup>393)</sup>
- 또한 납세자의 편의증대를 통한 원활한 납세협력 유도를 위하여 이와 같은 통합 징수 방안을 일부 담배소비세의 납세자뿐 아니라 수입판매업자나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납세자 등에게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여행객과 달리 담배수입판매자는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영수증 또는 담보확인증을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있음

#### 4.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가. 교육 및 훈련

- 우리나라는 관세행정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세관직원 업무역량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대국민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sup>394)</sup>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미래 대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개선 및 현장중심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음

393)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 2016. 3. 23.

394) 관세국경관리연수원, <http://cti.customs.go.kr/hpk/tci/retrieveGreeting.do>(검색일자: 2018. 1. 30.)

-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세관직원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수요자에게도 제공되는 Business Friendly 민간인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도 세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세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여 관세행정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무성 산하에 세관연수소에서 재무부 직원에게 관세행정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sup>395)</sup>
  - 세관연수소는 관리자연수, 종합연수(신규채용자, 중간관리자), 전문연수<sup>396)</sup> 등 우리나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기본교육(신규채용자, 관리자, 승진자 등), 전문교육<sup>397)</sup> 등과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세관직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부서를 관세행정 조직 내에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은 일반관세청에 교육 및 과학센터를 통합하여 중등·고등과정으로 구분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년(중등과정) 또는 3년(고등과정)의 교육 후 시험을 통과한 자는 수습세관직원이 되고, 수습기간 중 능력이 인정되면 공무원으로 발령받을 수 있음<sup>398)</sup>
  - 프랑스는 관세 및 간접세국의 국가인력채용 및 직업훈련센터(DNRFP)가 운영하는 국립세관학교와 라로셴(La Rochelle)국립학교에서 신규세관직원을 양성하고 있음<sup>399)</sup>

395) 일본 세관연수소, <http://www.customs.go.jp/cti/001.html>(검색일자: 2018. 1. 30.)

396) 일본 세관연수소, <http://www.customs.go.jp/cti/006.html#01>(검색일자: 2018. 1. 30.)

397) 관세국경관리연수원, <http://cti.customs.go.kr/hpk/edg/retrieveEducationTranningSystem.do>(검색일자: 2018. 1. 30.)

398) 독일 일반관세청, [http://www.zoll.de/DE/Der-Zoll/Beruf-und-Karriere/Ausbildung/Zollausbildung/Zollausbildung/Mittlerer-Dienst/Ausbildungsverlauf/ausbildungsverlauf\\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Beruf-und-Karriere/Ausbildung/Zollausbildung/Mittlerer-Dienst/Ausbildungsverlauf/ausbildungsverlauf_node.html)(검색일자: 2018. 1. 30.); [http://www.zoll.de/DE/Der-Zoll/Beruf-und-Karriere/Ausbildung/Zollausbildung/Gehobener-Dienst/Duales-Studium/duales-studium\\_node.html](http://www.zoll.de/DE/Der-Zoll/Beruf-und-Karriere/Ausbildung/Zollausbildung/Gehobener-Dienst/Duales-Studium/duales-studium_node.html)(검색일자: 2018. 1. 30.)

399)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77-ecoles-nationales-des-douanes>(검색일자: 2018. 1. 30.)

- 프랑스의 세관직원은 검사원, 관리자, 평가대리인으로 구분되는데, 검사원은 국립세관학교<sup>400)</sup>에서, 관리자와 평가대리인은 라로셀국립학교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sup>401)</sup>

- 우리나라 및 주요국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조직을 마련하여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관세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사이버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거래의 확산,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 지능적 경제범죄 확산, 국제테러의 빈발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T, 국제금융, 빅데이터 등 특수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세관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채용방식으로 관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세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도화되고 있는 세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하여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규채용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화물검사 시스템

- 우리나라는 조사감시국의 관세국경감시과에서 테러관련물품 및 밀수품 방지 등 관세국경감시를 담당하고 있음

---

400)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34-inspecteur-des-douanes-categorie-a>(검색일자: 2018. 1. 30.)

401)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33-controleur-des-douanes-categorie-b>(검색일자: 2018. 1. 30.);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1031-agent-de-constatation-des-douanes-categorie-c>(검색일자: 2018. 1. 30.)

- 우리나라의 국경감시조직은 1970년 관세청 설립당시 감시국으로 시작하였으나 1998년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세청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조정<sup>402)</sup>하면서 감시인력이 축소되고, 1999년에는 조사국과 통합되었음
- 일본은 관세국에 감시과를 두어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sup>403)</sup>
  - 또한 감시과 산하의 감시단속조정관은 관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화물, 선박, 항공기 및 여객의 단속에 필요한 조정을 담당함
- 미국은 불법이민, 마약밀수, 불법수입 등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에는 국경수비대가, 항공 및 해상에는 항공·해상운영국의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sup>404)</sup>, 특히 컨테이너보안조치(CSI)를 위하여 해외의 약 20여개 항구에 CBP 요원들을 주둔시키고 있음<sup>405)</sup>
  - CSI란 CBP의 테러 방지임무를 미국 항구에 도착한 화물의 검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로 확대한 것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58개 항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80% 이상이 사전 검사되고 있음<sup>406)</sup>

40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5706호 1998. 2. 28.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874&lsId=&efYd=199802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검색일자: 2018. 1. 11.))

403)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zeikan/k-kikou.htm>(검색일자: 2018. 1. 30.)

404) 미국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검색일자: 2018. 1. 30.)

405) 미국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examination> (검색일자: 2018. 1. 30.)

406) 미국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si/csi-brief> (검색일자: 2018. 1. 30.)

- 호주도 국경수비대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검사시설(Container and Cargo Examination Facilities; CEFs)을 운영하여 불법마약, 불법총기 및 기타 유해한 물건을 비롯한 금지물품의 반입 또는 제한물품의 요건 준수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음<sup>407)</sup>
  - 호주의 국경을 불법적이고 유해한 물품의 반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국경수비대는 2002년 해상화물에 대한 감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CEFs를 도입함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화물의 90% 이상이 CEFs를 통하여 X-Ray 검사가 이루어지며, 화물처리 시간의 지연 없이 보다 효율적인 탐지 및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됨
  
- 무역 교역량이 급증하고, 전세계 테러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독립된 국경감시조직을 운영하는 등 관세행정 조직의 관세국경감시 임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경감시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및 호주와 같이 국경감시조직을 신설하여 감시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경제적 여건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 X-Ray 판독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판독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적발률을 제고함으로써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판독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sup>408)</sup>
    - 관세청은 2018년 특송화물에 대한 인공지능 X-Ray 판독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여행자 수화물, 국제우편물, 컨테이너 화물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대 개발할 예정임

---

407) 호주 내무부, <https://www.homeaffairs.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complying-with-your-obligations/container-and-cargo-examination-facilities/what-are-cefs>(검색일자: 2018. 1. 30.)

408)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수출입화물 X-Ray 판독에 인공지능 도입 추진」, 2018. 1. 15.

## 참고문헌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김영선, 『일본의 행정개혁(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8.
- 관세청,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 방향』, 2016.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 감시과,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6. 7.
- 관세청 보도자료, 『중소기업 FTA 활용 어려움,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2018. 1. 29.
- \_\_\_\_\_, 『관세청, 수출입화물 X-Ray 판독에 인공지능 도입 추진』, 2018. 1. 15.
- \_\_\_\_\_, 『2017년 YES FTA 컨설팅사업 주요 성과』, 2017. 12. 27.
- \_\_\_\_\_, 『관세청,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개산사업 완료』, 2017. 11. 27.
- \_\_\_\_\_, 『[관세청장동정]카메룬, 탄자니아 관세청장과 양자 면담』, 2017. 9. 1.
- \_\_\_\_\_,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실시』, 2017. 8. 28.
- \_\_\_\_\_, 『제1차 한-일 관세국경 위험관리 워크숍 개최』, 2017. 5. 23.
- \_\_\_\_\_,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New Start Plan 2017』, 2017. 4.
- \_\_\_\_\_, 『테러, 마약 등 차단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 전담 조직 신설』, 2017. 3. 6.
- \_\_\_\_\_, 『2017년 전국세관장회의』, 2017. 2. 3.
- \_\_\_\_\_, 『2017년 전국세관장회의\_참고자료』, 2017. 2. 3.
- \_\_\_\_\_,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방 본격 개발착수』, 2014. 7. 9.
- \_\_\_\_\_,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방 구축 추진단 발족』, 2013. 4. 17.
- 관세청·한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직무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2012. 1.
-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윤태영, 「초국가적 위협 및 테러리즘 증가와 통합국경안보체계 구축: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Vol. 7, No. 4, 2017.
- 인천공항세관, 「러시아 공항세관 출장 보고서」, 2014. 11.
- 일본관세연구회, 『일본 세관연수원교재 III』, 관세청, 2012.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 2016. 3. 2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_러시아』 2013. 12.
- 독일 연방재무부, “Neuorganisation der Zollverwaltung erfolgreich abgeschlossen”, 2016. 3.
- \_\_\_\_\_, *The 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2009. 10.
- 미국 CBP, “A SUMMARY OF CBP FACTS AND FIGURES,” 2017. 11.
- \_\_\_\_\_, “ACE Realizing the Single Window Infographic,” 2017. 8.
- \_\_\_\_\_,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_Fiscal Year 2016*, 2017. 3.
- \_\_\_\_\_,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_Fiscal Year 2015*, 2016. 3.
- \_\_\_\_\_,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5.
- 미국 GAO,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mproved Planning Needed to Strengthen Trade Enforcement*, 2017. 6.
- 일본 관세국, 『관세보고서\_2017』, 2017.
- 일본 NACCS, 『NACCS』, 2017.
- 호주 DIBP,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2017. 3. 20.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cti.customs.go.kr](http://cti.customs.go.kr)
-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평가분류원,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cvnci>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부산본부세관, [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busan](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busan)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http://fta.go.kr/main/>  
 인천본부세관, [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incheon](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incheon)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rus-moscow.mofat.go.kr>  
 중앙관세분석소, <https://cclss.customs.go.kr>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org.mois.go.kr>

독일 일반관세청, [www.zoll.de](http://www.zoll.de)  
 러시아 관세청, <http://customs.ru/index.php>  
 러시아 관세청(영문), <http://eng.customs.ru/index.php>  
 러시아 재무부, <https://www.minfin.ru>  
 러시아 정부, <http://government.ru/en/>  
 미국 CBP, [www.cbp.gov](http://www.cbp.gov)  
 미국 ICE, [www.ice.gov](http://www.ice.gov)  
 세계관광기구(UNWTO), <https://www.e-unwto.org>  
 일본 관세중앙분석소, <http://www.customs.go.jp/ccl/>  
 일본 도쿄세관, <http://www.customs.go.jp/tokyo/>  
 일본 세관연수소, <http://www.customs.go.jp/cti/>  
 일본 관세국, [www.customs.go.jp](http://www.customs.go.jp)  
 일본 재무성, [www.mof.go.jp](http://www.mof.go.jp)  
 일본 하코다테세관, <http://www.customs.go.jp/hakodate/>  
 일본 NACSS, [www.nacss.jp](http://www.nacss.jp)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국, [www.douane.gouv.fr](http://www.douane.gouv.fr)  
 프랑스 법률정보,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예산 이사회,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

프랑스 의회, <http://www.senat.fr>

프랑스 재정경제부, <https://www.economie.gouv.fr>

프랑스 UIP-PNR, <https://pnr.gouv.fr>

호주 내무부, [www.homaffair.gov.au](http://www.homaffair.gov.au)

호주 농업수산 자원부, <http://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

호주 세관 역사, <http://australiancustomshistory.com.au/>

호주 의회, <https://www.aph.gov.au/>

AUSTRALIA'S CYBER SECURITY STRATEGY, <https://cybersecuritystrategy.pmc.gov.au/index.html>

EUROPAGES, <http://corporate.europages.fr/>

Helping U.S. Companies Export, <https://www.export.gov>

Le portal Transport et Logistique, <http://www.wk-transport-logistique.fr/>

UNWTO, <http://www2.unwto.org/>



관세연구 17-04

**주요국의 관세행정 조직의 기능 및 역할 비교연구**

---

발 행 2017년 12월 29일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이재선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924-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